

시 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2100호

2023년 2월 3일 금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조 례

- 인천광역시조례 제6978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3
- 인천광역시조례 제6979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42

규 칙

- 인천광역시규칙 제3287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45
- 인천광역시규칙 제3288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29
- 인천광역시규칙 제3289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231

고 시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7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260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28호 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지서 공시송달 공고 26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34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26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51호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7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58호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상시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27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63호 2023년 제1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27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6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27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81호 2023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계획 공고 27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84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
시송달 공고 28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90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30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91호 설계업 등록 공고 30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93호 공시송달 공고 30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97호 공시송달 공고 30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98호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311

회
람



군 구

- 강화군공고 제2023-180호 공인 신조 공고 336

기 타

-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공고 제2023-2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개방형직위(감사관) 공개모집 공고 337

조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2월 3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조례 제6978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부터 제129조까지 및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의 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기관의 장을 두고, 각 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추가 설치한 실·국·본부(이하 “자율신설기구”라 한다)의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의 항목,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2장 시본청

제4조(부시장)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소방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행정부시장과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둔다.

② 행정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와 글로벌도시국장 및 대변인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의 지휘·감독

③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의회, 정부·국회, 정당·사회단체, 언론기관과 관련된 정무적 업무 수행,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인

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2. 문화체육관광국장, 보건복지국장 및 여성가족국장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①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국, 시민안전본부, 환경국, 교통국,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 해양항공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글로벌도시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및 대변인을 둔다. 이 경우 재정기획관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며, 미래산업국은 경제산업본부장 밑에 둔다.

② 시의 소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③ 재정기획관,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은 자율신설기구로 한다.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기획, 조정, 평가,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조직관리, 의회협력 등에 관한 사항
3.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4. 교육지원,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5. 법제, 송무, 행정심판 및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항
6. 정보화, 통계,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7. 예산편성·운영 및 중장기 재정대책에 관한 사항
8. 공기업 운영 및 경영수익사업의 총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지방세 등 세제 운영에 관한 사항
10. 회계, 결산, 국·공유 재산에 관한 사항

제7조(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편성·운영 및 국비 등 재원확보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정리스크, 부채 및 공기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제도의 운영, 세원개발과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4. 시비·국비회계의 총괄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보안, 의전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인사, 시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군·구 행정의 조정·지도 및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4. 주민등록,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 및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훈정책에 관한 사항
8.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9. 기록관 운영, 민원처리, 여권업무 및 고객만족행정에 관한 사항
10. 청사관리 등 시설관리 및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다른 실·국·본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시민안전본부) 시민안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 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재난·재해대책 수립, 대응 복구 및 국가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3. 재난 예방 사업 추진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시·비상 대비 및 민방위 업무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환경국) 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호 및 관리,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4. 매립지정책에 관한 사항
5. 쓰레기 처리 등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에 관한 사항
6. 환경안전 및 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
7. 대기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8. 하천 및 하수도에 관한 사항
9. 분뇨·오수처리에 관한 사항

제11조(교통국) 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행정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
3. 도시철도, 버스, 택시행정 및 운수에 관한 사항
4. 주차행정, 교통지도 및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
5. 도로·교량 및 가로등에 관한 사항
6.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경제산업본부) 경제산업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일자리 창출, 경제동향 관리, 물가안정 및 상업 진흥에 관한 사항
2. 고용정책 및 실업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발굴 및 단체 등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6. 농·축산업 및 양정·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7. 기업 및 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8. 첨단 과학기술 진흥 및 지원 등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제13조(미래산업국) 미래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 과학기술 진흥·지원 등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기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반도체·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데이터, 블록체인,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

제14조(해양항공국) 해양항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정책 수립 및 해양개발에 관한 사항
2. 섬지역(서해5도 특별지원사무를 포함한다)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3. 항만·공항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4.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5. 화물자동차 운수·물류에 관한 사항
6. 해양친수공간 및 연안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7.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8. 수산업 및 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제15조(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시정책 및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관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5. 건축정책 및 건축문화에 관한 사항
6. 주택건설·공급·관리 및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제16조(도시균형국) 도시균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재생 종합계획·조정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및 역세권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3. 인천대로 일반화에 따른 도로·시설물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사항
5. 녹지조성 및 조경, 산림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공원조성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7.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건설업 면허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글로벌도시국) 글로벌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뉴홍콩시티 조성에 관한 사항
2. 글로벌도시 추진 관련 국제회의 유치에 관한 사항
3. 제물포르네상스 조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업 및 내·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6.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도시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18조(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19조(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2. 보건,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복지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 및 자립기반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6. 의·약 및 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

7. 위생, 식품안전, 공중위생, 위해식품에 관한 사항

제20조(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보육복지 및 저출산에 관한 사항

2. 인구·가족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 및 장묘정책에 관한 사항

5. 아동복지 및 청소년육성에 관한 사항

6.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제21조(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2. 시정홍보 및 시정·정책메시지에 관한 사항
3. 도시브랜드 정책에 관한 사항

제22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화재예방과 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에 관한 사항
3. 소방장비·시설 등 소방력 보강에 관한 사항
4. 119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 홍보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6.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인재개발원

제23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이하 이 절에서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인재개발원은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심곡동)에 둔다.

제24조(업무)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및 개선
2.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교재 발간
3. 교육실적 통계 및 학적관리
4.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관리
5. 시청각 기자재 및 청사의 유지, 방호
6. 연구과제의 선정 및 결과분석
7. 교육훈련의 수요조사 및 중·장기 교육훈련계획 수립
8. 각급 교육훈련기관과의 협조 및 민간교육훈련기관과의 교육정보·자료의 교환

제2절 보건환경연구원

제25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이 절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은 인천광역시 서해대로 471(신흥동)에 둔다.

제26조(업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그 밖의 감염성 질환과 집단 질병 발생에 대한 진단·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 및 농

산물의 농약잔류량,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세척제, 위생용품,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먹는샘물, 수처리제, 「온천법」에 따른 온천수의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오염의 조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농약잔류량·하천수,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류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공기질 등의 검사·시험에 관한 사항

4. 관할구역의 보건·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5. 관할구역의 보건·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요원 훈련에 관한 사항

6.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질병의 방역, 진단, 검사, 시험, 조사, 연구 및 가축방역사 지도에 관한 사항

8.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 위생 관리 및 수거에 관한 사항

9.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연계 시험에 관한 사항
10.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 동물의 질병진단 및 연구와 구조·치료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가축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제3절 농업기술센터

제27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이 절에서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살라리로 2번길 33(서운동)에 둔다.

제28조(업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2.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3. 농촌생활 개선
4. 농업경영 개선
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약용작물 재배기술 보급·지도
6. 지역특화작물 개발·보급·지도
7. 농민교육 및 지도
8. 그 밖에 농업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및 농촌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4절 소방서

제29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시의 관할구역에 소방서를 둔다.

②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30조(업무)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방서의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소방관서 설치 및 소방력의 기준 보장에 관한 사항
3. 소방차량·장비·소화약제의 확보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화재의 예방·경계·진압활동·대책 등에 관한 사항
5. 재난발생 지역의 인명구조구급대책·활동·평가에 관한 사항
6. 구조·구급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7. 소방 관련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8. 소방검사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위험물 제한 등의 안전관리대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0.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화재진압대 운영 및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13. 경방조사 및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
14. 소방통신망의 유지·관리 및 119출동지령에 관한 사항
15. 유해화학물질 등의 특수재해 소방활동 대책에 관한 사항
16. 각종 재난재해 대비 현장지휘체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화재 등 재난현장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5절 소방학교

제31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방학교(이하 이 절에서 “소방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 소방학교는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00번길 8-13(심곡동)에 둔다.

제32조(업무) 소방학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성과의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소방전문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절 119특수대응단

제33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 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이하 이 절에서 “특수대응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특수대응단은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 1204번길 195(운북동)에 둔다.

제34조(업무) 특수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특수재난 및 대형 재난사고의 구조·구난 활동

2. 헬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
3. 직할구조대, 119항공대 운영·관리
4. 특수구조기술 개발·보급 및 매뉴얼 작성

제7절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제35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 14조에 따라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하 이 절에서 “체험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체험관은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1로 120(가정동)에 둔다.

제36조(업무) 체험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대처·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의 제공
2.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전시
3.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4. 그 밖에 체험교육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사업소

제1절 상수도사업본부

제37조(설치) ①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고 상수도 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

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본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도화동)에 둔다.

제38조(업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중소규모댐 건설 등 원수 개발
2. 취·정수 및 송·배수 급수
3. 누수탐사 및 노후관교체
4. 수질향상을 위한 연구 및 개선
5. 요금, 원인자부담금, 구경별정액요금, 제수수료의 부과·징수
6. 시민급수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과금의 부과·징수

제39조(하부기관의 설치) ①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부장 밑에 수도사업소, 수도시설관리소, 정수사업소, 맑은물연구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하부기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2절 도시철도건설본부

제40조(설치) ① 도시철도 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본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간석동)에 둔다.

제41조(업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시철도 업무의 기획·조정

2.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
3. 도시철도 용역 업무에 관한 사항
4. 보상, 그 밖에 도시철도에 관한 사항

제3절 종합건설본부

제42조(설치) ① 시가 직접 시행하는 건설사업, 건축물 건립 및 설비공사, 도로관리 및 토목사업, 검단지역 구획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본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에 둔다.

제43조(업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로, 교량, 육교, 지하도의 설계·시공·감독
2. 하천사업의 설계·시공·감독
3. 문화, 복지시설 및 체육·위락시설 공사의 설계·시공·감독
4. 각종 부대시설 설비공사의 설계·시공·감독
5. 도로 유지·관리
6. 건설자재의 시험분석
7. 중장비의 관리 운영
8. 가로등, 지하차도 및 하수펌프장 유지·관리
9. 설해 및 풍수해 대책
10. 검단지역 구획정리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대규모 건설사업

제4절 문화예술회관

제44조(설치) ①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의 정신문화 향상과 향토예술의 창달을 도모하며, 예술활동 무대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하 이 절에서 “문화예술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문화예술회관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49(구월동)에 둔다.

제45조(업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부시책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장소 제공
2. 지방문화예술을 위한 각종 전시물의 기획전시 및 상설 전시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대관 및 공공집회에 관한 업무, 시립예술단체 운영
4. 그 밖에 문화예술회관의 설치목적과 관련 있는 업무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절 미추홀도서관

제46조(설치) ① 도서 및 기록류, 그 밖에 문화재를 수집 보존하여 시민들이 열람 이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향토문화를 소개·보급하며,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이하 이 절에서 “미추홀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미추홀도서관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76번길 53(구월동)에 둔다.

다.

제47조(업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서·기록류의 수집, 정비·보존
2. 도서 및 기록류의 열람 제공
3. 향토문화의 소개 및 보급
4. 지역 대표도서관 관련 업무
5.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절 시립박물관

제48조(설치) ① 역사의 고증 및 문화예술 민속과 인류학 영역에 속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시민의 관람에 제공하고, 향토문물의 조사·연구와 교육계몽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이하 이 절에서 “박물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박물관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60번길 26(옥련동)에 둔다.

제49조(업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박물관 자료 및 향토사료의 수집
2. 소장품의 보관, 보전처리 및 전시
3. 향토사 및 향토사적의 조사·연구 및 연구 관련 학술단체와의 협력
4. 향토사 및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연구회 등의 개최
5. 사회교육 및 지역문화학교 운영
6.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배포

7. 송암미술관, 검단선사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인천도시역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립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7절 여성복지관

제50조(설치) ①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회교육 운영과 저소득 여성의 자활능력배양 및 자원활동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이하 이 절에서 “여성복지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여성복지관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4번길 24(주안동)에 둔다.

제51조(업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여성의 직업전문교육과 문화교육 강좌
2. 여성의 취업알선과 창업 지원
3. 시설물 관리와 대관사업
4. 자원봉사활동 지원
5. 그 밖에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8절 여성의 광장

제52조(설치) ① 여성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과 능력배양,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여성교류의 장 역할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여성의

광장(이하 이 절에서 “여성의 광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여성의 광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83(동춘동)에 둔다.

제53조(업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여성 IT와 어학교육 운영
2. 여성전문인력 양성교육 운영
3. 여성문화·체육·교양교육 운영
4. 시설물 관리와 대관사업
5. 그 밖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제9절 서부여성회관

제54조(설치) ①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에 필요한 사회교육 운영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의 중심 공간 역할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이하 이 절에서 “서부여성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서부여성회관은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2(석남동)에 둔다.

제55조(업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여성 전문인력 양성교육 운영
2. 여성 문화·교양·생활체육교육 운영
3. 여성의 창업활동 지원
4. 여성·아동에 관한 상담
5. 시설물 관리와 대관사업
6. 그 밖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제10절 아동복지관

제56조(설치) ① 아동 및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과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이하 이 절에서 “아동복지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아동복지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246(도원동)에 둔다.

제57조(업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아동과 가족문제 등에 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2. 그 밖에 아동정보 제공 등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11절 인천대공원사업소

제58조(설치) ① 인천대공원과 그 밖에 남동구, 부평구에 소재한 공원·녹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쾌적한 시설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② 사업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236(장수동)에 둔다.

제59조(업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시공원 시설의 설치
2. 도시공원 시설의 유지 및 관리
3.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재산관리
4. 도시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5.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허가

6. 도시공원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
7. 그 밖에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절 월미공원사업소

제60조(설치) ① 월미공원과 그 밖에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에 소재한 공원·녹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쾌적한 시설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② 사업소는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329(북성동1가)에 둔다.

제61조(업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시공원 시설의 설치
2. 도시공원 시설의 유지 및 관리
3.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재산관리
4. 도시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5.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허가
6. 도시공원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
7. 그 밖에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절 계양공원사업소

제62조(설치) ① 계양공원과 그 밖에 계양구, 서구, 강화군에 소재한 공원·녹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쾌적한 시설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

양공원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② 사업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990(계산동)에 둔다.

제63조(업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시공원 시설의 설치
2. 도시공원 시설의 유지 및 관리
3.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재산관리
4. 도시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5.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허가
6. 도시공원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
7. 시장이 정하는 도시녹화사업 및 주요 녹지대의 조성·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각종 수목·화훼·잔디의 수급계획, 재배, 양묘 및 증식연구
9. 그 밖에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절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제64조(설치) ① 시민들의 식생활에 필요한 농축산물을 대량, 신속, 공정하게 공급하고, 남촌농산물도매시장과 가좌축산물도매시장의 합리적인 운영·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이 절에서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류대로 763(남촌동)에 둔다.

제65조(업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축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종합기획 조정
2. 남촌농산물도매시장과 가좌축산물도매시장의 합리적인 운영·관리
3. 남촌농산물도매시장과 가좌축산물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4. 농축산물도매시장 중매업 허가 및 유통종사자 감독
5. 농축산물 산지출하 유지·촉진
6.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포장 개선 추진
7. 유통정보의 수집, 분산, 서비스에 관한 사항
8. 도매시장 시설물(토목·건축·기계·전기·전화·수도·가스·소방시설 등을 말한다)의 유지·관리
9. 시장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10. 농축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유통시설(직판장, 저온저장시설, 가공시설, 배송센터 등을 말한다) 건립 추진
11. 농축산물 수매비축사업 추진
12. 농축산물 저온저장 육성사업
13. 농축산물 계통출하 사업
14. 유통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15. 유통종사자 지도·감독 및 교육
16. 농축산물 유사도매 및 불법유통행위 단속
17. 농축산물 품질 향상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업무

제15절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제66조(설치) ① 시민들의 식생활에 필요한 농산물을 대량, 신속, 공정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이 절에서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동로 46(삼산동)에 둔다.

제67조(업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종합기획 조정
2.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
3.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4. 농산물도매시장 중매업 허가 및 유통종사자 감독
5. 농산물 산지출하 유치 촉진
6.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포장개선 추진
7. 유통정보의 수집, 분산, 서비스에 관한 사항
8. 도매시장 시설물(토목·건축·기계·전기·전화·수도·가스·소방시설 등을 말한다)의 유지·관리
9. 시장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10.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유통시설(직판장, 저온저장시설, 가공시설, 배송센터 등을 말한다)건설 추진
11. 농산물 수매비축사업 추진
12. 농산물 저온저장 육성 사업
13. 농산물 계통출하 사업
14. 유통정보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15. 유통종사자 지도·감독 및 교육

16. 농산물 유사도매 및 불법유통행위 단속

17. 농산물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업무

제16절 수산자원연구소

제68조(설치) ① 신품종 수산종자의 생산기술 개발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급 어종의 수산종자를 인공적으로 생산·보급하고, 첨단 양식기법 및 해양생태계, 수산자원 등의 연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이하 이 절에서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② 연구소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남로 247번길 313에 둔다.

제69조(업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수산종자 생산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2. 수산종자 생산·방류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자체 생산 수산종자 방류 및 효과 조사에 관한 사항
4. 수산생물 양식 및 양식장 적지 연구 등에 관한 사항
5.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 보전 연구에 관한 사항
6. 수산생물 질병 연구에 관한 사항
7. 지역특산품종의 종 보전 연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수산분야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제17절 수산기술지원센터

제70조(설치) ① 수산기술 지도·보급 등 수산지도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이하 이 절에서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정공원로 83번길 15(용현동)에 둔다.

제71조(업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수산기술 보급,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2. 귀어·귀촌 활성화, 귀어학교 및 지원센터 지정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산업경영인 등의 육성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4. 양식어장 수산질병 예찰·관리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및 공동체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6.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7. 수산장비 임대활용 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산업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등 필요한 사업

제18절 중앙협력본부

제72조(설치) ①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체계 구축과 시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앙협력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본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제73조(업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국회·정당과 관련되는 업무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과 시와의 긴급한 사무연락 및 업무협조

3. 시정운영에 관한 각종 정보수집 및 홍보
4. 투자유치 업무의 협조·지원 등

제5장 합의제행정기관

제74조(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129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치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제75조(소관사무)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운영 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정책,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제도·정책·관행 등의 개선
5. 자치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자치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조정
14. 자치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
17. 그 밖에 시장,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제76조(사무국) 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자치경찰위원회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제3항에 따른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은 2023년 7월 14일까지로 하고, 미래산업국 및 글로벌도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2월 5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강보건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건강보건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건강보건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보건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보건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건강보건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도시재생복지국장”을 “도시균형국장”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본부장”을 “미래산업국장”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중 “경제산업본부장”을 각각 “미래산업국장”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본부장”을 “미래산업국장”으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⑯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⑰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호 및 제60조제3항 중 “도시재생녹지국장”을 각각 “도시균형국장”으로 한다.

⑱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도시재생녹지국장”을 “도시균형국장”으로 한다.

⑲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도시재생녹지국장”을 “도시균형국장”으로 한다.

㉔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국장”을 “도시균형국장”으로 한다.

㉕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제협력담당관실을”을 “국제교류·협력 업무 담당 부서를”로 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보건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㉖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글로벌도시국장”으로 한다.

㉗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㉘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국장, 문화관광국장”을 “대변인,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㉙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업무 소관 부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별표 1]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제3조제1항 관련)

평가시기

- 존속기간 만료 전

평가대상

- 자율신설기구

평가항목
및 기준

- 성과(지표 등) 달성 여부
- 행정수요 지속여부(업무량, 난이도 등 고려)
- 기능수행 효율성(독자성/이관가능성)

평가결과

- 존속기간 연장, 상시기구 전환, 폐지

후속조치

-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규칙) 개정
- 행정안전부 결과 통보
- 시의회 제출(보고)

[별표 2]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9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인천중부 소방서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204(항동)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운북동, 운남동, 중산동, 을왕동, 덕교동, 남북동, 무의동 제외)· 동구·옹진군(북도면, 영흥면 제외) 일원
인천부평 소방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24(갈산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원
인천남동 소방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14(구월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구월동, 만수동, 장 수동, 서창동, 수산동, 운연동
인천서부 소방서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2(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공촌동, 심곡동, 가좌 동, 가정동, 신현동, 석남동, 시천동, 검암동, 경서동, 청라동, 원창동
인천공단 소방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8(고잔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원(송도동 제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도림동, 논현동, 고 잔동
인천계양 소방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774(계산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원
인천미추 홀 소방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주안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일원
인천강화 소방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505(삼성리)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원
인천영종 소방서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268(운서동)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운북동, 운남동, 중산동, 을왕동, 덕교동, 남북동, 무의동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인천송도 소방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첨단대로60번길 15(송도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인천검단 소방서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521-3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당하동, 백석동, 왕길 동, 금곡동, 오류동, 불로동, 대곡동, 원당동

[별표 3]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하부기관 명칭·위치 관할구역(제39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맑은물연구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2	인천광역시 일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	인천광역시 일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평정수사업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2	인천광역시 일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동정수사업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26	인천광역시 일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사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750	인천광역시 일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산정수사업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41	인천광역시 일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	중구, 동구, 미추홀구 일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83	연수구, 남동구, 용진군 일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13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67	부평구, 계양구 일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01번길 26	서구 일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강화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마니산로 9	강화군 일원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국·본부의 수를 현행 16개에서 17개로 1개 증설하고, 일부 실·국·본부의 명칭 및 직제순서를 변경함.(제5조제1항 및 제2항)

- (신설)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 대변인
- (폐지) 자원순환에너지본부
- (통합) 건강보건국·복지국 → 보건복지국
- (명칭변경)
 - 교통건설국 → 교통국
 - 도시재생녹지국 → 도시균형국
- (직제순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국, 시민안전본부, 환경국, 교통국,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 해양항공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글로벌도시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대변인
 - 재정기획관은 기획조정실 밑에 두고, 미래산업국은 경제산업본부 밑에 둠

나. 실·국·본부 상한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자율신설기구를 명시함.(제5조제3항)

- (자율신설기구) 재정기획관,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

다. 시정철학과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신설·폐지된 실·국·본부를 고려하여 일부 소관사무를 조정하여 규정함.(제6조부터 제22조까지)

- 국제교류 협력 사무: 기획조정실 → 글로벌도시국
- 보훈정책 사무: 복지국 → 행정국
- 매립지·자원순환 사무: 자원순환에너지본부 → 환경국
- 에너지정책 사무: 자원순환에너지본부 → 미래산업국
- 산업단지, 첨단과학기술 진흥, 신성장산업, 창업지원 사무: 경제산업본부 → 미래산업국
- 국내·외 투자유치 사무: 경제산업본부 → 글로벌도시국
- 건설행정 관련 사무: 교통건설국 → 도시균형국
- 인구정책 사무: 청년정책담당관 → 여성가족국

라. 직속기관의 설치와 소재지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마. 사업소의 설치와 소재지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37조부터 제73조까지)

바.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와 소관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2월 3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조례 제6979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530명”을 “7,54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18명”을 “129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유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7,541						
정무직 계	3						
정무직	3	1 (시장)					2 (위원장, 상임위원)
일반직 계	3,889						
1급	1				1		
2급	1				1		
2·3급	3	2	1				
3급	21	13		1	4	3	
3·4급	2	2					
4급	161	100	3	4	16	37	1
5급 이하 소계	3,694						
전문경력관 소계	6						
별정직 계	17						
1급 상당	1	1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7	1	6				
5급 상당 이하 소계	9						
연구직 계	198						
연구관	33			25		8	
연구사	165						
지도직 계	29						
지도관	5			5			
지도사	24						
소방직 계	3,405						
소방정	21	8		12			
소방령 이하 소계	3,384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 및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 및 의회사무처 정책지원인력에 대한 정원 11명 증원함.(제2조 및 별표 3)

○ 총 정원: 7,530명 → 7,541명(11명 증)

<기관별 정원>

- 의회사무처의 정원: 118명 → 129명(11명 증)

<직급별 정원>

- 일반직 정원: 3,878명 → 3,889명(11명 증)

· 일반직 3급 정원: 20명 → 21명(1명 증)

· 일반직 4급 정원: 160명 → 161명(1명 증)

· 일반직 5급이하 정원: 3,684명 → 3,694명(10명 증)

· 전문경력관 정원: 7명 → 6명(1명 감)

규 칙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2월 3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규칙 제3287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인천광역시본청의 실장, 국장, 본부장, 과장, 담당관의 직급 및

소속 행정기관장의 직급과 부, 담당관·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부장·담당관·과장·사업소 산하기관장은 실장, 국장, 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장 시본청

제3조(보좌기관)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 시정혁신담당관을 두고, 행정부시장 밑에 감사관을 두며, 문화복지정무부시장 밑에 시민소통담당관 및 청년정책담당관을 둔다.

② 인사, 재정, 홍보 및 정책 분야 등 정무기능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정혁신관을 두며, 시정혁신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경제, 관광, 건설 및 도시계획 분야 등 정무기능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초일류도시기획관을 두며, 초일류도시기획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에 공보담당관, 홍보기획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을 둔다.

② 대변인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공보담당관, 홍보기획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변인, 홍보기획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

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 홍보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언론홍보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도자료(기획특집 포함) 계획 수립 및 조정·제공에 관한 사항
4. 언론 매체 활용 시정 홍보에 관한 사항
5. 언론매체의 보도지원 및 정책설명회 지원에 관한 사항
6. 신문·잡지 등 구독·구입에 관한 사항
7. 소관부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8. 영상편집실, 기자실, 기자회견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시정보도 방송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10. 종합유선방송국 허가에 따른 지역단위 심사 및 추천에 관한 사항
11. 언론매체 사진 및 영상 제공에 관한 사항
12. 시정 주요시책 등의 영상물 제작 관리에 관한 사항
13. 해외 언론에 관한 사항
14. 인터넷 언론에 관한 사항
15. 시보발간 및 고시·공고에 관한 사항
16. 신문 등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17. 언론보도 모니터링 스크랩 및 보도 분석에 관한 사항
18.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홍보간행물 제작에 관한 사항
19.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0. 시 인터넷신문 발간 등에 관한 사항

⑤ 홍보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타 기관 홍보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3. 시정홍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4. 시정메시지와 정책메시지 개발·관리·전달에 관한 사항
5.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시정 홍보 콘텐츠 제작에 관한 사항
7. 인터넷방송 등에 관한 사항

⑥ 도시브랜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브랜드 개발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브랜드 가치재창조에 관한 사항
3. 대표 정책브랜딩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브랜드 마케팅에 관한 사항
5. 브랜드 콘텐츠 제작에 관한 사항
6. 상징물관리위원회 운영 및 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시브랜드 가치재창조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시정혁신담당관) ① 시정혁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시정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1. 시정혁신 관련 정책 총괄·조정 및 발굴에 관한 사항
2. 시정혁신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3. 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혁신 정책의 협업지원에 관한 사항
5. 혁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업무개선 사례 발굴,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7. 시민 제안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제안에 관한 사항
9. 규제개혁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규제개혁(기업 등 지역현장) 과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적극행정 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에 관한 사항
12.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한다.

1. 시본청 및 소속기관, 군·구 감사 및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의 감사수감 및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및 계산증명 등 검사·처리에 관한 사항
4.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도·감독권이 있는 기관 감사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의 비위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7. 하명(첩보)사항조사(수집)처리에 관한 사항
8. 신문, 방송 등 언론보도사항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9. 다수인 관련 민원 및 중앙부처 이첩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0.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 및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 관한 사항
11. 경제자유구역 추진사업 감사에 관한 사항
12. 구도심 재생 선도사업 감사에 관한 사항
13. 각종 시책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4. 청렴도 제고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
15.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16. 자율적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17. 보조금 감사에 관한 사항

제7조(시민소통담당관) ① 시민소통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소통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시민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보좌한다.

1. 시민소통 계획 수립·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민소통 과제 발굴,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회단체 등과의 정책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토론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소통협력분야 정무적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6. 집단민원 및 직소민원 상담·조정에 관한 사항
7. 시민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갈등민원 분석 및 갈등의 다각적 해결을 위한 조정에 관한 사항
9. 공공 갈등의 합리적·체계적인 예방에 관한 사항
10. 갈등·상생 협력에 관한 사항
11. 갈등민원에 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12.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숙의기반 시민참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4.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5.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16. 중앙협력본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청년정책담당관) ① 청년정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청년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보좌한다.

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청년 기본 조례 등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에 관한 사항
7.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8. 중앙부처 청년일자리지원사업연계에 관한 사항
9.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제 추진에 관한 사항

10. 청년 주거 지원 및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11. 청년 진로 및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청년 구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3. 청년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14. 청년소통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청년 주간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재정기획관, 정책기획관, 교육협력담당관, 평가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지방세정책담당관, 납세협력담당관, 회계담당관, 공공시설혁신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재정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며,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교육협력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지방세정책담당관, 납세협력담당관, 회계담당관, 공공시설혁신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평가담당관,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재정기획관은 예산·재정관리·세정·납세협력·회계·공공시설혁신 업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기획조정제에 관한 사항
2. 시정주요정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시정운영과 관련된 각종 국내·외 정보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5. 국회 및 당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6. 간부회의 및 각종 업무보고 운영에 관한 사항
7. 중장기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8. 시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9.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준비 총괄에 관한 사항
10. 실·과별 업무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11. 중앙, 광역자치단체간 분쟁에 관한 사항
12. 군·구간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13. 군·구 의회운영 등에 관한 사항
14. 시의회 사무처와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15. 시의 기구, 직제,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16. 시의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17. 사무위임·전결의 조정에 관한 사항
18. 전시 지방행정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9. 군·구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의 직급(4급) 책정 협의에 관한 사항
20. 인천연구원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22.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 등 초광역권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2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24. 시정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25. 포스트코로나 변화대응 및 정책개발 총괄 등에 관한 사항
 26.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관한 사항
 27. 통계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8. 각종 통계조사 및 통계 간행물·조사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29. 서해평화 관련 업무 총괄 및 기획에 관한 사항
 30. 서해평화 포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1. 평화공감사업 추진 및 통일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3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33. 남북교류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4. 남북 경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5. 남북 기반시설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6. 민주평화통일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7.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38. 지방자치분권 업무에 관한 사항
 39.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 ⑥ 교육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지원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지원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각급학교 등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관한 사항

5.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12. 관내 대학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3. 시민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4. 인천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
15. 외국어 교육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⑦ 평가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본청, 산하기관, 단체의 주요업무에 대한 확인평가 및 결과조치에 관한 사항
2. 시정시책 추진상황 확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주요 대형 프로젝트 점검 및 확인에 관한 사항
4. 지시사항 처리총괄(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장) 및 이행실태 확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환경순찰 실시에 관한 사항
6. 국정시책 합동평가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7. 개별법령(조례 등 포함)상 자치군·구에 대한 자료 요구, 현지조사 및 확인평가에 관한 사항

8. 시장 공약사업 평가관리

⑧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제업무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 조례, 규칙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 조례·규칙의 공포·재의요구 및 사전보고에 관한 사항
5. 훈령, 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및 발령에 관한 사항
6. 법무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에 관한 사항
7.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의 원본 관리에 관한 사항
8. 법령의 질의, 해석에 관한 사항
9.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군·구 조례·규칙안 사전보고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1. 군·구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
12. 법령집 및 자치법규집 관리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에 대한 법무교육에 관한 사항
14. 행정심판 재결의 지원에 관한 사항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사건에 관한 사항
16. 소송사무의 처리 및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17.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18. 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
19.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0. 군·구 소송사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1.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
22.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구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⑨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 추진계획 종합·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정보화업무의 총괄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정보화 교육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정보화사업 계획 및 예산 협의에 관한 사항
 5. 정보화 위원회(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보화사업 추진사항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컴퓨터 정품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사항
 8. 정보화업무대상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9. 정보화사업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10. 시 및 군·구 행정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
 11.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지역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13. 행정정보망(내부·외부망)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4. 정보시스템실 통합·운영(IDC)에 관한 사항
 15. 정보통신 관련 사업 계획(행정, 공공, 도시기반시설 등)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17. 정보보호,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18. 긴급재난안전 통신에 관한 사항

19.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21.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2. 개인정보보호 운영에 관한 사항
 23. 자가 통신 설비 신고 및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4.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시책에 관한 사항
 25. 원격근무지원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6.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7.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8.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29. 청사내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0. 공공시설 및 버스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1. 업무관리(전자문서) 시스템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32. 업무정책포털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33. 그 밖에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 ⑩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재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 예산의 편성총괄(특별회계 포함)에 관한 사항
 3. 예산집행의 감독에 관한 사항
 4. 예산 이·전용, 이체 및 이월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5. 전시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6. 통합관리기금 운용과 기금운용 총괄에 관한 사항

7. 용역과제 선정 및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8. 예산성과계획서 작성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10. 중장기 재정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1. 재정분야 평가에 관한 사항(국가균형발전사업 포함)
12. 원도심특별회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⑪ 재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고보조금의 총괄 확보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지방교부세의 총괄 확보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군·구 예산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심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6. 지방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한도액 결정에 관한 사항
7.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총괄에 관한 사항
8. 공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중앙부처협의 및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9. 시설관리공단,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경영성과 계약에 관한 사항
11. 출자·출연기관 관련 사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12.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13. 재정부담 협약사항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⑫ 지방세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세입 총괄과 지방세 수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부과업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과징현황 및 통계연감 작성에 관한 사항
 5. 세무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6. 시금고 수납대행 약정 및 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세정정보화 및 전자납부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8. 납세편의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9.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10.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지방세시가표준액 조사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2. 지방세 관련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13. 세원개발에 관한 기획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14. 과세자료조사와 세무조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5. 지방세 관련 특별감사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세외수입 업무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7. 세입 결산에 관한 사항(시 일반회계)
 18. 국가 세입 보고·통계에 관한 사항
 19. 채권관리 및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20. 각종 증명수수료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21. 신규 세외수입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
 22. 그 밖의 지방세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⑬ 납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체납정리 총괄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체납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
 3. 리스·렌트차량 유치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체납 관련 특별감사반 운영에 관한 사항
 5. 납세편의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체납 관련)
 6. 지방세 관련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관리에 관한 사항(체납 관련)
 7.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8. 정리 보류된 조세채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고액체납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고발 등 행정제재 업무에 관한 사항
 11. 부동산,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등 체납자 소유 재산 압류에 관한 사항
 12. 압류채권의 추심 및 압류재산의 매각처분에 관한 사항
 13. 체납차량 통합영치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 과오납금 환불에 관한 사항
 15. 시세 과년도 체납자료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16.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정리 총괄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정리 컨설팅 운영(재산조회, 압류 등 체납처분 행정지원 및 진단·분석)에 관한 사항
 18. 그 밖의 지방세 체납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⑭ 회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출예산 경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원천징수 납입에 관한 사항

3.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4. 국비예산 및 일상경비 경리에 관한 사항
 5. 자금전도에 관한 사항
 6. 회계 증명서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7. 일상경비출납계산서 검사에 관한 사항
 8. 시비·국비회계의 총괄에 관한 사항
 9. 지출원 사무에 관한 사항
 10. 시비·국비의 결산에 관한 사항
 11. 국비 및 지방비 지출계산에 관한 사항
 12. 회계문서의 심사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13. 공사, 제조, 물품구입 및 수선의 참관에 관한 사항
 14. 공사도급 및 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
 15. 인쇄물 제조, 구매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계약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7.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18.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19. 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20. 자금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1. 일시차입에 관한 사항
 22.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사항
- ⑮ 공공시설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산관리관 지정에 관한 사항
3.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사항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 실사, 재산 발굴 및 활용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7. 물품정수관리, 물품수급계획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8. 물품 불용결정 및 불용물품 처분 등에 관한 사항
9. 관용차량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인사과, 자치행정과, 보훈정책과, 행정체제혁신과, 시민봉사과, 청사시설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인사과장, 자치행정과장, 보훈정책과장, 행정체제혁신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시민봉사과장 및 청사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직원 복무관리 및 당직운영에 관한 사항
3. 행정공제회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4. 전시 자체 기관이동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청사경비 및 청원경찰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6. 직장민방위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간부회의 및 직원월례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주요 의식행사, 의전 및 영접에 관한 사항
 9. 시장 주관행사의 의전에 관한 사항(주관부서 소관 업무 관련 행사 협조)
 10. 시 방문 주요인사 영접 및 안내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지원 및 공무원단체 협조 등에 관한 사항
 12. 직원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
 13. 직원복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 등(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노무, 직무훈련 등 관리·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15. 청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16. 인천애틀 사용허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사항
 18.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에 관한 사항
 19. 지방행정동우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0. 출향인사 및 향우회에 관한 사항
 21.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다른 실, 국,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인사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2. 시와 시의회, 시와 군·구 또는 군·구 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임용(소방직 제외)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승진심사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인사기록 관리 및 공무원 각종 증명 발급 업무에 관한 사항
6. 초과인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호봉승급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
9. 공무원 해외파견, 어학연수 및 파견명령 등에 관한 사항
10. 민간인에 대한 포상 및 표창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교육훈련 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산점 평정에
관한 사항
12.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표창 및 공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 사기진작(해외시찰, 선진지 견학 포함)에 관한 사항
15.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16. 공무원 징계 및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시험제도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시험문제 출제 및 편집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
19. 공무원 등 임용시험 관리(공채·경채·전직)에 관한 사항
20. 국가가 실시하는 시험의 협조 및 그 밖에 시험사무에 관한 사항
21. 각종 자격·면허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
22. 공무원 교육훈련 및 인재개발원 관련 분야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23. 공무원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24. 공무원 보수 등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25. 공무원 연금 및 4대보험에 관한 사항
- ⑤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구역 조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군·구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3. 군·구 행정 지도·감독 및 행정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초단체장·부단체장 회의, 시장 및 부시장 중앙회의에 관한 사항
5. 행정안전부 지원(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6. 적십자회비 모금에 관한 사항
7. 민생현장 방문 및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생활공감정책참여단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원봉사활동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10.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1. 전시주민 및 차량통제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2. 「지방자치법」 교육·홍보 등 추진에 관한 사항
13. 지방행정동향 관리에 관한 사항
14. 선거 및 국민투표 사무에 관한 사항
15. 시정 현장견학 운영에 관한 사항
16. 행정사 업무 지도에 관한 사항
17.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에 관한 사항
18. 가족관계 사무 협조에 관한 사항
19. 국외이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
20. 통·반 조직관리 및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에 관한 사항
22. 이북5도사무소 지원에 관한 사항
23. 국민운동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바르게살기운영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새마을장학금, 새마을문고 등)
24. 민관협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5.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에 관한 사항
26. 위원회 관리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27. 협치 친화형 제도 신설·개선에 관한 사항
28. 인천형 민관협치 모델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29. 비영리 법인·단체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30.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
31. 지역공동체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32. 주민자치 활성화단체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3.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4. 주민자치제도 혁신에 관한 사항
3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및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36. 공동체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37. 마을공동체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
38. 지역사회혁신에 관한 사항
39. 민간위탁사업 사무 총괄에 관한 사항
40.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1. 민간위탁사업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⑥ 보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훈정책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2. 보훈대상 예우 및 보훈증진에 관한 사항
3.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보훈정책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보훈 관련 행사 추진 및 보훈단체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6. 보훈단체 지원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7. 보훈회관 운영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8. 광복회관 위·수탁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호국보안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보훈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현충시설 확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1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지원에 관한 사항

⑦ 행정체제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은 분장한다.

1. 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행정체제 개편 관련 행정구역 조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4. 행정체제 개편 대외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⑧ 시민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민원실 운영 및 민원조정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
3. 민원상담제 및 창구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4. 여권발급 업무에 관한 사항
5.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리에 관한 사항
6. 국민신문고 및 청원24 운영에 관한 사항
7. 120미추홀콜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록관(행정자료실 포함) 운영 및 발간에 관한 사항
10.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⑨ 청사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 및 관사의 관리(임대 등)에 관한 사항
2. 청사 신축, 증축, 개축, 보수공사, 사무실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청사의 조경·방역 및 관련비품 관리에 관한 사항
4. 회의실(방송시설 포함), 식당, 매점 등 청내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6. 인천애뜰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7. 청사 건립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에 관한 사항
8. 청사 건립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청사 입주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10. 청사 건립공사 추진 및 현장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청사 건립추진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12. 청사 건립 관련 주변지역 연계 발전방안 등에 관한 사항
13. 관계 기관 업무협약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제11조(시민안전본부) ① 시민안전본부에 안전상황실, 안전예방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특별사범경찰과, 비상대책과를 둔다.

② 시민안전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안전상황실장, 비상대책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안전예방과장, 사회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 특별사범경찰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 안전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 및 기획·발굴에 관한 사항
2. 지역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국가기반체계보호 포함)
3. 시·도 안전정책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군·구 안전정책 관련 조례 제정·운용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 정책·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에 관한 사항
7. 국가 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안전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안전도시연구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11. 시·도 재난안전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민·관 협력 및 지역 안전공동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3. 재난관리평가 및 재난관리 실태 공시에 관한 사항
 14. 국제안전도시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15.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관한 사항
 16. 안전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
 17. 재난·재해 등에 대한 수집·분석 및 상황전파·보고에 관한 사항
 18. 재난·재해 및 기상특보 등 수집된 상황에 대한 신속한 초동조치에 관한 사항
 19. 재난·재해방송 온라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0. 재난대비 유관 기관 통합안전협력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21. 재난관련 통계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22. 폐쇄회로(CCTV) 설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4. 재난안전상황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재난안전상황시스템 연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26. 긴급재난문자 운영 및 훈련에 관한 사항
 27. 재난전파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 NDM S 상황전파 등)에 관한 사항
 28. 재난관리종합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용에 관한 사항
 29.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30. 재난 예·경보 시스템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31.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
- ④ 안전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대시민재해 안전관리 총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3.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조사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5. 안전감찰에 대한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6. 안전 분야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7.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안전예방 특화사업(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
 9. 시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0. 국민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11. 지역안전지수에 관한 사항
 12.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13.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시민안전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5.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16. 안전보안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안전지도(생활안전지도 포함)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⑤ 사회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재난관리 종합계획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총괄에 관한 사항
 3. 사회재난상황의 접수·파악, 전파, 상황판단, 초동조치 및 지휘에 관한

사항

4. 사회재난대비 위기징후 분석·평가·경보발령에 관한 사항
5. 사회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및 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지
도에 관한 사항
6. 사회재난대비 민·관·군 등 유관 기관 및 자치단체간 협조지원체제 구
축에 관한 사항
7. 사회재난 관련 법령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사회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관한 사항
9. 사회재난 관련 지역 대형재난 이력관리제에 관한 사항
10. 지역 사회재난전문가·모니터요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사회재난 피해정보, 언론보도 등 정보수집·분석·전파에 관한 사항
12. 시·도 사회재난 긴급지원체계 추진에 관한 사항
13. 자연·사회재난피해 심리관리지원시스템에 관한 사항
14. 자연·사회재난 및 국가기반분야 매뉴얼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15. 재난대응훈련(안전한국훈련, 매뉴얼 훈련 등) 계획수립 및 운영·평가
에 관한 사항
16. 사회재난 지역 내 안전수준 진단 및 위험요소 발굴에 관한 사항
17. 재난취약시설 재난의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18. 특수재난업무 재난역량 분석·진단 및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사
항
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20.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지정 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1.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2. 유선 및 도선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3. 물놀이시설 관련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4. 「수상레저안전법」에 관한 사항
 25.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에 관한 사항
 2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7.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8. 시·군·구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도·감독 총괄에 관한 사항
 29. 안전신고 기획, 시행(시스템·현행관리 포함) 등에 관한 사항
 30. 사회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1. 사회재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32. 사회재난에 대한 이재민 구호,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33.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관한 사항
 3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개별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지하차도 등) 등 관련 업무는 소관부서에서 수행)
- ⑥ 자연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재난 관리 종합계획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자연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총괄에 관한 사항
 3.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연재난 관련 법령 등 관리 및 자연재난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5. 재난대응훈련(겨울철 폭설, 응급복구 등)에 관한 사항

6.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관리 및 현행화에 관한 사항
7. 재난 관련 민간자율조직 등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8. 자연재난 지역 내 안전수준 진단 및 위험요소 발굴에 관한 사항
9. 자연재난 상황의 접수·파악, 전파, 상황판단, 초동조치 및 지휘에 관한 사항
10. 자연재난 대비 위기징후 분석·평가·경보발령에 관한 사항
11. 자연재난 대비 민·관·군 등 유관 기관 및 자치단체간 협조·지원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12. 자연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및 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13.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4. 자연재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15.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및 자연재난 관련 지역 대형재난 이력관리제 시행에 관한 사항
16. 자연재난 관련 방재시설기준의 설정·운영 및 시설물별 방재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17. 지역 자연재난 전문가·모니터요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이재민 구호,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19. 재해위험지구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20.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 및 조례 제정·관리에 관한 사항
21. 상습침수지역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22.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제작에 관한 사항
23.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4. 우수유출 저감시설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도시·군계획시설(유수지)에 대한 기본방향·계획(설치, 관리 등),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민원(주민 제안 등)에 관한 사항
26.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7. 자연재해 저감 시설물 점검에 관한 사항
28. 자연재난 예·경보 전달체계 구축(NDMS 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9. 낙뢰 피해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0. 풍수해 보험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31. 가뭄대비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32. 폭염 대비 피해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33.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추진 및 지진재해대응 훈련·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4. 배수문·배수펌프장·저수지·소하천·유수지 등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35. 배수문, 배수펌프장 설치·관리 및 유수지 관리에 관한 사항
36. 급경사지 재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⑦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별사법경찰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2.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에 대한 단속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등 역량 함양에 관한 사항
4. 특별사법경찰의 효율적 방안 등 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
5. 특별사법경찰 지명 제청 및 철회에 관한 사항
6. 군·구 특별사법경찰 지원에 관한 사항
7.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유관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8. 법률자문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
9.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및 수사에 관한 사항
10. 수사사건 송치 및 행정처분 통보에 관한 사항

⑧ 비상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군 침투·도발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작성 및 국지도발 관련 위기대응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국가지도통신망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향토예비군의 날 행사 및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시병무업무 수행·지원 및 비상대비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5. 인력동원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주민신고망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비상사태 발생 시 군·경 협조 및 상황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8. 총무계획의 자료수집, 관계 기관 협조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9. 총무계획의 지침 작성 및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10. 정부연습 및 군·경 협조 종합 훈련, 자체훈련에 관한 사항
11.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인력·물자·시설 동원계획 및 조정 통제에 관한 사항

12. 동원자원 관리에 대한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13. 비상대비업무 확인·평가·지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군부대 훈련·작전의 협조에 관한 사항
15. 안보정책자문관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16.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17. 병무청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8. 사회복지무요원 관련업무 총괄(시본청 포함)에 관한 사항
19. 민방위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0. 민방위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1. 화생방 장비보급 및 화생방 훈련에 관한 사항
22.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23. 민방위대 편성·운영 및 동원에 관한 사항
24.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민방공·재난 경보발령 및 상황 전파에 관한 사항
26. 읍·면·동 경보담당자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7. 경보시설의 유지관리(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8. 국가기념일, 민방위훈련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사이렌 울림에 관한 사항
29.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및 노후 시설 교체에 관한 사항
30. 경보통제소 24시간 상황근무 및 통제소운영에 관한 사항
31. 민방위경보 사각지역해소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32. 서해5도·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33. 민방위 경보 가청율 조사에 관한 사항

34. 서해5도·접경지역 상황발생 시 비상관리체계 유지에 관한 사항
35. 민방위 경보시설 일일점검에 관한 사항
36. 비상상황 시 주요기관 방송실 운영에 관한 사항
37. 접경지역 군부대 직통전화를 통한 비상관리체계 유지에 관한 사항
38. 관·군 협력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
39. 대테러 업무 지원 총괄에 관한 사항

제12조(환경국) ① 환경기후정책과, 매립지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안전과, 대기보전과, 수질하천과, 하수과를 둔다.

② 환경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환경기후정책과장, 매립지정책과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안전과장, 하수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대기보전과장 및 수질하천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 환경기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 추진에 관한 사항
3. 민간환경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인천환경공단 예산운영·경영지도 등 「지방공기업법」 관련 업무 총괄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 대시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기후변화대응 업무총괄 및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9. 온실가스 저감에 관한 사항

10. 기후변화대응 산·학·연 기술협력 및 대외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11. GCF(녹색기후기금)본부 및 이사회 지원에 관한 사항

12. 기후환경 관련 국제기구 유치, 협력 및 국제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환경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4. 기후환경산업, 녹색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6. 군·관 환경협의회,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 관한 사항

17. 녹색생활 실천(5R운동 포함)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매립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행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기반 마련 추진에 관한 사항

2. 매립지 조성에 관한 사항

3.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4. 수도권매립지 부지이용 등 협의에 관한 사항

5.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 관련 중앙·타 지자체간 정책 협의에 관한 사항

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및 유관단체와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7. 매립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매립지 정책수립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⑤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청소 행정 개선·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쓰레기 종량제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5. 폐기물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6. 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7.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관한 사항
8.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9. 재활용센터에 관한 사항
10. 자원 재활용 활성화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1. 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 규제에 관한 사항
12.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13. 사업장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4. 건설폐기물 관리 및 순환골재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15.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6.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18.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9.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자원재생센터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자치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22.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환경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양보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빛공해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3. 소음·진동 사무에 관한 사항

4. 지역환경보건 사무에 관한 사항

5.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6.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전문서비스업 등록에 관한 사항(환경전문공사업 등 4가지 업종 포함)

9. 석면피해구제 및 석면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10.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11.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

1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13.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4. 도시계획시설결정 협의 및 그 밖에 환경관련사항 협의에 관한 사항

15. 자연보호운동 기본계획 수립 등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16.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17.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8. 생태·경관 보전지역 등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9. 자연공원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20. 내륙습지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21. 생물다양성 등 생태계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22. 생태계 교란 및 외래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3.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24. 생태통로 및 녹지축 연결에 관한 사항
25. 영흥화력발전 민관공동조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⑦ 대기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보전 종합대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수도권 대기질 개선 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수도권 대기질 개선 광역협의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 할당·감량에 관한 사항
6. 대기배출업소 총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7.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계획 수립 및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8. 기업 대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9. 청정연료사용 및 규제·대체업무에 관한 사항
1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1. 미세먼지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2.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3. 대기오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오존종합대책 수립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5. 대기오염경보제 시행에 관한 사항
16.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18. 산업단지 환경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9. 산업단지 대기·폐수 설치허가(신고) 업무에 관한 사항
20. 산업단지 대기·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1. 산업단지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 신고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2. 산업단지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23. 환경관리 우수기업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24.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5. 운행차 검사대행자 관리에 관한 사항
26. 특정경유차 저공해 차량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7.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8. 저공해 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
29.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에 관한 사항
30.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에 관한 사항
31. 노후차량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32. 128 환경신문고 및 신고보상제 운영에 관한 사항
33. 악취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4. 악취발생사업장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5.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에 관한 사항
36.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관리에 관한 사항

37. 악취관리기금 운용 및 조례에 관한 사항

⑧ 수질하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보전 종합대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수질 관련 업무총괄에 관한 사항
3. 폐수 배출업소 관련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4. 하천, 호소, 수질검사 및 오염 예방에 관한 사항
5. 수질 관련 환경오염 사고에 관한 사항
6. 상수도 수자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7. 지하수개발이용 등에 관한 사항
8. 수처리제에 관한 사항
9. 약수터 및 음용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10. 먹는 물관리 등 샘물에 관한 사항
11. 가축분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3. 공중화장실 확충에 관한 사항
14.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상수도사업본부(마을상수도사업) 예산운영 등 총괄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6. 종합건설본부 지도·점검(하천분야)에 관한 사항
17. 하천정비 증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하천정비 사업(자연형하천)에 관한 사항
19.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0. 소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
21. 폐천 부지 등의 교환, 양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하천,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23.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4. 하천정비 사업(수해상습지, 하도정비, 개수사업 등)에 관한 사항
25. 하천 점유·사용료 징수 및 교부에 관한 사항
26. 하천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7. 폐수처리업 허가·변경 및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28. 수질이동측정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
29. 하천관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0.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사항
31. 도시·군계획시설(하천)에 대한 기본방향·계획(설치, 관리 등),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민원(주민제안 등)에 관한 사항
32. 물순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3.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34. 한강수계기금 사업 추진 및 한강수계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35. 물놀이 수경시설 설치 신고·변경 및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 ⑨ 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행정 종합조정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업무 총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현금 및 유가증권 관리에 관한 사항
6.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공공하수도 신·증설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공공하수처리시설(도서지역 포함) 고도처리·개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도시·군계획시설(하수도)에 대한 기본방향·계획(설치, 관리 등),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민원(주민제안 등)에 관한 사항
10. 공공하수도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
1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및 하수처리구역 공고에 관한 사항
12. 종합건설본부 지도·점검(하수분야)에 관한 사항
13. 하수관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4. 공공하수도 민자사업 추진(BTL, BTO)에 관한 사항
15. 하수시설물 안전점검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6. 인천교 등 간선관로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17.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 사업에 관한 사항
18.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지도·점검(민자처리시설 포함)에 관한 사항
19. 군·구 공공하수관로 유지·관리 및 지도·점검(민자하수도 포함)에 관한 사항

20. 하수도대장 및 하수관망도 관리에 관한 사항

21. 군·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22.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3.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교통국) ① 교통국에 교통정책과, 교통안전과, 버스정책과, 택시운수과, 철도과, 도로과 및 교통정보운영과를 둔다.

② 교통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교통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및 택시운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통안전과장 및 교통정보운영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철도과장 및 도로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행정의 종합계획과 중·장기 및 각종 교통대책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통행정제도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시교통정비계획 및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인천교통공사 관련 업무 총괄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교통사업 특별회계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6. 통합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운영 및 대중교통 통합 요금에 관한 사항
7. 교통수요관리 시행 및 교통혼잡 특별구역 관리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8. 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신교통 시스템(BRT)에 관한 사항
10. 여객자동차터미널 면허허가·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친환경 교통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도시·군계획시설(역전광장)에 대한 기본방향·계획(설치, 관리 등),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민원(주민제안 등)에 관한 사항
 13. 특별수송대책 총괄에 관한 사항(명절, 파업, 대학입시, 재난시 등)
 14. 수도권 버스, 전철 통합(환승) 요금제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미래교통수단에 관한 사항
- ④ 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문화 향상 등에 관한 사항
 3.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및 위험도로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어린이, 노인, 장애인) 지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6. 교통안전표지 관련 배상심의 및 소송에 관한 사항
 7. 교통안전관리자 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9.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협력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11. 보행안전·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12.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13. 자전거시설 인프라 구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14. 주차시설 운영·관리분야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5. 민자유치, 민영주차시설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6. 기계식 주차장에 관한 사항
 17. 주차장 설치 제한(완화) 등에 관한 사항
 18. 공영주차장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9. 도시·군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한 기본방향·계획(설치, 관리 등),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민원(주민제안 등)에 관한 사항
 20. 주차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1. 시설관리공단(공영주차장) 위·수탁 및 지도·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
 22. 자치구 위임 공영주차장 지도·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
 23.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개방에 관한 사항
 24. Green Parking 사업 및 친환경적 주택가 주차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25.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⑤ 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내버스 운송사업 기본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 사업용자동차 공급 기준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면허 및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4. 시내버스 서비스 및 시설개선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시내버스 정류소 인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마을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면허취소 포함)

7. 시내버스 요금 인가 수리에 관한 사항
8. 시내버스 운행노선 총괄조정제에 관한 사항
9. 시내버스간 환승 및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10.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1. 시내버스 조합 및 노조에 관한 사항
12.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3. 버스색상, 번호체계 및 승하차 단말기 등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14.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시내버스 레드존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6.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제도정비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
17. 시내버스 공동운수 협정에 관한 사항
18. 업체·노조·시민단체 등의 협상관리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19. 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제도개선 업무에 관한 사항
20. 운수종사자 근무환경개선 및 복지관리에 관한 사항
21. 표준운송원가산정 및 표준경영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
22. 수입금(현금·카드 등) 통합정산시스템 구축 및 수입금 정산에
관한 사항
23. 수입금 관리배분(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4.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
25. 시내버스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6. 시내버스 사업용자동차 청결유지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시내버스과징금(과태료) 징수지도에 관한 사항
28.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감독에 관한 사항
29. 교통 불편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버스 분야)
- ⑥ 택시운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택시총량제(택시 공급, 배정)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개인택시 포함) 운송사업 인·면허에 관한 사항
 3. 택시사업계획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개인택시 제외)
 4. 모범·대형택시에 관한 업무와 택시요금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5. 택시개선 종합대책 및 택시자율 보상 감차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6. 여객자동차운송 가맹사업 면허(택시)에 관한 사항
 7.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교통연수원 운영·관리 및 운송종사자 교육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택시운수종사자 후생복지(운수종사자 쉼터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택시, 개인택시) 조합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택시승차대 설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2. 택시 전액관리제 경영개선 및 서비스 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
 13. 택시 운송가맹사업 활성화 추진과 운행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과 부가세 경감액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5. 택시법규위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과징금·과태료 징수지도에 관한 사항
16. 불법택시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7. 택시사업구역별 운영 및 수도권통합 운영(공동사업구역)에 관한 사항
18. 수송동원(충무4700 교통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19. 교통 불편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택시 분야)
20. 자동차관리사업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1. 자동차정비사업 및 폐차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2. 중고자동차매매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3. 자동차관리사업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4. 자동차구조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5.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6.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7.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28. 자동차 관리 전산화에 관한 사항
29. 자동차검사에 관한 사항(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및 지도·감독 포함)
30. 택시미터 검정에 관한 사항(기관지정 및 지도·감독 포함)
31. 불법 주·정차 및 주·정차 견인관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2.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33. 교통지도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34.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5.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6. 운수행정(전세버스 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7. 자동차 대여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에 관한 사항
 38.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전세버스, 대여자동차, 특수여객, 택시 등) 법규위반 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0. 사업용자동차(전세버스, 택시) 청결유지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⑦ 철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고속·일반·광역철도 계획, 건설, 운영 등 전반에 관한 사항
 3. 도시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고시에 관한 사항
 5. 도시철도운송사업(면허 등)에 관한 사항
 6.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7.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도시·군계획시설(철도)에 대한 기본방향·계획(설치, 관리 등),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민원(주민제안 등)에 관한 사항
 9. 철도보호지구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0. 철도 운영노선의 재난·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1. 철도안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2. 철도건설 관련 지방채에 관한 사항

13. 철도 기부채납 재산에 관한 사항
14. 경인선 지하화에 관한 사항
15.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
16.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에 관한 사항
17. 궤도사업 허가에 관한 사항
18.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등록 등)에 관한 사항
19. 역사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20. 도시철도운영기관의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⑧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2. 도로사업비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비관리청사업(도로개설 및 포장) 시행인가에 관한 사항
4. 접도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로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에 관한 사항
6. 도시·군계획시설(도로, 교차점광장)에 대한 기본방향·계획(설치, 관리 등),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민원(주민제안 등)에 관한 사항
7. 도로유지관리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8. 도로시설 및 부속물 개량, 정비에 관한 사항
9.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노선인정 및 변경과 도로 구역결정에 관한 사항
10. 지하차도 펌프장에 관한 사항

11. 도로대장관리에 관한 사항
12. 설해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3. 도로표지판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4. 종합건설본부(도로분야) 지도·감독 및 자치구 도로건설에 관한 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15. 도로·터널 등 소관분야와 관련된 민자유치업무에 관한 사항
16. 광역교통망 계획수립 및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
17. 국가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
18. 타 기관·부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중 도로 협의에 관한 사항
19. 도로사업 중장기계획수립 및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20. 도로통계에 관한 사항
21. 도로조명시설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2. 종합건설본부 및 군·구의 도로조명시설 업무 지도·감독
23. 타 기관 시행의 도로조명시설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24. 도로점용 및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공중케이블 정비사업 포함)
25. 고속도로 관련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6. 지역간 도로이용 합리화 방안 연구 검토에 관한 사항
27. 광역교통시설(도로분야)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8. 국유재산(국토교통부 소관), 공유재산(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29. 도로사업(과년도)에 따른 토지 및 지상물 보상에 관한 사항
30. 도로 정보화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1. 제2영흥대교 건설에 관한 사항

⑨ 교통정보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신호기(부속시설물 포함)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2. 전자교통신호체계 기술운영에 관한 사항
3. 교통신호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BRT 우선신호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통정보센터 정보통신 보안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통정보 자가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통정보시스템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8. 버스정보시스템(BIS)과 버스관리시스템(BMS)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버스정보안내기(BIT) 시설물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1.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2.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3. 교통정보 CCTV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교통신호시설물 관련 배상심의 및 소송 업무에 관한 사항
15. 전자교통 시설물 고장알림단 및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사항
16. 전자교통시설물 표준 디자인 및 설치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
17. 교통 대용량 데이터 생성 및 연계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18. 첨단광역교통 IT인프라 종합계획 수립 및 협의·조정 관련 사항
19. 첨단광역 ITS 교통분야에 관한 사항
20. 공공주차장 및 민간주차장 지능형 주차안내 용·복합 서비스 추진에

관한 사항

21. 첨단교통기반 신호체계 개선 및 상호연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제14조(경제산업본부) ① 경제산업본부에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정책과, 공정사회경제과, 노동정책과, 농축산과, 산업정책과, 창업벤처과, 데이터산업과, 반도체바이오과, 산업입지과, 에너지산업과를 둔다.

② 경제산업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미래산업국장은 지방부사이관으로 보하되 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공정사회경제과장, 노동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농축산과장, 산업정책과장, 창업벤처과장, 데이터산업과장, 반도체바이오과장, 산업입지과장, 에너지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미래산업국장은 산업정책, 창업벤처, 데이터산업, 반도체바이오, 산업입지, 에너지산업 업무에 관하여 경제산업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수립 및 정책 대안 개발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분석 및 경제정보에 관한 사항
3. 전략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군·구 지역경제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5.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6. 상공회의소 관련 업무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7.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사무에 관한 사항
8.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종합조정(분야별 FTA 관련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담당)에 관한 사항

9. 일자리종합계획 수립 추진 등 일자리 총괄추진에 관한 사항
10. 지역일자리목표 공시제 추진에 관한 사항
1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2.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13. 고용창출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14. 일자리 협업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5. 일모아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16. 제물포스마트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7. 군·구 실업대책 추진 지도에 관한 사항
18. 지역 고용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취업지원(직업훈련 등)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0. 취업박람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직업소개(소), 직업지도, 직업정보처리 등에 관한 사항
22. 기능경기대회 지원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3. 취업지원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24. 상거래 질서 확립과 가격표시제 이행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5. 소비자보호대책 수립 및 소비자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26. 특수거래(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 등)에 관한 사항
27. 소비생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8. 소비자단체 등록 및 소비자 권익증진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9. 물가종합대책수립 및 시 소관 주요 요금 심의에 관한 사항
30. 고용노동부 소관사무 중 다른 실·국·본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1.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2. 그 밖에 본부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⑤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6. 유통산업발전에 관한 사항
 7.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에 관한 사항
 8. 지역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금융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10.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11. 전통시장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2.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사항
 13. 대부업, 담배사업, 복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4.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5. 지하도상가에 관한 사항
 16. 지하도상가 위·수탁관리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 지하도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9. 유통업상생협력과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⑥ 공정사회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적경제 관련 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5.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정무역에 관한 사항

7. 공유경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8. 공정거래지원에 관한 사항

⑦ 노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정책 계획 수립 및 노동현안 지원 총괄에 관한 사항

2. 노사화합 및 지원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노동 관련 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노사 분류 및 노동쟁의의 예방 등에 관한 사항

6.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 및 근로자문화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등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8. 비정규직 종합대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9. 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10. 지역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11. 노동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12. 소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종사자 등에 대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전에 관한 사항

⑧ 농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3. 농업단체 업무에 관한 사항

4. 농업기반시설(수리시설, 방조제 등) 관리 및 기반정비에 관한 사항

5. 축산업육성 및 경쟁력 제고사업에 관한 사항

6. 사료제조업(등록) 사료검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7. 가축통계 및 가축사육 지도업무에 관한 사항

8. 가축질병예방 및 방역지휘에 관한 사항

9. 동물병원 및 동물의약품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농축산물도매시장의 건립·관리 및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양정행정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12.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경리에 관한 사항

13. 양곡대행기관 및 수탁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14. 양곡부산물 처리에 관한 사항

15. 양곡 가공공장, 도정업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6.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선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 관광농원, 농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휴양단지 조성, 농촌 정주생

활권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8. 보건환경연구원(가축질병, 축산물 위생관리 분야)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19. 농촌활력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20. 식품산업 및 식품진흥에 관한 사항
21. 농산물 및 그 가공품과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제에 관한 사항
22.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
23. 친환경농업육성 업무에 관한 사항
24. 농산물 학교급식 계약재배에 관한 사항
25. 농업기계화 육성에 관한 업무 및 농업기술센터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26.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27. 농지의 소유 및 보전·이용에 관한 사항
28. 축산물가공업허가(품목제조) 및 위생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9. 도축장, 집유장 영업허가 및 축산물도매시장 지도·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
30.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31.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2.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33. 식생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4. 스마트팜 등 농식품 ICT 융복합 사업에 관한 사항
35. 직접지불제 지원에 관한 사항

36.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7. 인삼산업 육성 및 생산·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38. 시설원예산업 육성 및 현대화에 관한 사항

39.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에 관한 사항

40. 가축사육환경 개선 및 축산분뇨 자원화에 관한 사항

41. 축산물 브랜드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⑨ 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육성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기업 지원기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업 애로에 관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제조업부회에 관한 사항

7. 공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유망 기업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

10. 충무계획 작성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수출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12. 수출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약 및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3. 박람회 지원에 관한 사항

14. 해외 인천상품 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해외시장 설명회 및 우수 수출상품 해외 홍보에 관한 사항

16.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
17. 수출동향 분석 및 지표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
18.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19. 컨벤션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0.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기업분야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사항
22.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3.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
24. 산업디자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5. 디자인 국제행사에 관한 사항
26. 지역 지식정보산업 지원업무(정보기술연구센터 및 산업기술정보망)에
관한 사항
27. 산업기반정책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28. 산업기반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29. 지역산업 진흥·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0. 지역산업육성 위원회 관리 및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31.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운영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
리에 관한 사항
32. 전기제품 요건 면제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관한
사항
33. 「계량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34. 기업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5.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36. 해외 기술교류 및 협력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37. 산·학·연 협력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8. 산업표준화에 관한 사항
39.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지역협력센터, 기술혁신센터, 산학연 컨소시엄 등)에 관한 사항
40.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1.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42.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3. 과학기술진흥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44.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45. 과학영재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6. 인천어린이과학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7. 과학관 등록에 관한 사항
48. 인천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⑩ 창업벤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술창업지원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창업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4. 창업기업 투자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5. 창업기업 유통·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6. 대학 등 민간창업기관과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7. 창조경제 정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9. 창업지원 인프라 등 생태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창업 정부지원사업 연계업무에 관한 사항
11. 벤처단지 등 벤처기업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12. 유망 창업기업 고성장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3. 창업육성 위원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창업 및 벤처 펀드에 관한 사항

⑪ 데이터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공공 및 산업데이터 기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데이터기반행정 기획·조정·운영에 관한 사항
6.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빅데이터 분석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8.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⑫ 반도체바이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장품 공동브랜드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로봇랜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로봇산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⑬ 산업입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협의·조정 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혁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5. 일반·도시첨단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에 관한 사항
 6. 일반·도시첨단 산업단지 관리 및 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승인·고시 에 관한 사항
 7. 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8.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재생사업지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장총량제 및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12. 산업단지(일반·준산업·도시첨단) 지정(개발)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13. 준공된 산업단지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14.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및 고시에 관한 사항
 16. 산업입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산업단지 개발 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산업입지 공급 계획 수립 및 고시에 관한 사항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 ⑭ 에너지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해상풍력발전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자동차(전기·수소등)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지원에 관한 사항
 5. 천연가스, LNG자동차 보급·지원에 관한 사항
 6. 도시가스에 관한 사항
 7. 집단에너지사업에 관한 사항
 8.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사항
 9. 석유 및 석탄에 관한 사항
 10. 채광계획 인가 등 광산에 관한 사항
 11.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 구축에 관한 사항
 12. 전기사업 및 안전관리 대행업,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3. 전기공사업, 설계업 및 감리업에 관한 사항
 14. 에너지 분야(전기,가스) 산업자원 동원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15. 지역에너지 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6. 신·재생에너지 인식개선 등 수용성 확보·지원에 관한 사항
 17.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18. 에너지 절약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19. 출자기관(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0. 에너지사업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21. 에너지 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해양항공국) ① 해양항공국에 섬해양정책과, 항공과, 물류정책과, 항만연안과, 해양환경과, 수산과를 둔다.

② 해양항공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섬해양정책과장 및 물류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하며, 항공과장, 항만연안과장 및 해양환경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하고, 수산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섬해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 관련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항만 관련 유관 기관 업무 공조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해양·항만 관련 국제협력 및 해양·항만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국제 크루즈 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
5.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마리나항만 관련 사업 육성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레저·연안크루즈 구성 등 해양발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8.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관광·레포츠 정책개발 및 연구·시행에 관한 사항
9. 해양산업육성에 관한 정책수립·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10. 해양장비, 해양플랜트 등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1. 해양산업·해양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총괄 및 해양과학기술인프라(연구소 설립·운영, 인력양성)구축에 관한 사항
12. 해양산업분류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13.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사항
14. 극지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15.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섬정책관련 총괄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7. 섬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섬종합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항
19. 섬종합개발사업 보조금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20.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1. 접경지역지원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항
22. 접경지역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23. 초광역 접경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4. 섬지역 접근성 개선에 관한 사항
25. 지역특성화사업 계획수립(유형화, 명품섬 등)에 관한 사항
26. 여객선지원에 관한 사항
27. 국가보조항로(준공영제) 지원에 관한 사항
2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9.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관리에 관한 사항

30. 섬지역주민 및 인천시민 여객선운임지원에 관한 사항
31. 섬 관광객 유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2. 섬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3. 섬 관광 포털사이트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4.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
35. 서해 5도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36. 서해 5도 주민 정주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
37. 서해 5도 지원사업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8. 서해 5도 지원 보조금 확보 및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④ 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천국제공항 활성화 및 주변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3. 항공기 정비 및 부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항공교통 대중화 및 항공노선 다양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항공 관련 물류산업 및 운송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항공산업(드론산업 등)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시·군 계획시설(공항)에 대한 기본방향·계획(설치, 관리 등), 세부시설계획 결정,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민원(주민제안 등)에 관한 사항
8. 항공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항공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창조경제혁신센터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

10. 인천국제공항공사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11. 항공 관련 교육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2. 항공 재난 대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3. 항공우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4. 백령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
- ⑤ 물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물류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물류의 표준화, 자동화, 정보화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3. 물류단지 조성·개발·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에 관한 사항
 5.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6. 국제물류 박람회, 물류포럼 및 관련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동아시아 경제교류기구 물류분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주선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
 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협회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화물자동차 관련 제도 개선 및 관련 법 정비에 관한 사항
 1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및 부정수급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화물자동차 법규위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13. 복합운송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생활물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항만·항공 물류 전반에 관한 사항

16. 항만 관련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물류 정책에 관한 사항
- ⑥ 항만연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만 관련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항만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적 항만조성에 관한 사항
 4. 항만의 배후단지·배후부지·유희부지 개발 등에 관한 사항
 5. 항만 재개발에 관한 사항
 6. 도시·군계획시설(항만, 운하)에 대한 기본방향·계획(설치, 관리 등),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민원(주민제안 등)에 관한 사항
 7. 공유수면(지정항만 외의 해면) 매립 인가 등에 관한 사항
 8. 신항만건설의 기본계획 및 예정지역지정 등에 관한 사항
 9. 해양친수공간 및 연안관련 총괄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지역연안관리심의회,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위촉 운영에 관한 사항
 12. 「연안관리법」에 관한 사항
 13. 해양친수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4. 해양용도구역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15.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에 관한 사항
 16. 연안 군부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17.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시설물 정비 관리에 관한 사항
18. 연안항 친수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19. 연안철책선·초소 철거, 대체시설 등 정비 업무에 관한 사항
20. 연안지역 보안등 및 조명등 등 친수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21. 연안지역 경관시설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22. 연안관리 및 연안침식 관리에 관한 사항
23. 조수재난에 관한 사항
24.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지원 및 유관 기관 협의 업무에 관한 사항

⑦ 해양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섬·해양·갯벌지역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해양환경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에 관한 사항
4. 하구·해양 쓰레기 수거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해양쓰레기 관리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
6.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 및 해양오염사고에 관한 사항
7. 해양시설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8. 해양정화선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섬·해양·갯벌지역의 생태·경관 보전지역 등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0. 섬·해양·갯벌지역 지질공원 등 자연공원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1. 습지 등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2. 섬·해양·갯벌지역 생물다양성 등 생태계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섬·해양·갯벌지역 생태계 교란 및 외래생물 관리에 관한 사항

14. 갯벌 세계유산 등 유네스코 보호지역 지정 추진에 관한 사항
15. 특정도서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⑧ 수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산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산단체 및 어업인력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어촌종합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지방어항 지정·관리, 어촌정주어항 및 소규모항 개발에 관한 사항
 5. 어선안전조업 지도·단속, 범칙어선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 근해어업 허가·신고, 연근해어업 허가 제도 등에 관한 사항
 7.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및 어로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8. 어선관리 및 낚시어선업에 관한 사항
 9. 총허용 어획량(TAC)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10. 어업지도선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르는 어업 육성에 관한 사항
 12. 수산자원조성에 관한 사항
 13. 인공서식장 조성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4.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승인, 해면어업 면허 등 어장이용에 관한 사항
 15. 내수면어업에 관한 사항
 16.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및 어장정화에 관한 사항
 17. 수산물 유통·판매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18. 수산물 가공·처리·저장 업무 및 염전 개발·염 제조업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9. 수산물 품질인증, 수급안정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0. 수산식품 소비 활성화 및 거점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21. 수산자원연구소 및 수산기술지원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수산진흥에 관한 사항

제16조(도시계획국) ① 도시계획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도시개발과, 군부대이전개발과, 토지정보과, 건축과, 주택정책과를 둔다.

② 도시계획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과장, 군부대이전개발과장, 토지정보과장, 건축과장 및 주택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시관리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정책 수립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 국토종합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3.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생활권 추진전략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성장가능지역 정책조정 및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결정 등에 관한 사항
7.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등 도시공업지역법에서 정한 사항
8. 신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개발제한 구역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공기여 사전협상(개발이익 제도개선 포함)에 관한 사항
12. 공공기여 관련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13. 사전협상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4. 온천 개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5. 도시계획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
16.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도시계획에 관련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④ 도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군계획시설 정비 및 업무총괄에 관한 사항
2. 광역시설의 협의 및 입안·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군계획시설 관련 협의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4. 도시·군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운영 및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5. 도시·군계획시설(교통, 공간, 유통 및 공급, 공공 및 문화체육, 방재, 보건위생, 환경기초)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6.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운하, 광장 일부, 공원, 녹지, 유원지, 하천, 우수지, 하수도시설 제외)
7. 도시·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운하, 광장 일부, 공원, 녹지, 유원지, 하천, 우수지, 하수도시설은 공고만) 및 매수청구 토지에 관한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등 의제협의와 사업 시행 및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9. 군·구 도시·군계획시설 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도시·군계획시설 통계작성·관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11. 민간제안 도시·군계획시설 입안관련 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 해소대책에 관한 사항
 13. 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14. 도시·군계획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5.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구역·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무(신규 지정·수립 제외)
 16.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구역·계획 결정(변경)과 관련 군·구 및 관련부서 협의에 관한 사무
 1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구역·계획)의 정비에 관한 사항
- ⑤ 도시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단계별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및 환지계획 인가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4.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6. 검단신도시 조성 및 검단2지구 해제지역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7. 청라국제도시 진입도로 사업 정리(정산 등)에 관한 사항
 8. 과 소관 개발사업 보상 및 이주·생활대책 등에 관한 사항
 9.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공영역(LH) 사업관리 및 개발이익 확보에 관한 사항

⑥ 군부대이전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부대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군부대 이전사업에 관한 사항
3. 군부대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군부대 이전부지 주변지역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5. 군부대 이전관련 시민참여협의회, 정책협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6. 캠프마켓(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7. 캠프마켓 반환 및 토지취득에 관한 사항
8. 캠프마켓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캠프마켓(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
10. 캠프마켓 개방공간 관리에 관한 사항
11. 캠프마켓 및 주변지역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2. 캠프마켓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13.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5. 캠프마켓 홍보, 시민소통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⑦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토지취득에 관한 사항
2. 부동산등기과태료 부과·징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투기적 거래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

5.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6. 토지 및 지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7.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8. 토지개발사업 등 지적확정에 관한 사항
9. 측량업 및 지적측량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0. 측량기준점 관리에 관한 사항
11. 토지이동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2. 자치구 지적관리 업무 지원, 지도에 관한 사항
13. 지적일반 민원에 관한 사항
14. K·Geo 플랫폼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지적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16. 비법인 등의 등록번호에 관한 사항
17. 항공영상 및 위성영상에 관한 사항
18.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9.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20.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사항
21. 국가공간정보체계(NSDI)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에 관한 사항
2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부동산정보 인터넷 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주소정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6.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7. 국가공간정보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8.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구축 및 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29. 공간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30. 공간정보자료(수치지형도 등)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1. 공간정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2. 드론활용 영상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3.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34. 지방지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⑧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정책 및 제도 운영, 건축문화 발전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행정 및 건축물 관리 총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3. 건축위원회 등 건축업무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한옥 등 건축자산 정책개발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건축자산 보전·활용과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적공간(공개공지) 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건축물의 범죄예방(셉테드)에 관한 사항
8. 건축행정건실화 추진계획 수립 및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9. 건축사사무소 관리와 업무(변경) 신고 처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0. 공사감리자 명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위반건축물 및 건축 통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12. 건축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시행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 건축문화제 개최 및 건축상 수상에 관한 사항

1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정책개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녹색건축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7. 녹색건축물 활성화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8.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9.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개별 법령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 건축물은 제외)
 20.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21. 해체공사감리자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가로구역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
 23.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육성 및 발전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4. 옥외광고물 종합계획 수립,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 ⑨ 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정책의 개발·조정 및 장·단기 주택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설사업계획 인·허가 협의에 관한 사항
 4. 주택 정책 및 제도(특수시책) 운영(민간도심복합사업, 뉴:홈 사업지원 등)

5. 주택건설사업자 관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 공공주택법에 의한 공공주택 사업(협의·승인·착공)에 관한 사항
7. 학교용지부담금 징수대행에 관한 사항
8. 국민주택부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9. 공동주택사용검사 전 품질검사에 관한 사항
10.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11.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한 사항
12. 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3.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및 제도, 전문가 자문단에 관한 사항
14.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조정 및 자문지원에 관한 사항
15. 주택관리사(보) 자격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아파트관리실태 조사·감사 지원에 관한 사항
17.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주거복지 관련 정책과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8.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및 주거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19. 광역주거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공동주택 공동체의 정책참여 제고에 관한 사항
21.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 대상지 발굴 및 후보구역 선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23. 영구임대주택(시책사업)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4. 영구임대주택(시책사업) 입주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25. 민간임대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6.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27.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8. 공동주택종합포털 온-아파트 운영에 관한 사항
29.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30.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31. 전·월세 등 임대차 관련 사항

제17조(도시균형국) ① 도시균형국에 도시균형정책과, 인천대로재생과, 주거정비과,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및 건설심사과를 둔다.

② 도시균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도시균형정책과장, 녹지정책과장 및 건설심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하며, 인천대로재생과장, 주거정비과장 및 공원조성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 도시균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재생사업 기획 및 조정, 특별회계, 재정지원 등 총괄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사업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역세권) 지정 등에 관한 사항
9.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사업추진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0. 도시재정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도시재생혁신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추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④ 인천대로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천대로 일반도로 사업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관련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결정에 관한 사항

3.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관련 도로구역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에 관한
사항

4.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및 상부도로 일반화에 관한 사항

5. 인천대로 일반도로 구간 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사항

6.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대체도로 건설에 관한 사항

7. 인천대로 주변 거점개발에 관한 사항

8. 인천대로 주변 뉴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10.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공원화 계획 수립 및 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

⑤ 주거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3.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사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6. 정비사업 관련 주민소통에 관한 사항

7. 정비사업 자료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정비사업 실무협의회 운영 및 정비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정비구역 구조개선 및 정비기반시설·매몰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11.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변경)·관리에 관한 사항
12.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산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정비사업 공공관리에 관한 사항
14. 인천형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15. 원도심 골목길 재생에 관한 사항
16. 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사항
17.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8.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9. 노후건축물 수선 관련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⑥ 녹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녹지행정의 종합기획·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도시·군계획시설(일반·경관광장)에 실시계획 인가 및 협의에 관한 사항
3. 사유 행정재산(임야, 일반·경관광장) 관리에 관한 사항
4. 민간 녹지활용계약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지방산지관리위원회, 계양산보호위원회,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인천대공원사업소, 월미공원사업소, 계양공원사업소 및 군·구 도시녹

- 화, 산림 및 양묘 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가로수, 가로녹지대, 쉼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산림사업(사방, 조림, 숲가꾸기, 임도 등)에 관한 사항
 11. 산지이용·보전산지관리(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등)에 관한 사항
 12. 산림보호(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보호구역 등에
관한 사항
 13. 산림조합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4. 산림사업법인, 나무병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산림복지 및 산림휴양시설 지정·조성·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6. 산림 교육 및 산림치유에 관한 사항
 17. 숲길(등산, 트레킹, 휴양, 치유 등)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19. 인천 S자 녹지축 둘레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⑦ 공원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원조성 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공원관련 조례 개정 및 사용료 승인업무에 관한 사항
 4. 도시·군계획시설(공원·녹지: 묘지공원 제외)에 대한 기본방향·계획
(설치, 관리 등),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민
원(주민제안 등)에 관한 사항

5. 인천대공원사업소, 월미공원사업소, 계양공원사업소 및 군·구 공원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민간공원 추진 및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8.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위 특례 추진에 관한 사항(도시공원 부지 개발행위 특례 추진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무 포함)
9.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구 도심권 거점 공원녹지확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3. 주제공원(동물원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4. 사유 행정재산(공원, 녹지) 관리에 관한 사항
15. 아라천구역 중 공원구역(공원계획구역 포함)의 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⑧ 건설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분야의 총무계획 지침 작성과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및 하도급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종합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골재수급계획 수립 및 골재채취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건설기계관리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7. 건설기술 관련 자문에 관한 사항

8. 건설기술심의·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및 설계적격 심의 등에 관한 사항
10. 시공평가 및 품질관리점검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및 행정처분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건설공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운영에 관한 사항
13. 대형공사의 기본계획 및 기본, 실시설계도서 검토에 관한 사항
14. 건설공사 신기술 습득 및 전파에 관한 사항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공 및 건설기술용역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17.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증명서 관리에 관한 사항

제18조(글로벌도시국) ① 글로벌도시국에 글로벌도시기획과,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 스마트도시과, 투자유치과, 국제협력과, 도시디자인과를 둔다.

② 글로벌도시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글로벌도시기획과장, 투자유치과장, 국제협력과장 및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장,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장, 스마트도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과장,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글로벌도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뉴홍콩시티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뉴홍콩시티 조성 관련 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3. 뉴홍콩시티 조성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 발굴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뉴홍콩시티 조성 관련 국제회의 유치, 협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뉴홍콩시티 조성을 위한 관계 기관·부서 등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6. 뉴홍콩시티 관련 시민·전문가 자문 등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⑤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물포르네상스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제물포르네상스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소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내항 재개발 정책수립 및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5.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6.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7. 내항 시민 우선개방에 관한 사항
8. 상상플랫폼 조성에 관한 사항
9. 월미 해양복합문화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10.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물포르네상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 총괄에 관한 사항
3. 개항장 역사산책공간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4.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 신포 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에 관한 사항

6. 우회고가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7. 동인천역 주변(남·북광장 포함) 재생 및 정비에 관한 사항
8. 스마트관광도시 구성에 관한 사항
9. 개항장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개항장내 유관 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⑦ 스마트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도시 사업 기획·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 공간 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5. 스마트 GIS 추진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 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도시 기술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 스마트도시 서비스(행정, 방법, 방재, 환경, 시설물관리 등) 관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0. 스마트도시 포럼, 협회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스마트도시 관련법 제·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2. 사물인터넷(IOT) 전략계획 수립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스마트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⑧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 내·외국인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조정

2. 기업, 내·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3. 개별기업·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관련 시책 발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기업·투자정보·자료제공 등 투자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업·투자 타당성 및 사업성 분석에 관한 사항
 8. 기업·투자 관련 유관 기관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투자기업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분야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원도심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2. 컨택(콜)센터 산업 관련 사항
 13. 그 밖에 다른 부서 투자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14. 투자유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⑨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화 시책 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협력 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해외사무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국시도지사협의회(국제화지원 기능)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제관계대사에 관한 사항
 6. 해외 시정홍보물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8.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9. 국제 학예, 문화, 예술교류 확대에 관한 사항
10. 외국어 문서작성, 번역, 통역에 관한 사항
11. 해외정보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민간단체 국제교류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13. 국제단체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시민명예외교관 및 국제명예자문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5. 공무원 국외여행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국외인사영접 및 안내에 관한 사항
17. 경제단체 해외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8. 국제기구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19. 인천관광공사의 국제교류 관련 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0.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⑩ 도시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연, 수변, 시가지, 역사·문화, 도서, 교통·산업, 도로경관 및 야간경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각종 경관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도시경관 형성 및 발전을 위한 제도연구,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경관위원회 운영 및 지구단위계획 등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6. 각종 개발사업 경관 협의 및 평가, 그 밖에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7. 도시개성창조사업에 관한 사항
8. 도시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경관·미관 등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0.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에 관한 사항
11. 경관 관련 비영리단체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작성에 관한 사항
13. 각종 경관형성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에 관한 사항
14. 건축물 및 도시기반시설의 품질도시 관리에 관한 사항
15. 색채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6. 소규모 도시경관 정비에 관한 사항
17.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8. 지역 공공건축 지원에 관한 사항

제19조(문화체육관광국)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정책과, 예술정책과, 문화유산과, 문화기반과, 체육진흥과 및 관광마이스과를 둔다.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문화정책과장, 예술정책과장, 문화유산과장 및 문화기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체육진흥과장 및 관광마이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기획·조정 및 총괄에 관한 사항
2. 지방문화의 육성 및 발굴에 관한 사항
3. 인천문화재단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인천광역시 문화상 시상에 관한 사항
5.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종교단체 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종교단체 후원 및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8. 문화회관, 문화예술회관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아트센터인천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10. 문화지구 지정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문화바우처에 관한 사항
1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13. 청년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15. 인천아트플랫폼, 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
16. 전통사찰 등록·지원·보수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도서관 정책에 관한 사항
18.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 및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9. 도서관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0. 공공도서관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교육청 운영 시립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23.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4. 독서문화진흥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25. 지역 특화 독서문화진흥 행사 기획 및 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26. 출판, 인쇄산업에 관한 사항
27. 문화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8. 문화산업 기반 조성 및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29. 문화산업 지원시설의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0. 문화산업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1. 문화산업진흥지구 운영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3. 문화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4. 문화콘텐츠산업 조사·분석 및 정리에 관한 사항
35. 영상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6. 인천영상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7. 영화제 지원에 관한 사항
38. 영상관련 공공기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9. 영상콘텐츠 활용 관광협력에 관한 사항
40. 영상콘텐츠산업 조사·분석 및 정리에 관한 사항
41. 영상콘텐츠 관련 기관·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2. 영상콘텐츠 관련 산학협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3. 영상콘텐츠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44. 영화, 비디오, 게임, 음악산업에 관한 사항
45. e-스포츠대회 육성에 관한 사항
46. 대중문화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7. 대중문화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8.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관한 사항
49. 공공저작물에 관한 사항
50. 국어책임관제 및 국어사용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51. 스마트미디어콘텐츠 산업 육성(인천N방송 운영 지원 포함)에 관한 사항

52.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지원에 관한 사항

53. 그 밖에 국 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예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술정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예술의 육성 및 발굴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7.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8. 문화예술 축제에 관한 사항

9. 문화예술단체 후원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10. 공연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11. 공연장에 관한 사항

12.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3. 문화예술단체 후원에 관한 사항

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15. 문화예술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16.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7. 문화예술단체 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음악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⑤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재 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박물관, 전시관 등)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문화재 발굴 지정 및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4. 천연기념물 치료 및 보수 정비에 관한 사항
5. 박물관 등록 및 건립에 관한 사항
6. 유·무형 문화재 보전·전승에 관한 사항
7.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8. 문화재 수리업자 및 기능자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9.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에 관한 사항
10. 전통, 민속예술의 보존 및 계승관리에 관한 사항
11. 국악, 한복 등 전통예술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2. 향교에 관한 사항
13. 시사편찬 발간 및 시사편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전통문화자원의 산업화에 관한 사항
16. 역사홍보관 건립사업에 관한 사항
17. 문화재 시설관리(도호부청사, 은울탈춤전수관, 제물포구락부 등) 및 조성
 성에 관한 사항

18. 시립박물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⑥ 문화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시설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뮤지엄파크(시립미술관 건립, 시립박물관 이전 건립, 문화산업시설 등) 조성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 부지 인허가 등 협의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및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및 공모제 운영에 관한 사항
6. 시립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립미술관 전시시설 건립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시립미술관 특화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9. 인천예술인 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
- ⑦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직장 운동경기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전국체전 등 지원 및 평가분석 등에 관한 사항
 6. 체육관련 행사의 주관에 관한 사항
 7. 종목별 전국대회 개최 및 유치에 관한 사항
 8. 생활체육 진흥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생활체육 관련 프로그램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0. 공공체육시설 건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1. 위탁관리 체육시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등록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3. 종목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
14. 국제체육교류에 관한 사항
15.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준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AG 경기장 및 관련부지 활용 방안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17. 스포츠 외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8.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재정 관리 및 유산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⑧ 관광마이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시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인천관광공사 총괄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천광역시 관광협회·협의회 설립허가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광사업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관광기업지원센터 및 마이스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관광수용태세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관광약자 및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글로벌 관광도시 인천 인지도 제고에 관한 사항
12. 관광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13. 군·구 테마상품 개발 및 수도권 관광진흥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4. 국제관광기구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5. 웰니스 관광 활성화 및 관광두레 업무에 관한 사항
16. 관광안내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관광자원의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
18. 인천시티투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인천투어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1. 해양 및 도서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22.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유원지 지정 및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23.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24. 도시·군 계획시설(유원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25. 마이스산업 정책개발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6. 국제회의·전시회·기업포상관광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7. 마이스산업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28. 국제회의, 전시회 참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9.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0. 지역특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1.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2. 컨벤션센터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제20조(보건복지국) ① 보건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복지서비스과, 장애인복지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정책과를 둔다.

② 보건복지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 복지서비스과

장, 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건강증진과장, 위생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회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6. 의사상자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관리에 관한 사항
8. 사회복지서비스원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복지재정 효율화 및 부정수급 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0.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11. 부서 소관 사회복지법인의 인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인천복지기준선 관리에 관한 사항
13.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
14. 긴급복지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자활사업 종합지원 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16. 자활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 자활 민·관 협의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18.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기업에 관한 사항

19.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 계정)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0.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 지원에 관한 사항
 21.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의료행정 기획 및 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인프라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중보건 의사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관리·지원·평가에 관한 사항
 6. 의료급여 사업 운영 및 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의료기관 지도·점검·행정처분 및 의료법인 업무에 관한 사항
 9. 마약류 관리 및 중독자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
 10.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관리에 관한 사항
 1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12. 전시의료동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보건의료인력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4. 혈액 및 장기 기증에 관한 사항
 15. 한방의료 및 한약재 관리에 관한 사항
 16. 외국인 및 노숙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17. 공공보건의료(공공보건의료기관 포함)에 관한 사항

18. 인천의료원에 대한 예산운영, 경영지도 등 업무 총괄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9.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업무 수행 관련 법인 및 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0. 국제 의료관광산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2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23.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4. 지역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25.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26.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7. 공공의료기관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8.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29. 재난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0.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1.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⑤ 복지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전달체계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숙인·쪽방 거주자 등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맞춤형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7. 긴급·틈새돌봄에 관한 사항
8.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9.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나눔 및 기부문화 활성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2. 부서 소관 법인·단체 인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에 관한 사항
14.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15. 사회복지사협회 지원(보수교육비)에 관한 사항

⑥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도입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후견서비스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 복지 관련 정책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9.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복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단체에 관한 사항
13. 장애 예방 및 발생 업무의 총괄·조정 관련 사항
14. 장애인 복지시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5. 의료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6.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7. 장애 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18. 권역별 재활센터병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9.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21. 활동보조 지원제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자립생활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장애인 복지 전문인력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24.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의 개발·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25. 장애인 소득보장 관련 지원계획 수립·조정 관련 사항
26.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7.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서비스의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28.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촉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9. 장애수당 제도 운영 및 발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0.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1. 장애인 생산품 인증제 실시 및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2. 장애인 창업지원, 자립자금 대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3. 과 소관 사회복지법인의 인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⑦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외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인성 및 식품매개성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5. 의료 관련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6. 원인불명 및 인수공통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7.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8. 국가결핵 관리에 관한 사항
9.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10. 한센병 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12. 말라리아 예방·퇴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역학조사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14. 신종 인플루엔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관리에 관한 사항
15. 감염병 발생 및 유행실태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16. 감염병 표본감시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7. 생물테러 대응훈련 및 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사항
18.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9. 감염병 원인규명 등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20. 역학조사반원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1. 방역 및 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사항
 22.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3.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24.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5. 감염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6. 법정감염병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27. 전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8. 역학조사관 임명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9. 감염병 관리·대응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30.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1. 감염병 환자 등의 재택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감염 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⑧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 기획 및 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3. 금연사업, 절주사업, 알코올 등 중독에 대한 치료 및 재활 사업에 관한 사항
 4. 신체활동, 영양사업 및 비만예방에 관한 사항
 5. 구강보건 및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에 관한 사항
 6.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7. 한의약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8. 아토피 천식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9. 방문건강관리,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10.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11.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12. 암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3. 지역사회 건강조사(건강도시지표 관리), 국민건강 영양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14. 관련 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5. 시립치매요양병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6.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한 사항
17.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8. 인천광역시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9. 공립노인치매요양병원 및 공립치매노인요양시설 확충·지원에 관한 사항
20. 기타 치매관리법에 관한 사항
21. 건강도시조성 등에 관한 사항
22. 정신건강 기본계획 및 자살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3.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24.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6.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

⑨ 위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중 및 식품위생의 종합기획·조정예 관한 사항
2.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4. 위생용품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에 관한 사항
6. 향토전통음식 보급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7.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8. 공중 및 식품위생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국민영양관리 및 식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10. 퇴폐, 변태, 사행행위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유통식품 관리업무의 기획·조정예 관한 사항
12. 수입식품 원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3.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 행위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4. 위생지도에 관한 종합기획·조정예 관한 사항
15. 농산물 잔류농약 오염여부 관리에 관한 사항
16. 식품제조·가공업소 자가 품질검사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 무허가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8. 행정처분업소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9.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
20. 공중위생업소 위생 서비스 평가 및 관리등급 공표에 관한 사항
21. 공중위생업 모범업소 인증제 추진에 관한 사항

22. 뷰티서비스업(이·미용업) 발전방안 수립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3.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제 운영에 관한 사항
24. 위생용품 규격기준 적용관리에 관한 사항
25.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6. 공중위생업소 개설신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
27. 식품생산자 실명제 및 식품감사인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8.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9.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의무대상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30. 식품안전관리 정책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1.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2. 식품안전기본법에 관한 사항
33. 식품안전청구제 운영에 관한 사항
34. 전통시장 식품판매업소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5. 음식점 남은 음식 재사용 방지에 관한 사항
36. 위해식품 유형별 회수등급제 운영에 관한 사항
37. 유전자재조합(GMO) 식품관리에 관한 사항
38.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실시단체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9. 모범음식점 등 우수음식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0. 국민다소비 식품 유해물질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41. 식품의 위해요인 감소에 관한 사항
42. 식품첨가물 제조업의 영업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3. 식품 등 수입판매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4.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및 판매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5. 인천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6.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관리에 관한 사항

제21조(여성가족국) ① 여성가족국에 여성정책과, 인구가족과, 노인정책과, 영유아정책과,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과를 둔다.

② 여성가족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여성정책과장, 인구가족과장, 노인정책과장, 영유아정책과장, 아동정책과장, 청소년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 여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정책 및 여성복지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여성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5. 여성의 국제교류 증진에 관한 사항

6. 양성평등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여성사회 교육기관 건립추진에 관한 사항

8.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9.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10. 과 소관 사회복지법인의 인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12. 여성상담사업 및 여성상담원 지도에 관한 사항

13.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폭력예방교

육에 관한 사항

14. 여성보호시설 운영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16. 여성사회교육 및 여성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17. 여성단체 지원 및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18.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9. 성차별 개선에 관한 사항
 20. 여성복지관, 여성의 광장, 서부여성회관 등 여성사회교육시설의 운영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1.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2.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3. 성별영향평가제도 총괄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4. 성별영향평가센터 및 성인지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인구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강가정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가족보호기능 지원 및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저소득 한부모 가정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8.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9.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10. 과 소관 법인·단체 인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2. 다문화 국제교류 및 제도화 추진에 관한 사항
13. 다문화가족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정보화 서비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주민 지원 총괄·관리(프로그램 개발, 관련 단체 활동 지원 등)
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
16.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7. 외국인 근로자 지원 총괄에 관한 사항
- ⑤ 노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경로효친사상 함양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시설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묘지·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장사시설 위·수탁 운영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도시·군계획시설(묘지공원)에 대한 기본방향·계획(설치, 관리 등), 시
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민원(주민제안 등)에
관한 사항
 7. 노인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

8. 노인 일자리사업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독거노인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10. 노인 맞춤형돌봄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1.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12.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과 소관 사회복지법인의 인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⑥ 영유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육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관리에 관한 사항
 2.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5.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6. 보육 관련 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7.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8.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어린이집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0.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 관리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11. 특수보육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2.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13.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 보강에 관한 사항
 14. 어린이집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7. 보육관련 법인, 단체 설립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8. 저출산 대책에 관한 사항
19. 다자녀 지원에 관한 사항
20. 군·구 저출산 대책 지도·평가에 관한 사항
21. 아이돌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2.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3.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4. 가정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25. 출산장려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6.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27. 모유수유사업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28.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사항
29. 산후조리원 관리에 관한 사항
30. 임신부, 영유아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⑦ 아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정책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3.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관의 운영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아동복지 교사 파견·관리에 관한 사항

7.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8.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9.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
10.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12. 어린이날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13. 과 소관 사회복지법인의 인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4. 돌봄운영체계 구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5. 돌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7. 보호대상 아동의 아동복지시설 입소 및 퇴소 관리
18.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
19.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20. 결연사업에 관한 사항
21. 아동보호 전담요원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2. 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23.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4.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5. 아동돌봄정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6.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7. 아동학대 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8.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운영에 관한 사항

29.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⑧ 청소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7.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8.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청소년 성보호 및 폭력예방 업무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2.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
13. 청소년 웹진 MOO 운영에 관한 사항
14. 청소년 정책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16.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
17. 과 소관 법인·단체 인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8.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19. 청소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0. 청소년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22조(소방본부) ①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 회계장비과, 예방안전과, 119재난 대책과, 현장대응단, 소방감사담당관, 119종합상황실 및 119화학대응센터를 둔다.

② 소방본부장은 소방감으로 보하고, 소방행정과장, 회계장비과장, 예방안전과장, 119재난대책과장, 현장대응단장, 소방감사담당관, 119종합상황실장, 119화학대응센터장은 소방정으로 각각 보한다.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임용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상훈, 교육, 복무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관인관리, 보안업무, 문서관리 및 행정통계 등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소방관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6. 의무소방원 및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의전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8. 소방정책 기획 및 성과분석·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관서 조직관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사항
10.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11. 소방관서 설치 및 관할구역의 확정에 관한 사항
12. 소방예산 편성 및 총괄운영에 관한 사항
13. 시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
14. 소방 관련 충무계획 및 민방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5. 소방공무원 순직, 공사상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소방공무원 상륙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휴양시설, 연금, 보험, 보육시설 등 소방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8. 소방공무원 보건복지 집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9. 소방공무원 심리안정프로그램 및 심신건강 개선에 관한 사항
 20. 소방력 기준 및 보강에 관한 사항
 21.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 사무에 관한 사항
 22.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등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3. 지역소방 전문치료센터 지정 및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24.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소방공무원 감염병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6. 소관 사업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중대 시민 및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보건의에 관한 사항
 27.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④ 회계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공사·물품·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
 3. 세입 세출 외 현금 관리에 관한 사항
 4. 물품관리(정수관리,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5. 소방공무원 복제·개선 구매에 관한 사항
 6. 소방청사 건축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소방청사 신축·이전·증축 등 공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8. 소방청사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 소방청사 타당성 조사 분석에 관한 사항
10. 소방학교 이전사업에 관한 사항
11. 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소방청사 내진보강 및 석면업무에 관한 사항
13. 소방장비 업무 기획·관리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4. 소방장비 관리실태 확인·점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5. 소방차량·개인보호장비 및 진압장비 보강·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6. 소방장비정비센터, 호흡보호정비실 운영에 관한 사항
17. 소방장비관리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8. 소방차량 운전요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9. e사람 급여 시스템 운영, 보수공제 등 소방본부 급여업무(연말정산 포함)에 관한 사항

⑤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안전종합대책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화재예방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건축허가 동의 등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5. 소방 관련업 등록,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소방 예방 관련법령에 관한 정비 및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0.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업무에 관한 사항
 11. 방염 업무에 관한 사항
 12. 화재위험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
 13. 측정장비(점검기구) 보강·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예방소방행정 통계 작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5.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사항
 16. 소방안전 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7.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소방안전활동 영상물 기획홍보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19. 언론홍보 기획 및 보도자료 작성·제공에 관한 사항
 20. 홍보기자재 보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1.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2.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3. 화재경계지구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24.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5. 시민안전교육 기본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26. 시민안전체험관 및 안전체험차량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27. 119소년단 등 어린이, 청소년 소방안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8. 소방안전교육사 양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⑥ 119재난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 및 선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

2. 구조·구급집행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특수재난(화학, 생물, 방사능 등) 구조 대책에 관한 사항
4. 구조대 운영 및 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구조구급활동 실적 분석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6. 구급지도의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응급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구조구급 관련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생활안전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11. 생활안전활동 실적 분석과 관리에 관한 사항
12. 생활안전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14. 구급대 운영 및 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5.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6.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구조·구급관련 법률 검토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8. 시기·유형별 긴급구조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9. 인명구조사 시험 및 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20.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1. 재난현장 다수사상자 훈련에 관한 사항
22. 소방현장 대응 업무의 종합 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3. 소방용수시설 확충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4. 의용소방대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25. 산불방지 소방력 지원대책과 운영에 관한 사항
26. 풍수해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7. 소방응원협정 체결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8.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29. 특별경계활동에 관한 사항
30.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대책에 관한 사항
31. 경호, 중요행사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 ⑦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재난현장 총괄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
 2.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난대비 긴급구조 현장대응 훈련에 관한 사항
 5. 유형별 소방훈련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 전술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8.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
 9. 재난현장 지휘체계 개선·평가에 관한 사항
 10. 지휘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1. 소방업무 중 발생한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
 12.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화재조사업무 운영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4. 소방활동 검토회의에 관한 사항
 15. 측정장비(감식기구) 보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6. 주요화재 합동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17. 화재통계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18. 화재조사요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9.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0. 소방차 출동로 확보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에 관한 사항
 21. 현장 지휘·조정을 위한 통합지휘차 운영에 관한 사항
 22. 소방관서가 주관한 재난피해 시민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23. 119원의 기적 모금 운영·홍보 및 수혜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4. 소방행정 배상책임보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5. 소방현장활동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6. 소방현장 안전사고 조사팀 구성·운영·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27. 안전사고 통계 관리 및 발생보고서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⑧ 소방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의 감사, 소방공무원 직무감찰 및 비위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민원, 진정, 투서 및 언론보도사항 등에 대한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3. 징계관련 소청·소송에 관한 사항
4. 공직자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5. 감사원 등 외부기관감사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계획 및 기획에 관한 사항

7.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처리 및 과태료 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 추진실적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9. 소방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0. 소송 등 법무 업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⑨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119종합상황실 기획·조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119상황정보표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련 피해상황 자료수집 분석, 전파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비상연락체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화학물질 대응정보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정기 재난상황(소방분야) 분석에 관한 사항
 7. 재난대응활동 기록·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정보화 사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소방행정,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소방 유·무선 통신망 구축·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2. 통신장비 보강·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재난상황 총괄·지휘·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14. 119안전신고센터, 이동전화위치정보 등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5. 재난상황 등 119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6. 유관 기관 비상연락망 및 상황 전파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17.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8. 화재감시 CCTV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0.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에 관한 사항
 21. 제19호 및 제20호와 관련된 정보의 활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2.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3. 재난상황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재난현장 상황정보 수집·제공 및 공유에 관한 사항
 25. 재난 긴급신고 공동대응기관 협업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6. 119종합상황실 응급헬기 공동 활용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27. 빅데이터 및 영상정보 수집·분석을 통한 소방행정서비스 개선방안 발굴에 관한 사항
- ⑩ 119화학대응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
 2. 화학사고 안전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유해화학 물질 등 위험정보 수집 및 분석관리에 관한 사항
 4. 유해화학물질 정보 연계·공유 및 최신화에 관한 사항
 5. 화학사고 대응장비·물품 등 보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화생방 관련 오염물질 탐측·제독, 분석·연구에 관한 사항
 7. 화학사고 예방·대비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8.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의 지도·감독·단속에 관한 사항

9. 위험물 관계 법령 사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인재개발원

제23조(원장) 인재개발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24조(하부조직) ① 인재개발원에 교육지원과, 인재기획과 및 인재양성과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과 인재기획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인재양성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복무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지출 및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사항
3. 차량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청사 및 교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생활관 및 교육물품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7. 영상실 운영, 청사 시설물 대관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재개발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인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수요목에 관한 연구에 관한 사항
4. 교재의 연구·편찬에 관한 사항
5. 교육기법의 연구 및 도입에 관한 사항
6.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7. 시책교육, 특성화교육 및 그 밖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8. 교육훈련성과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 역량진단평가 및 교육 컨설팅에 관한 사항
- ⑤ 인재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적관리 및 교육생 선발에 관한 사항
2. 교육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3. 강사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진행 및 견학·실습관리에 관한 사항
5. 핵심중견간부양성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6. 외국어정예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전문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8. 신규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9. 사이버(시민·공무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제2절 보건환경연구원

제25조(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원·지방환경연구원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6조(하부조직) ① 연구원에 총무과, 질병연구부, 식약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및 동물위생시험소를 두며,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질병연구부장과 식약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원으로, 대기환경연구부장 및 물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② 질병연구부에 신종감염병과, 질병조사과, 매개체감염병과 및 식중독예방과를, 식약연구부에 식품분석과, 약품분석과, 삼산농산물검사소 및 남촌농수산물검사소를, 대기환경연구부에 환경조사과, 산업환경과, 생활환경과, 기후대기과 및 대기평가과를, 물환경연구부에 수질보전과, 토양환경과, 해양조사과, 산업폐수과 및 환경생태과를 두며, 질병연구부와 식약연구부의 각 과·소장은 지방보건연구원으로, 대기환경연구부 및 물환경연구부의 각 과장은 지방환경연구원으로 보한다. 다만, 해양조사과(科)장은 지방보건연구원 또는 지방환경연구원으로 보한다.

③ 동물위생시험소에 방역관리과, 축산위생과, 강화방역지원과, 정밀검사과 및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두며, 방역관리과장, 강화방역지원과장 및 정밀검사과장은 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축산위생과장 및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장은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연구원의 과, 부, 소장은 각각 별표 1과 같이 분장한다.

제3절 농업기술센터

제27조(소장)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기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촌지도사업 예산 편성·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농촌지도 조직과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업인교육 계획 수립 및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학습단체육성과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6. 농업인 후계인력의 육성과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7.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운영 및 농식품가공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8. 농작업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9.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및 다원적기능 발굴 보급에 관한 사항
10. 농업인교육훈련사업에 관한 사항
11. 특성화사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2. 농촌진흥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13. 도시농업 활력화 지원에 관한 사항
14. 농작업 기계화 촉진,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사항
15. 신기술보급사업에 관한 사항

제28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및 도시농업과를 두고, 농업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농촌자원과장 및 도시

농업과장은 각각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농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기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촌지도사업 예산 편성·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농촌지도 조직과 인력, 복무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업인 교육계획 수립 및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학습단체육성과 활동지원, 품목별연구회 관리에 관한 사항
6. 농업인 교육훈련, 후계인력의 육성과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7. 귀농·귀촌센터 운영 및 귀농·귀촌교육에 관한 사항
8. 센터 시설물 및 에너지관리, 차량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9. 농촌진흥사업 홍보, 홈페이지 및 전산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10.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식량작물, 소득경영, 환경농업 기술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2. 고품질 쌀, 웰빙잡곡, 친환경농업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및 종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약용작물 재배기술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축산·가축위생에 관한 기술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수출농업, 에너지절감, 신소득 작목 특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친환경농업관리실, 토양검정실, 병해충진단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9. 특화작목 개발, 유용미생물 분양에 관한 사항

10. 기술보급분야 품목별 연구회 육성에 관한 사항

11. 농업인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

④ 농촌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농업특성화사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운영 및 농식품가공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3. 농작업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농기계 수리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 농기계 관련 교육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6. 농촌자원분야 품목별 연구회 육성에 관한 사항

7. 농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 운영, 농작업 기계화 촉진에 관한 사항

8.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 농업·농촌의 융복합 산업화에 관한 사항

9.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에 관한 사항

10. 강소농 육성, 농업정보화, 브랜드화 사업에 관한 사항

⑤ 도시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소비자, 생활농업기술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관련 체험·실습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종자·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관련 시범사업 및 도시농업 농기구 대여에 관한 사항

6. 도시농업지원센터, 도시농업체험교육관, 녹색생활농업교육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시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도시농업분야 시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9. 농업·농촌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0. 초·중등학교 텃밭 활성화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절 소방서

제29조(서장)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30조(하부조직) ① 소방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방서에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119재난대응과, 현장대응단을 둔다.

② 소방행정과장, 예방안전과장, 119재난대응과장, 현장대응단장은 각각 소방령으로 보한다.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 기본운영 계획 및 중장기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3. 소방 관할구역 및 소방력 기준책정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임용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5. 직원 비위사실 등의 조사와 훈계·징계·소청에 관한 사항
6. 관인관리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7. 상훈, 교육,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8.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9. 시의회 업무 및 소방관련 의식·회의에 관한 사항

10. 민원, 진정, 투서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1.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2.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3.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 및 사회복지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14. 공직기강 등 감사·감찰에 관한 사항
15. 청렴도 향상 추진대책에 관한 사항
16. 소방 예산 편성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17. 소방관서 설치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8. 공유재산, 물품관리 및 소방장비 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19. 소방용수시설 공사 등 각종 공사에 관한 사항
20. 세입 세출 외 현금 출납에 관한 사항
21. 계약에 관한 사항
22. 기동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3. 에너지 절약 추진에 관한 사항
2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5.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6. 현장활동 사고원인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7. 현장안전점검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8. 소방공무원 순직, 공사상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9. 소방공무원 감염병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0.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1.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등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32. 소방공무원 심리안정프로그램 및 심신건강 개선에 관한 사항
 33. 휴양시설, 연금, 보험, 보육시설 등 소방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4. 119원의 기적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35.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6.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④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예방대책 수립과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2. 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 착공신고, 완공검사 등에 관한 사항
 3. 위험물제조소 등에 관한 민원업무 처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소방 관련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무검정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6. 화재경계지구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7.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소방 기동순찰 운영에 관한 사항
 9. 다중이용업소, 특수장소 등의 관계자 교육에 관한 사항
 10. 소방검사 및 소방·방화시설 정비촉진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1. 방염후 처리 및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처리에 관한 사항
 12. 특수 장소의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지원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3.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자료제출 등 처리에 관한 사항
 14. 방화관리 관련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15. 공공기관 방화관리 지도 등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16. 측정장비(점검기구) 보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7. 소방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8.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안전체험차량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시민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21. 시민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22. 119소년단 운영에 관한 사항
23. 소방안전교육사 양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4. 소방서 홈페이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5. 언론홍보 기획 및 보도자료 작성 제공에 관한 사항
26. 소방시설 등 관련 민원업무 접수에 관한 사항
- ⑤ 119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현장 대응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대책에 관한 사항
 3. 화재특별경계근무에 관한 사항
 4. 의용소방대 운영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자체소방대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6.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소방응원 협정에 관한 사항
 8. 각종 행사시 소방활동 대책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9. 인위·자연재난 발생시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10.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11. 소방관련 대테러 및 경호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2. 소방관계 법령 위반자 처리에 관한 사항
 13. 진압장비 및 보호장비 보강,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구조구급활동 지휘와 감독에 관한 사항
 15. 구조구급업무 종합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16. 구조구급활동 실적 분석과 관리에 관한 사항
 17. 구조구급 대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18. 구조구급 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9. 응급의료·구급의약품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0. 의료기관과의 응원협정 및 자료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21.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2. 감염방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3. 유해화학물질 등의 특수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24. 소방기술경연대회(소방체력경기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25. 소방전술훈련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⑥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 현장지휘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 화재원인·피해조사 및 화재증명원 발급에 관한 사항
 3. 각종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
 4. 소방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측정장비(감식기구) 보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화재방어검토회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7. 소방차 출동로 확보 및 불법 주·정차 단속운영에 관한 사항
 8.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10. 현장활동 안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2. 재난대비 긴급구조 현장대응 훈련에 관한 사항
 13. 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재난현장 지휘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5. 현장활동 표준기법에 관한 사항
 16.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
 17. 소방전술훈련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8. 소방업무 중 발생한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
 19.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소방행정 배상책임보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⑦ 소방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119안전센터·119구조대·소방정대 및 119지역대를 두며 각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⑧ 119안전센터·119구조대·소방정대 및 119지역대에는 각각 119안전센터장·119구조대장·소방정대장 및 119지역대장을 두며, 119안전센터장·119구조대장·소방정대장은 소방경으로 119지역대장은 소방위로 보한다.
- ⑨ 119안전센터장·119구조대장·소방정대장 및 119지역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1. 119안전센터장

가. 소방정보 수집 및 순찰업무에 관한 사항

나. 화재의 예방 및 진압과 구급업무에 관한 사항

다. 소방대상물 및 위험물제조소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라. 소방용수 시설의 조사에 관한 사항

마. 소방서장이 명하는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소방 업무에 관한 사항

2. 119구조대장

가. 소방정보 및 순찰업무에 관한 사항

나. 인명구조 업무에 관한 사항

다. 위험시설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의 소방 업무에 관한 사항

3. 소방정대장

가. 연안·항내의 소방정보 수집 및 순찰업무에 관한 사항

나. 화재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사항

다. 소방대상물 및 위험물제조소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의 소방 업무에 관한 사항

4. 119지역대장

가. 소방정보 수집 및 순찰업무에 관한 사항

나. 화재의 예방 및 진압과 구급업무에 관한 사항

다. 소방대상물 및 위험물제조소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라. 소방용수 시설의 조사에 관한 사항

마. 소방서장 및 119안전센터장이 명하는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의 소방 업무에 관한 사항

⑩ 119안전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절 소방학교

제31조(학교장) 인천광역시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32조(하부조직) ① 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 교육기획과 및 교수연구단을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 교육기획과장 및 교수연구단장은 각각 소방령으로 보한다.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문서·보안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계약에 관한 사항
4. 인사·복무·복지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른 과 및 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교육기획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진행 및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성과의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교육진행, 교재관리 및 강사위촉에 관한사항

5. 사이버교육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생의 보건후생 및 교내생활 지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
- ⑤ 교수연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정별 강의 및 교안개발에 관한 사항
 2. 시민체험교육에 관한 사항
 3. 소방행정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
 4. 방염시험에 관한 사항
 5. 소방안전업무의 과학화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화재원인 및 위험물 분석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7. 화재·구조·구급 및 재난관리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운영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6절 119특수대응단

제33조(특수대응단장) 119특수대응단(이하 “특수대응단”이라 한다)의 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34조(하부조직) ① 특수대응단에 운영지원과, 직할구조대 및 119항공대를 둔다.

② 운영지원과장, 직할구조대장 및 119항공대장은 각각 소방령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사무의 종합기획·조정·평가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상훈·교육훈련 및 감사(감찰)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사항
4. 예산, 회계, 계약, 물품·장비 등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5. 특수재난현장의 구조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6. 대테러 소방안전대책(훈련, 비상근무, 합동점검 등) 추진 및 유관 기관
(대테러센터, 국가정보원 등)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7. 소방무인비행장치(드론) 총괄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특수대응단 내 다른 과(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직할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재난 시 긴급구조활동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
2. 특수·대형재난 발생시 구조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수구조기술 개발·보급 및 매뉴얼 작성에 관한 사항
4. 구조·기동 장비 등 각종 장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5. 첨단장비를 활용한 인명탐색 구조활동 및 지원, 대테러 대응에 관한 사항

⑤ 119항공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헬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 활동 및 훈련에 관한 사항
2. 항공안전, 항공정보 및 시험비행 등에 관한 사항
3. 항공기·부대장비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중방역과 방제지원에 관한 사항
5. 항공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제7절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제35조(체험관장)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36조(하부조직) ① 체험관에 체험지원과, 체험기획과 및 체험운영과를 둔다.

② 체험지원과장, 체험기획과장 및 체험운영과장은 각각 소방령으로 보한다.

③ 체험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복무·상훈·교육훈련 및 감사(감찰)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사항
3. 예산, 회계, 계약, 물품·장비 등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4. 운영보조인력(용역, 사회복지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5. 루원안전공원(서구 봉오재1로 120 일원)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체험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체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사무의 종합기획·조정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2. 체험·전시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대외기관 업무협의 및 교류에 관한 사항
4. 체험관 운영 통계 및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5. 체험객 예약 관리 등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⑤ 체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체험 등 체험존 운영에 관한 사항
2. 체험객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
3. 교관요원 역량강화 및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4. 전시·체험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장 사업소

제1절 상수도사업본부

제37조(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38조(하부조직) 본부에 경영관리부, 수질안전부, 급수부 및 시설부를 두고, 경영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수질안전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급수부장과 시설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제39조(경영관리부) 경영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공무직·청원경찰 포함)의 임용에 관한 사항
2. 인사제도의 계획 및 운영·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3. 공무원·공무직 노조 및 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4. 공무원보수·복무·상훈 및 연금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보안 및 비밀취급 인가에 관한 사항
6. 기록물 및 공인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지시사항(대통령, 장관, 시장, 본부장) 처리에 관한 사항
8. 상수도행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
9.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1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증장기 재정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2. 주요업무계획 및 확인평가에 관한 사항
13. 지방의회 및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
14. 기채관리 및 국고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15. 목표관리제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6.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17. 상수도 세입부과·징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8. 검침(원격검침·검침위탁 등)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19. 법규위반 관련 점검 및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총괄에 관한 사항
21. 상수도요금 재심청구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23. 하수도사용료 및 물이용 부담금 수탁업무에 관한 사항
24. 상수도 요율 조정에 관한 사항
2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약·지출업무에 관한 사항
2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27. 상수도 자산취득·처분 및 교환에 관한 사항
28. 공기구 비품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2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대부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30. 상수도사업 청사(신축·증축·개축 등)에 관한 사항
31. 차세대 수용가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2.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부서별 소관업무 직무교육 자체추진)
33. 상수도사업본부 감사·감찰 종합계획 수립 및 산하 사업소 감사에 관한 사항
34. 상수도 관련 민원조사 및 인터넷 부조리 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35. 상수도사업본부 내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36. 기관 소송에 관한 사항
37. 기관 법령 및 법무에 관한 사항
38. 타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0조(수질안전부) 수질안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정수 및 수질관련 제도 개선 발굴·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상수도 분야 사회적 가치산업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상수도 홍보에 관한 사항(음수대 설치사업 포함)
5. 수질안심 서포터즈 및 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
6. 수돗물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사항
7. 수돗물 시민네트워크 관련 사항
8. 수돗물 시민인식 개선 및 시민만족도 제고에 관한 사항
9. 상수도 분야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10. 수질오염사고대비 계획수립 및 상수도 수질관리·사고대응 총괄에 관

한 사항

11. 수질관리종합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12. 수질개선 연구 및 수질검사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3. 송수계통·배수계통·급수계통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14.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및 인천형 워터케어 추진 총괄에 관한 사항
15.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6.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및 댐통합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
17. 상수도 분야 재난·재해(폭설, 폭염, 지진, 가뭄, 풍수해 등) 및 안전관리 총괄
18. 상수도 분야 재난안전 리스크 발굴·분석·대응·실행관리 총괄
19. 상수도 분야 안전 관련 법령·제도에 관한 분석, 준수 확인 및 개선업무 총괄
20. 상수도 관련 각종 안전사고 사례 수집 분석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21. 수질민원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수질민원 처리규정 제정·운영)
22. 상수도 종합정보화 계획 수립·추진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23. 상수도사업본부 내 통신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24. 상수도 분야 미추홀콜센터에 관한 사항
25. 수질정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6. 미추홀참물 생산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7. 원·정수 공급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8. 상수원 보호구역 업무에 관한 사항

29. 민간경상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0. 환경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1. 취약 시설물 및 상수도 공사현장 안전점검 업무총괄
32. 취수시설·정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33. 정수장 기술진단에 관한 사항
34. 정수공정 개선에 관한 사항
35. 상수도 통계(취·생산량, 수질)에 관한 사항
36. 수질정책개발 및 유관 기관 등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37. 소관 사업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중대 시민 및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38. 취수장·정수장 동력비에 관한 사항

제41조(급수부) 급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및 정밀조사에 관한 사항
2. 우수율 종합계획 수립·이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송·배·급수의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우수율 제고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5. 누수방지 및 블록구축사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급수협의를 관한 사
항
7. 급수설비, 수도사업소(수도시설관리소 포함)의 관로 신설·개량공사, 유
수율 제고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상수도 통계(상수도 관로, 우수율)에 관한 사항

9.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상수도 협회에 관한 사항
11. 수도계량기 및 유량계에 관한 기술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가압장 설치 승인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3.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4.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GIS) 종합계획수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5. 미추홀 참물 통합운영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6. 스마트워터 종합계획 수립 업무에 관한 사항
17.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18. 수운영 관련 시스템 종합계획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수운영(제어, 감시), 수운영 활용, 현장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0. 수운영 시스템 구축 표준화 및 DB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21. 상수도관망관리에 관한 사항
22.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23. 시외급수 및 주한미군 급수에 관한 사항
24. 상수도 관로유지관리(밸브류 포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5. 배수지 시설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6. 미추홀 참물 통합운영센터 연계 관련 사업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7. 그 밖에 상수도 급수 관련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제42조(시설부) 시설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지역 상수도 공급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수시설 신설·증설·개량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취수시설·정수시설 신설·증설·개량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고도정수처리시설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송수시설 신설·증설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배수지 신설·증설·개량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송수관·배수관 기능분리에 관한 사항
8.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관한 사항

제43조(산하기관) ① 수도사업소장 및 정수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수도시설관리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맑은물연구소장은 지방보건연구원 또는 지방환경연구원으로 각각 보한다.

② 수도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
3. 상수도 가압펌프장 및 소블록 유량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상수도관(지름 350밀리미터 미만) 누수탐사 및 수리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수도법」에 따른 규모 이상 건축물 저수조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6. 상수도관(지름 350밀리미터 미만) 증설·이설·개량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소블록시스템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수도계량기(지름 50밀리미터 이하) 교체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미추홀참물 품질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

10.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중부·남동부·강화수도사업소)
 11. 강화지역 배수지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강화수도사업소)
 12.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3.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14. 「건축법」에 따른 급수협약에 관한 사항
 15. 자재관리 및 수급·출납에 관한 사항
 16. 수질관리 및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17. 옥내급수시설 상태검사 및 수질관리(인천형 워터케어)에 관한 사항
 18. 수질민원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19. 소블록시스템 구축 및 해제블록 복원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상수도에 관한 사항
- ③ 수도시설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계량기 시험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수도계량기(지름 50밀리미터 초과) 교체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도계량기·유량계 수급·출납에 관한 사항
 4. 상수도관(지름 350밀리미터 이상) 누수탐사 및 수리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배수지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송수구역·배수구역의 수계 조정에 관한 사항
 7. 중블록·대블록시스템 구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8. 유량계(중블록·대블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송수관, 배수지, 중블록·대블록 유량계 원격감시제어설비(TM/TC)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재관리 및 수급·출납에 관한 사항
 11. 상수도관(지름 350밀리미터 이상) 이설·개량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상수도관(지름 350밀리미터 이상) 지하매설물 협의에 관한 사항
 13. 송수가압장(배수지 용량 $V=5,000\text{m}^3$ 이상) 유지관리 업무
 14. 공동구 내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15. 그 밖에 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 ④ 정수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수처리 공정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취수시설물·정수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정수생산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4. 원수·정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5. 정수약품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수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⑤ 맑은물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개선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수공정개선을 위한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3. 먹는물 수질 기준에 따른 원수 및 정수의 정기적인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4. 원·정수 수질의 정밀분석 및 대책

5. 정수약품 품질시험 및 대책에 관한 사항
6. 수질관리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7. 관망해석·관로구성 등 배수시설·급수시설 유지관리 연구에 관한 사항
8. 정수 침전물(슬러지) 처리에 관한 연구에 관한 사항
9. 신기술 현장 적용 및 자재 성능에 관한 연구에 관한 사항
10. 고도정수처리 기술개발 및 공정에 관한 연구에 관한 사항
11.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12. 배급수 계통의 수질관리 등 관리대책 연구에 관한 사항
13. 배급수설비의 합리적 운용 및 부식에 관한 연구에 관한 사항
14. 신종 미량 유해물질 조사에 관한 사항
15. 상수도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6. 조류 및 그 대사물질의 수질기준 및 관리연구에 관한 사항
17. 미생물 시험방법 기준 및 오염 관리 연구에 관한 사항
18. 원수·정수 유충조사 및 개선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음용수의 수질연구와 관련된 업무

제2절 도시철도건설본부

제44조(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45조(하부조직) ① 본부에 총무부, 안전관리부, 공사시설부, 기전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하고, 안전관리부장, 공사시설부장, 기전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제46조(총무부)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철도건설업무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일반서무·조직·인사·보안·복무에 관한 사항
3. 직원교육훈련 및 공무국외여행 관리에 관한 사항
4. 직장 민방위 및 예비군에 관한 사항
5.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국고 및 시비보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7.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8.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의 배정에 관한 사항
10.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및 입찰에 관한 사항
11. 도시철도건설본부 사업비 및 각종 경비 지출에 관한 사항
12. 도시철도건설본부 결산에 관한 사항
13.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14. 재정합의 사항에 대한 회계심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본부 물품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16.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18.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9.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에 관한 사항
20. 자산출자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본부 내의 다른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47조(안전관리부) 안전관리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공사안전계획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2. 공사현장 안전관리와 지도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조사·분석과 안전점검반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와 자연재해대책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와 특수시책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사 공정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7. 공사 진도 종합검토와 관리에 관한 사항
8. 부실·부진공사 분석과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9. 공사 진도 기록과 보존에 관한 사항
10. 공사품질계획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11. 공사 자재 생산업체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
12. 공사현장 품질관리와 지도에 관한 사항
13. 안전관리 계획서 승인에 관한 사항
14. 정기·정밀 안전점검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15.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및 확인에 관한 사항
16. 국가안전대진단에 관한 사항
17. 기준품셈의 제정과 조정에 관한 사항
18. 도시철도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시공단계 건설기술관리용역(감리) 정기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0. 품질관리계획서 승인에 관한 사항

제48조(공사시설부) 공사시설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제기준, 규정의 제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시철도건설공사의 토목구조물 기본설계 및 심사에 관한 사항
3. 지질조사 및 측량에 관한 사항
4. 도시철도건설 관련 자료수집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통·환경·재해·에너지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도시철도 토목·건축분야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7. 공동구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8. 도시철도건설 관련 민자유치(실시협약 이후 단계)에 관한 사항
9. 담당구간의 공사계획수립 및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10. 관급자재의 물동계획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11. 담당구간의 수탁공사의 계획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12. 담당구간의 감리용역 계획수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3. 궤도공사 발주 및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4. 궤도공사 관급자재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건축분야 사업진행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6. 정거장 건축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17. 차량기지 건축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18. 정거장 및 차량기지 건축공사에 관한 사항
19. 정거장, 차량기지 등 건축분야 설계, 공사감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0. 도시철도건설분야 공정계획, 공사진도 관리에 관한 사항
21. 고품격 정거장 디자인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2. 공사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3.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기본설계 단계부터)
24. 도시철도사업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사항
25. 공사수행방식 결정에 관한 사항

제49조(기전부) 기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차량수급(제작·운전)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차량 제작구매 발주 및 제작 감독에 관한 사항
3. 차량의 의장, 운전실, 기장, 전장, 차체, 대차장치 시험·검사에 관한 사항
4. 열차편성 및 열차운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차량 관련 기자재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6. 경량전철 등 신교통 시스템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7. 차량기지 검수설비 및 장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차량기지 검수설비 설계·제작에 관한 사항
9. 검수설비 배치 및 운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소방기계·기계설비·관급자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기계설비 공정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계설비 품질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제어설비 계획관리 및 관제 구축에 관한 사항
14. 기계설비 환경개선·에너지 절약·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차량기지 종합사령실 설계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16. 전력수급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7. 수전설비·변전설비·원방제어설비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18. 급전설비·연락송배전설비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19. 배전설비·전차선설비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0. 전식방지대책에 관한 조사계획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1. 전기실 설비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2. 역사 전기설비·소방전기설비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3. 접지설비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4. 에너지 사용 및 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5. 공사설계·시공감리 용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6. 전기·전력분야 자재 구매발주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27. 전기설비 시운전 계획 수립 및 운전업무에 관한 사항
28. 신호·통신설비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9. 신호·통신설비 제작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0. 차량기지 신호·통신설비 설계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31. 열차종합제어장치 설계 시공에 관한 사항
32. 차상신호장치 구매 및 설치에 관한 사항
33. 궤도장치 설계 시공에 관한 사항
34. 신호·통신설비 종합시운전계획 수립 및 운전업무에 관한 사항
35. 역무자동화설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6. RF-CARD 시스템 설계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37. 광전송로 설계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38. 신호·통신공사 설계, 시공감리 용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9. 전산업무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0. 전산망 구축 및 시설운영·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1. 도시철도건설자료의 전산기록관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42. 신호·통신설비 자재 구매발주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3. 신호·통신설비 관급자재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44. 각 공정 및 통계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
45. 종합시험은행 계획 수립 및 시험은행TF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6. 차량운행시스템 분야 공정계획 및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47. 안전관리대책(기전분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8. 안전관리·지도(기전분야)에 관한 사항
49. 기타 부대시설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3절 종합건설본부

제50조(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51조(하부조직) ① 본부에 총무부, 토목부, 건축부, 도로관리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토목부장, 건축부장, 도로관리부장은 지방 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제52조(총무부)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업무의 종합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서무·인사·감사·복무·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3. 본부 내 공무원 채용 및 단체협상에 관한 사항(공무원 근무상황 등은 사 용부서장이 관리)

4. 보안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6. 공사 및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7. 물품의 구매·수선·운반·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8. 재물조사 및 물품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9. 일반회계 및 재배정예산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세입 및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3조(토목부) 토목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도로(도로상에 설치되는 교량·육교·지하차도 포함) 및 하천·하수도시
설공사의 시행과 관련한 다음의 사항
 - 가. 공사설계의 시행 (실시설계에 한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
우 기본설계를 포함한다.)
 - 나. 공사 및 부대공사의 발주
 - 다. 감리용역의 시행
 - 라. 설계변경의 시행
 - 마. 공사기간 변경(연기·중지·해제 등)
 - 바. 준공검사
 - 사. 준공검사
2.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설계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 도로·하천·하수도시설공사의 시행과 관련한 유관 기관 협의 및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4. 도로·하천·하수도시설공사 하자보수의 감독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 검단1·2, 오류, 불로, 원당, 당하,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6. 검단1·2, 오류, 불로, 원당, 당하,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보상 포함) 및 청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일반토목공사의 설계·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8. 토목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관련된 보상에 관한 사항

제54조(건축부) 건축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기계·전기·통신·조경 포함)공사시행과 관련한 다음의 사항

가. 공사(기본·실시)설계 시행

나. 공사 및 부대공사의 발주

다. 감리용역의 시행

라. 폐기물처리용역의 시행

마. 설계변경의 시행

바. 공사기간 변경(연기·중지·해제 등)

사. 준공검사

2. 건축공사 기술심의 및 계약심의 검토에 관한 사항
3. 건축공사의 시행과 관련한 유관 기관 협의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4. 건축공사 하자보수의 감독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축공사 관련 설계·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6. 건축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관련된 보상에 관한 사항

제55조(도로관리부) 도로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비운영 및 투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설기계(장비·차량) 및 인력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3. 장비 기술 검사·정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설기계 사용승인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5. 운행제한차량 단속 부대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6. 축중기 및 단속 부대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7. 운행제한차량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
8. 도로유지보수 및 설해대책 계획 수립
9. 도로포장 설계·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10. 포장도로의 유지·보수관리 및 위탁시행에 관한 사항
11. 주요간선도로변 도로시설물(측구·경계석·보도)정비사업
12. 토목시험 및 그 밖의 시험에 수반하는 사항
13. 각종 토목공사의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4. 도로 너비 20미터 초과 일반교량·터널·고가교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

제4절 문화예술회관

제56조(관장)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절 미추홀도서관

제57조(관장)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8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에 운영지원부, 정보정책부, 문헌정보부와 분관으로 청라호수도서관, 청라국제도서관, 영종하늘도서관, 마전도서관을 두고, 운영지원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보정책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문헌정보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청라호수도서관장, 청라국제도서관장, 영종하늘도서관장, 마전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② 운영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운영·복무·보안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 업무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예산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5. 물품, 장비, 시설물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민간사업자 시설위탁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공유재산 및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8.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무원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 정보화 업무관리 및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12. 분관도서관 정보통신 및 홈페이지 등 서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정보정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시책 수립 및 서비스 체계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도서관간 업무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협력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광역도서관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5. 정책추진, 점검, 평가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6. 독서상담 지도 등 독서진흥 및 행사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자료 수집 작성에 관한 사항
9.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10. 지역서점 운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④ 문헌정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
2. 순회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송도국제기구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봉사활동 및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자료보존서고 관리에 관한 사항
8. 향토(행정)자료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9. 자료선정,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10. 자료의 기증·기탁 및 교환업무에 관한 사항

⑤ 청라호수도서관장, 청라국제도서관장, 영종하늘도서관장, 마전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열람·대출·반납 등 업무에 관한 사항
2. 독서 지도 등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시설·물품·장비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절 시립박물관

제59조(관장) ①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60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에 관리부, 전시교육부, 유물관리부와 분관으로 송암미술관, 검단선사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인천도시역사관을 두고, 관리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시교육부장, 유물관리부장, 인천도시역사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송암미술관장, 검단선사박물관장, 한국이민사박물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각각 보한다.

② 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보안 및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세입·세출 총괄 및 예산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4. 청사방호 및 재산·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5. 박물관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6. 시설 대관 및 임대에 관한 사항
7. 각종 전시시설물 설치에 따른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타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전시교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특별전시 및 기획전시에 관한 사항
3. 상설전시실 전시매체 내용 보완에 관한 사항
4.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교재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박물관 문화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박물관 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10. 박물관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④ 유물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물 구입, 기증, 기탁에 관한 사항
2. 소장유물 등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수장고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장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5. 소장유물의 훈증 및 복원에 관한 사항

6. 관내기관 및 시민 소장유물의 보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7. 문화유적 지표 및 발굴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8. 학술회의 개최 및 연구논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

⑤ 송암미술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송암미술관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한국 미술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3. 소장유물의 조사, 연구, 전시에 관한 사항

4. 미술사 관련 학술회의 개최와 학술서적의 간행에 관한 사항

⑥ 검단선사박물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단선사박물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천의 고고유적에 대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조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수습 및 발굴유물에 대한 기초조사와 국가귀속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

5. 출토유물에 대한 연구수행에 관한 사항

6. 소장유물의 전시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7. 고고유적 관련 학술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8.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

⑦ 한국이민사박물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국이민사박물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장유물의 전시, 구입, 기증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3. 소장유물에 대한 자료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4. 수장고 관리 등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⑧ 인천도시역사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천도시역사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장유물의 수집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역사 관련 자료의 조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시설·물품·장비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절 그 밖의 사업소

제61조(여성복지관) 여성복지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2조(여성의 광장) 여성의 광장의 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3조(서부여성회관) 서부여성회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4조(아동복지관) 아동복지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5조(인천대공원사업소)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6조(월미공원사업소) 월미공원사업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7조(계양공원사업소) 계양공원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8조(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9조(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0조(수산자원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제71조(수산기술지원센터) 수산기술지원센터의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72조(중앙협력본부) 중앙협력본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5장 합의제행정기관

제73조(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4조(사무국) 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국에 자치경찰운영과와 자치경찰정책과를 두며, 자치경찰운영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자치경찰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위원 보좌에 관한 사항
4.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예산, 장비, 통신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치경찰위원회 홍보에 관한 사항
6. 인천광역시경찰청장 임용 협의에 관한 사항
7.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8. 경찰서장 평가 대응에 관한 사항
9. 자치경찰사무 관련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10. 자치경찰사무 관련 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자치경찰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무에 관한 사항

③ 자치경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 점검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4.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5. 비상사태시 경찰청장 지휘·명령 사무에 관한 사항
6.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조정 요청에 관한 사항
7. 자치경찰위원회의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치경찰사무 관련 타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9.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및 인권침해 방지, 청렴도 향상 업무에 관한 사항
10.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찰, 징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국제평화협력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진흥관실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투자창업과”를 “투자유치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시정혁신담당관, 글로벌도시기획단,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대변인, 공보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도시디자인단, 시민소통담당관”을 “실·국에 속하지 않은 본청의 보좌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공보관”을 각각 “공보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관계부서란 중 “민간협력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별표 2 순번 7의 처리내용란 중 “1. 본청: 소관 실국장, 시정혁신담당관, 글로벌도시기획단,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대변인, 공보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도시디자인단, 시민소통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합의제행정기관”을 “1. 본청: 소관 실·국장, 실·국에 속하지 않는 본청의 보좌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표 순번 18의 처리부서란과 처리내용란의 “공보관”을 각각 “공보담당관”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공보관”을 “공보담당관”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진흥관실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제산업본부장”을 “글로벌도시국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약사 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강보건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외교부의 실·국란 중 “국제평화협력담당관”을 “국제협력과”로 하고, 같은 표 문화체육관광부의 실·국란 중 “문화예술과”를 “문화정책과”로 하며, 같은 표 농림축산식품부의 실·국란 중 “농축산유통과”를 “농축산과”로 하고, 같은 표 산업통상자원부의 실·국란 중 “에너지정책과”를 “에너지산업과”로 하며, 같은 표 환경부의 실·국란 중 “수질환경과”를 각각 “수질하천과”로, “생활환경과”를 “환경안전과”로 하고, 같은 표 고용노동부의 실·국란 중 “산업진흥과”를 “산업정책과”로 하며, 같은 표 해양수산부의 실·국란 중 “해양친수과”를 “항만연안과”로 “해양항만과”를 “섬해양정책과”로 한다.

별표 4 실무반의 1) 상황관리총괄반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 황 관 리 총 괄 반	가)총괄반	(4명) · 자연재난과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1명 · 안전상황실 직원 2명	(4명) · 자연재난과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 부서 직원 1명 · 안전상황실 직원 2명	(5명) · 자연재난과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 부서 직원 2명 · 안전상황실 직원 2명
	나)상황반		(4명) · 재난수습 주관 부서 직원 1명 · 안전상황실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 실·국 지원인력 2명	(6명) · 재난수습 주관 부서 직원 1명 · 안전상황실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 실·국 지원인력 3명 · 총무과 1명

별표 4 실무반의 2)협업기능반(α)란 나) 중 “자원순환정책과, 수질환경과”를 “자원순환과, 수질하천과”로 하고, 같은 란 마) 중 “(에너지정책과)”를 “(에너지산업과)”로 하며, 같은 란 바) 중 “(홍보담당관)”을 “(공보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5 실무반의 2)협업기능반(α)란 나) 중 “자원순환정책과, 수질환경과”를 “자원순환과, 수질하천과”로 하고, 같은 란 마) 중 “에너지정책과”를 “에너지산업과”로 하며, 같은 란 바) 중 “홍보담당관”을 “공보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1]

보건환경연구원의 과·부·소별 분장사무(제26조제4항 관련)

과·부·소별		분 장 사 무
총 무 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 업무의 종합기획·조정 2. 서무·인사·복무 3. 보안업무와 공인 관수 4. 민원문서 접수와 분류 5. 예산회계와 물품수급 관리 6.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7. 차량·청소시설 관리 8. 그 밖에 보건환경연구원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질 병 연구부	신 중 감염병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소관 행정종합기획 조정 2. 신종감염병 검사 3.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질환 진단 및 감시 4. 생물테러 고위험병원체 감시사업 5. 집단발생 감염병 원인 조사 6. 보건소검사요원 교육 및 지도점검 7. 생물안전 2, 3등급 연구시설 운영 8. 어린이과학교실 운영 9. 감염병 진단 및 조사연구사업 10. 그 밖에 질병연구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질 병 조사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정 감염병 검사 2. 엔테로바이러스 감시사업 3. 항생제내성균 진단 및 실태조사 4. 호흡기세균 감염병 진단 5. 에이즈, 매독 등 성매개 감염병 검사 6. 해양생태 병원성미브리오 감시 7. 잠복결핵 진단검사(IGRA) 8.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시설 운영 9. 법정감염병 관련 조사연구사업
	매개체 감염병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후변화 감염병매개체 감시 2. 말라리아 및 원충감염률 조사 3. 해외유입 감염병매개체 감시 4. 열성질환 및 매개체관련 감염병 진단 5.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시설 운영 6. 실시간모기발생정보시스템 운영 7. 모기밀도 조사사업 8. 매개체감염병 관련 조사연구사업
	식중독 예방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중독 원인병원체 확인진단 2. 급성설사질환 실험실감시사업 3. 식중독추적관리사업 4. 유통식품 미생물검사 5. 조리식품 등의 미생물검사 6. 식품미생물오염도 조사 7. 의약품 등의 미생물검사 8. 유전자변형식품 검사 9.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시설 운영 10. 지하수 등의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11. 그 밖에 식중독 관련 조사연구사업

과·부·소별		분 장 사 무
식 약 연구부	식 품 분석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식품의 규격기준 검사 3. 건강기능식품의 규격기준 검사 4.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검사 5. 식품첨가물의 규격기준 검사 6. 위생용품 검사 7. 식품 등에 관한 조사·연구 8. 그 밖에 식약연구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약 품 분석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약품·의약외품 검사 2. 한약재 안전성 검사 3. 화장품·기능성화장품 검사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검사 5. 최초수입의약품 등 검정 6. 상기 검사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삼 산 농산물검사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2. 농산물 안전성 검사 3. 급식관련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4. 식품, 한약재 등 잔류농약 검사(관원·민원) 5. 농산물 안전성 조사·연구 6. 농산물 수거 및 부적합 농산물 폐기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남 촌 농수산물검사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2.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3. 식품 등 잔류농약 검사(관원·민원) 4. 농·수산물 품질인증 검사 5.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연구 6. 농산물 수거 및 부적합 농산물 폐기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과·부·소별		분 장 사 무
대 기 환 경 연구부	환 경 조사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도시대기측정망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로변대기측정망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초)미세먼지(PM-10, PM-2.5) 측정기 등가성 평가 5. 환경오염지역에 대한 오염원조사 6. 대기오염전광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환경자동감시시스템 운영 8. 대기질 모니터링 및 자료 관리 9. 대기오염이동측정 및 도로 재비산먼지측정 차량 운영 10. 환경아카데미 운영 11. 환경오염사고에 관한 사항 12. 대기질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13. 그 밖에 대기환경연구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산 업 환경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2. 소음·진동 검사 3. 대기오염물질의 총량 관리 및 사업장 배출량 실측 4. 소형소각시설 배출량 검사 5. 유류 중 황 함유량 검사 6. 배출시설사업장 비산먼지 검사 7. 대기오염방지기술과 성능에 대한 조사·연구 8. 대기오염에 관한 조사·연구 9. 도시소음발생원인 및 변화에 따른 조사·연구 10. 환경소음측정망 운영 11. 대기측정분야 현장평가 및 정도관리
	생 활 환경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조사 2. 신축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조사 3. 실내공기질분야 정도관리 4. 법적시설 이외(소외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조사 5.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검사 6. 자연방사성물질 조사 7.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조사연구 8. 악취관리지역의 악취실태 조사 9. 악취발생 민원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0. 악취이동측정차량 및 무인악취채취기 운영 11. 악취분야 정도관리 12. 사업장 악취 검사 13. 악취에 관한 조사·연구
	기 후 대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후변화물질 종합 관리 계획 수립 2. 대기 중 유해화학물질 조사 3. 산성우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4. 대기 중 광화학오염물질 조사 5. 대기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조사 6. 유해대기측정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광화학측정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측정소 설치 운영 9. GCF 관련 각종 학술 자료제공 10. 대기 중 석면오염도 조사 11. 기후대기 관련 조사·연구

과·부·소별		분 장 사 무
	대 기 평가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질 진단·평가시스템 운영 2. 대기측정망 자료 분석 및 평가 3. 월경성 미세먼지 감시 및 분석·평가 4. 오존 예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 지원[(초)미세먼지, 오존, 황사] 6. 중금속 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7. 초미세먼지 성분측정망 설치 및 운영 8. 에어로졸 자동측정시스템 설치 및 운영 9. 초미세먼지 거동 및 발생원 평가 10. 대기질 평가 관련 조사·연구 11.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사항
	수 질 보전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지하수 검사(음용수, 생활, 공업, 농·어업 용수) 3. 민관합동 수질확인 검사 4. 먹는물과 먹는샘물 검사 5. 먹는물 분야 정도관리 검사 6. 지하수 수질측정망 검사 7. 다중이용시설 수질검사(수경시설, 목욕탕, 수영장수 등) 8. 수처리제 약품 검사 9. 약수검사 10. 민방위비상급수 검사 11. 먹는물, 지하수, 다중이용시설 등 수질에 관한 조사·연구 12.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함유실태조사 13. 그 밖에 물환경연구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물환경 연구부	토 양 환경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검사 2. 정수처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부산물검사 3. 토양오염도검사 4. 유해화학물질검사 5.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6. 토양오염실태조사 7. 토양환경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8. 토양오염유발시설 정밀조사 9. 토양, 폐기물, 어린이 활동공간 정도관리 검사 10. 토양환경복원을 위한 조사연구 11. 지정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관리방안연구 12.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
	해 양 조사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양오염도 조사 2. 하천오염도 조사 3. 해수욕장수 검사 4. 호소 및 유수지 수질조사 5. 해저퇴적물 조사 6. 하상퇴적물 조사 7. 물환경중 미세플라스틱 조사 8. 하천수질측정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해양수질측정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하천 및 호소 수질에 관한 조사연구 11. 해양 및 갯벌 수질·생태에 관한 조사연구 12. 기후변화에 의한 유역단위 환경영향 통합 평가 13. 인천지역 하천 퇴적물 평가체계 구축 14. 연근해 수질 변화 평가 및 해양 식생 관찰

과·부·소별		분 장 사 무
	산 업 폐수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사업장 폐수검사 2. 수질측정정도 표준시료 검사 3. 오수, 하수, 분뇨와 축산폐수의 방류수 검사 4.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검사 5. 매립장 침출수 검사 6. 음식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침출수 검사 7. 수질오염에 관한 조사·연구 8. 환경기초시설 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9. 환경시험검사의 품질관리 10. 가축매몰지 침출수 검사
	환 경 생태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 호소 및 해양 수생태 조사 2. 환경분야 시료에 대한 미생물 검사 3. 생물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4. 폐·하수처리 방류수 등에 대한 생태독성 검사 5. 호소 등에 대한 식물플랑크톤 조사 6. 환경 미생물 및 생태독성 정도관리 검사 7. 냉각탑수 등 레지오넬라균 실태조사 8. 수질오염 원인규명 및 영향에 대한 평가 9. 환경미생물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
동 물 위 생 시험소	방 역 관리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방역업무의 기획 및 조정 2. 가축전염병 감시 검색 3. 가축전염병 검진 및 기생충 구제 4. 가축질병예찰협의회 운영 및 특별방역대책 추진 5. 착유가축 위생검사 6. 가축질병의 병성감정 및 역학조사 7. 각종 병리검사 및 미생물검사 8. 동물보호·복지(동물질병 및 실험동물 관리) 9. 가축질병의 혈청검사 10.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진단 및 차단 방역 11.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정밀진단(HPAI, FMD, ASF 등) 12. 생물안전 2,3등급 연구시설 운영 13. 인수공통전염병에 관한 사항 14. 축산농가 지도·지원 15. 그 밖에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 사항 16. 동물위생에 관한 연구 조사사업 17. 그 밖에 동물위생시험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과·부·소별		분 장 사 무
	축 산 위 생 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산물작업장 도축검사 2.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지도 및 안전관리인증기준제도 관련 사항 3. 부정축산물 위생지도 및 검사 4. 원유검사 및 집유장 위생관리 지도 5. 유방염 방제사업 6. 축산물 중 유해잔류물질 정성검사 7. 축산물 중 미생물검사 8. 축산항생제 내성균검사 9.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시설 운영 10. 그 밖에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련 사항
	강 화 방 역 지 원 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전염병 검진·검색 2. 가축질병 방역지도 및 관리 3. 가축질병의 병성감정 및 역학조사 4. 가축질병의 혈청검사 5. 종돈(계)장 위생관리 및 방역지도 6. 착유가축 위생검사 7. 질병예찰 및 소독방제지원 8. 대민지원사업 및 양축농가 교육 9.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시설 운영 10. 그 밖에 강화군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정 밀 검 사 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산물가공품 규격기준 및 성분분석 2. 축산물 중 유해잔류물질 정밀검사(정량) 3. 원유 중 유해잔류물질 정밀검사 4. 식용란 검사 5. 한우유전자검사 6. 사료 검사·검정 업무 7. 유통 축산물 중 미생물검사 8. 축산물 정밀분석 관련 조사 연구 9.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시설 운영
	야 생 동 물 구 조 관 리 센 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야생동물 구조·응급처치·치료·수술 업무 2. 야생동물 보호·사육 및 영양공급 3. 야생동물 자연복귀 및 개체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및 야생동물 질병모니터링 검사 5. 야생동물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야생동물 표본제작 및 자료수집 관리 7.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 보호·복원·치료 및 신고 8. 야생동물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9.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시설 관리 10. 야생동물 관련 연구·조사사업 수행 11. 국내외 야생동물 관련 단체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12.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

[별표 2]

119안전센터 등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제30조제7항 관련)

서별	명칭	위치	관할구역
인천 중부 소방 서	중앙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204(항동6가)	중구: 중앙동, 해안동, 항동1가~6가, 관동, 송학동, 신포동, 도 원동, 북성동, 선린동, 유동, 경동, 율목동, 용동, 사동, 답동, 신생동, 신흥동1가~2가, 선화동, 내동, 인현동, 항동7가 1~26번지 일원, 신흥동3가1~35, 36(36-0제외),39번지 일원 옹진군: 연평면, 덕적면, 자월면
	연평119 지역대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로 821번길 35	옹진군: 연평면
	덕적119 지역대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덕적북로 113	옹진군: 덕적면
	자월119 지역대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서로 86	옹진군: 자월면
	송현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9(송현동)	동구: 송현동, 송림동 일부(8의10, 8의22, 8의23, 8의2 6~27, 8의78, 8의80, 8의257, 8의26, 2~263, 8의 292, 8의299, 8의301, 8의309, 8의344, 8의3, 67~ 370, 8의386, 8의441, 8의445, 8의490, 8의564~ 568, 10의 6, 11, 12의3, 13의1, 18의1, 19의1, 20 의1~2, 20의4, 20의8, 20의15, 20의31, 264, 266의 1, 294~297, 304, 305, 307, 310, 312, 318~ 320, 322, 324~333번지 일원)
	송림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동구 셋골로 133(송림동)	동구: 금곡동, 창영동, 송림동 일부(8의10, 8의22, 8의23, 8의2 6~27, 8의78, 8의80, 8의257, 8의262~263, 8의292, 8의 299, 8의301, 8의309, 8의344, 8의367~370, 8의386, 8의 441, 8의445, 8의490, 8의564~568, 10의6, 11, 12의3, 13의1, 18의1, 19의1, 20의1~2, 20의4, 20의8, 20의15, 20의31, 264, 266의1, 294~297, 304, 305, 307, 310, 312, 318~320, 322, 324~333번지 제외)
	만석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동구 제물량로 396(만석동)	동구: 만석동, 화평동, 화수동 중구: 전동, 송월동
	연안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118번길 108(항동7가)	중구: 신흥동3가 36의0, 37~38, 40~84번지 일원, 항동7가 27~126번지 일원
	백령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남로 30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
	대청119 지역대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로 244번길 45	옹진군: 대청면
	119구조대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397(항동7가)	중부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소방정대	인천광역시 중구 연연부두로128번길 16(항동7가)	중구, 동구, 옹진군 지역 항만 일원

서별	명칭	위치	관할구역
인천남동소방서	구월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14(구월동)	남동구: 구월동
	만수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207(만수동)	남동구: 만수동(만수2·3·4·5동)
	간석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21(간석동)	남동구: 간석동
	담방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1044(만수동)	남동구: 만수동(만수1·6동), 수산동
	서창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70	남동구: 서창동, 운연동, 장수동
	119구조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14(구월동)	남동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인천부평소방서	갈산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24(갈산동)	부평구: 갈산동, 청천동
	부평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8(부평동)	부평구: 부평1·4·6동, 부평5동 일부(10, 98, 104, 112~113, 115~116, 118~119, 124, 126~127, 132, 134, 136, 143~144, 156~158, 161, 165~167, 169, 171~172, 174~178, 188~191, 208~209, 364~369, 371, 376, 443 ~450, 452, 453~463, 466~510, 512~518, 915~916번지 제외)
	십정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111(십정동)	부평구: 십정동
	산곡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198(산곡동)	부평구: 산곡동, 부평동(부평2·3동)
	부개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로 6(부개동)	부평구: 부개동, 일신동, 구산동, 부평5동 일부(10, 98, 104, 112~113, 115~116, 118~119, 124, 126~127, 132, 134, 136, 143~144, 156~158, 161, 165~167, 169, 171~172, 174~178, 188~191, 208~209, 364~369, 371, 376 443~450, 452, 453~463, 466~510, 512~518, 915~916번지 일원)
	삼산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252(삼산동)	부평구: 삼산동
	119구조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24(갈산동)	부평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인천서부소방서	연희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2(심곡동)	서구: 연희동, 공촌동, 심곡동
	가좌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678번길 17(가좌동)	서구: 가좌동(가좌2·3·4동)
	신현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333-1(신현동)	서구: 가정동, 신현동
	석남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로 102(석남동)	서구: 석남동, 가좌동(가좌1동)

서별	명칭	위치	관할구역
인천서부소방서	검암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474(검암동)	서구: 시천동, 검암동, 경서동
	청라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 77(청라동)	서구: 청라동
	원창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32번길 47-5(원창동)	서구: 원창동
	119구조대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2(십곡동)	서부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정서진 119수난구조대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623(시천동)	경인아라뱃길(인천터미널 ↔ 별말교)
인천공단소방서	고잔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8(고잔동)	남동구: 논현고잔동 일부(137, 139~150, 165~172, 223~272, 500, 511~515, 975번지)
	옥련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5번길 7(옥련동)	연수구: 옥련동, 청학동
	도림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류대로 667(남촌동)	남동구: 도림동, 남촌동 연수구: 선학동
	동춘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241(동춘동)	연수구: 연수동, 동춘동
	논현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109(논현동)	남동구: 논현1동 일부(1, 66~68, 109~111, 179, 549, 557, 651~682, 775번지 제외), 논현2동
	소래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 86 (논현동)	남동구: 논현1동 일부(1, 66~68, 109~111, 179, 549, 557, 651~682, 775번지), 논현고잔동 일부(137, 139~150, 165~172, 223~272, 500, 511~515, 975번지 제외)
	119구조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8(고잔동)	공단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인천계양소방서	작전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774(계산동)	계양구: 계산동(계산3·4동), 용종동, 병방동, 서운동, 작전동(작전1동)
	계산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557(계산동)	계양구: 계산동(계산1·2동), 임학동
	장기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서로 14(장기동)	계양구: 방축동, 박촌동, 동양동, 굴현동, 상야동, 하야동, 평동, 노오지동, 이화동, 오류동, 갈현동, 독실동, 목상동, 다남동, 선주지동, 장기동 일원
	효성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96-1(효성동)	계양구: 효성동, 작전동(작전2동)
	119구조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774(계산동)	계양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서별	명칭	위치	관할구역
인천 미추홀 소방서	신기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주안동)	미추홀구: 주안동(주안2·3·7동), 용현동(용현1·4동), 학익 동
	주안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	미추홀구: 주안동(주안1·6동), 도화동(도화1동)
	도화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고개로 85(도화동)	미추홀구: 도화동(도화2·3동), 주안동(주안5동)
	용현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376(용현동)	미추홀구: 용현동(용현2·3·5동)
	관교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450(관교동)	미추홀구: 문학동, 관교동, 주안동(주안4·8동)
	숭의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49번길30(숭의동)	미추홀구: 숭의동(숭의1·2·3·4동)
	119구조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226-1(학익동)	미추홀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인천 강화 소방서	불은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505(삼성리)	강화군: 불은면, 양도면, 선원면
	양도119 지역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강화남로 702	강화군: 양도면
	두운119 지역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562-3	강화군: 불은면
	강화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문로 23번길 11	강화군: 강화읍, 송해면
	길상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마니산로 93	강화군: 길상면, 화도면
	화도119 지역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785-2	강화군: 화도면
	내가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강화서로 235-1	강화군: 내가면, 양사면, 삼산면, 교동면, 하점면, 서도면
	양사119 지역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전망대로 1319	강화군: 양사면
	삼산119 지역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북로 454	강화군: 삼산면
	교동119 지역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남로 28	강화군: 교동면
	하점119 지역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 1247번길 12	강화군: 하점면
	119구조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강화대로 879	강화소방서 북부권역 - 강화읍, 선원면, 송해면, 하점면, 양사면, 내가면, 교동면
	119산악 구조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785-2	강화소방서 남부권역 - 화도면, 길상면, 양도면, 불은면, 삼산면, 서도면

서별	명칭	위치	관할구역
인천영종소방서	공항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268 464(운서동)	중구: 운서동 일부(공항구역 내) 옹진군: 북도면
	북도119 지역대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로 164	옹진군: 북도면(모도리, 시도리, 신도리)
	장봉119 지역대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로 566	옹진군: 북도면(장봉리)
	운서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흰바위로27번길 16 (운서동)	중구: 운서동 일부(공항구역 제외), 운북동
	운남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116(운남동)	중구: 중산동, 운남동
	용유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서로128번길 1 (을왕동)	중구: 남북동, 을왕동, 덕교동, 무의동
	무의119 지역대	인천광역시 중구 대무의로 310-11 (무의동)	중구: 무의동
	119구조대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대교고속도로 3-1(운남동)	영종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인천송도소방서	미래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첨단대로 60번길 15(송도동)	연수구: 송도3동, 송도1동 일부(송도동 346~383, 406~409, 588~590)
	신송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92(송도동)	연수구: 송도1동 일부(송도동 346~383, 406~409, 588~590 제외), 송도2동
	국제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412(송도동)	연수구: 송도4동, 송도5동
	영흥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 283-32	옹진군: 영흥면
	119구조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첨단대로 60번길 15(송도동)	송도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서별	명칭	위치	관할구역
인천 검단 소방서	마전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521-3	서구: 마전동, 당하동
	검단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91(왕길동)	서구: 백석동, 왕길동, 금곡동
	오류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대춘로 6(오류동)	서구: 오류동
	원당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881(원당동)	서구: 불로동, 대곡동, 원당동
	대곡119 지역대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 129(대곡동)	서구: 대곡동
	119구조대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521-3	검단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목적을 규정함.(제1조)
- 나. 부장·담당관·과장·사업소 산하기관장 등의 직무를 규정함.(제2조)
- 다. 시장 및 부시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직제명칭과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8조까지)
- 라. 실·국·본부와 산하부서의 직제명칭, 직급,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22조까지)
- 마. 각 직속기관 장의 직급과 하부기구의 직급 및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 바. 각 사업소장의 직급과 하부기구의 직급 및 소관 사무를 등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72조까지)
- 사. 합의제행정기관인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급과 사무국의 직급 및 소관 사무 등을 규정함.(제73조 및 제74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2월 3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규칙 제3288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청장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의 지휘·감독

제7조제7항제13호 중 “등에 관한”을 “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바이오신산업과”를 “신성장산업유치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바이오신산업과장”을 각각 “신성장산업유치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바이오신산업과장”을 “신성장산업유치과장”으로 한다.

18. 인천글로벌캠퍼스 조성 및 운영재단 지원에 관한 사항

19. 연세대국제캠퍼스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제5항제6호 중 “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에 한한다)”을 “송도국제도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사무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바이오신산업과의 명칭을 신성장산업유치과로 변경함.(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
- 나. 인천글로벌캠퍼스와 연세대국제캠퍼스의 조성·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투자유치기획과에서 서비스산업유치과로 이관함.(제8조제5항제26호·제27호 삭제, 제8조제6항제18호·제19호 신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2월 3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규칙 제3289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제2조제1항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총 계	7,541	2,411	129	3,423	296	1,258	24
정무직 소계	3	1					2
정무	3	1					2
시장	1	1					
위원장	1						1
상임위원	1						1
일반직 소계	3,889	2,159	122	87	296	1,203	22
1급	1				1		
관리관	1				1		
2급	1				1		
이사관	1				1		
2-3급	3	2	1				
이사관·부이사관	3	2	1				
3급	21	13		1	4	3	
부이사관	21	13		1	4	3	
3-4급	2	2					
부이사관·서기관	2	2					
4급	161	100	3	4	16	37	1
서기관	71	47	3	2	7	11	1
기술서기관	27	11			6	10	
서기관·기술서기관	60	42		1	3	14	
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	1			1			
기술서기관·어촌지도관	1					1	
서기관·기술서기관·해양수산연구관	1					1	
5급	635	408	19	10	64	130	4
행정	297	205	15	6	29	38	4
사회복지	2	2					
사서	1					1	
공업	36	10			4	22	
농업	4	4					
녹지	15	6			2	7	
해양수산	4	4					
보건	5	4			1		
간호	1	1					
환경	9	8			1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시설	111	67	2	1	15	26	
방송통신	7	5			1	1	
행정·사회복지	11	9				2	
행정·사서	6	1				5	
행정·속기	1		1				
행정·공업	11	4				7	
행정·농업	5	1				4	
행정·녹지	3	1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3	3					
행정·환경	5	5					
행정·시설	30	23			7		
행정·방재안전	2	2					
행정·학예연구	4	1				3	
행정·방송통신	2	2					
행정·운전	1	1					
공업·환경	2	2					
공업·시설	12	4				8	
농업·수의	2	2					
녹지·환경	1	1					
녹지·시설	1	1					
녹지·녹지연구	1					1	
수의·수의연구	4	1		3			
해양수산·어촌지도	1					1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1					1	
보건·간호	6	6					
보건·환경	1	1					
환경·시설	1	1					
시설·방송통신	1				1		
행정·공업·환경	2	2					
행정·공업·시설	2	1	1				
행정·공업·방송통신	1	1					
행정·녹지·환경	3	1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해양수산·환경	2	2					
행정·보건·간호	1	1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행정·시설·방재안전	2	2					
공업·보건·식품위생	1	1					
공업·보건·환경	1	1					
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보건·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1	1					
보건·의무·약무·간호	1	1					
행정(임시정원)	1	1					
보건·간호(임시정원)	1	1					
의무(임시정원)	1	1					
행정·보건(임시정원)	1	1					
6급	1,400	887	62	18	110	314	9
행정	541	377	48	8	37	63	8
세무	32	30			1	1	
전산	64	49	2	2	4	6	1
사회복지	12	12					
사서	7	1				6	
공업	116	42			8	66	
농업	15	11				4	
녹지	24	11			4	9	
수의	6	3		3			
해양수산	18	18					
보건	19	18			1		
간호	6	6					
환경	30	25	1		4		
시설	251	159	3		36	53	
방송통신	25	12	1		5	7	
행정·세무	4	4					
행정·전산	5	5					
행정·사회복지	16	14	1			1	
행정·사서	4	2				2	
행정·공업	5	3			1	1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3	3					
행정·간호	1	1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행정·환경	6	5			1		
행정·시설	23	19			4		
행정·학예연구	1					1	
전산·방송통신	3	3					
공업·시설	22	2	1		1	18	
녹지·환경	3	3					
녹지·시설	2	1				1	
녹지·녹지연구	2					2	
수의·수의연구	1			1			
해양수산·환경	2	2					
해양수산·어촌지도	6	1				5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2					2	
보건·간호	4	4					
보건·환경	2	2					
보건·보건연구	1	1					
환경·시설	2	2					
시설·방재안전	2	2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보건·간호	1	1					
공업·보건·환경	2	2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의무·약무·간호	1	1					
운전	15	5	2	1	3	4	
간호조무	1			1			
위생	2	1		1			
속기	1		1				
방호	3	2	1				
토목운영	1					1	
통신운영	3	1				2	
전기운영	15	1				14	
기계운영	35	1				34	
열관리운영	1					1	
사무운영	15	5	1	1		8	
행정(임시정원)	1	1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보건(임시정원)	2	2					
간호(임시정원)	1	1					
보건·간호(임시정원)	3	3					
의료기술·약무(임시정원)	1	1					
보건·의료기술·간호(임시정원)	1	1					
7급	1,333	685	31	41	88	482	6
행정	455	294	21	12	27	97	4
세무	11	10				1	
전산	39	25		2		12	
사회복지	18	15				3	
사서	13	1	1			11	
공업	170	31		6	4	129	
농업	14	5				9	
녹지	32	13			4	15	
수의	3	1		2			
해양수산	9	9					
보건	12	9		1	2		
간호	4	4					
환경	22	15			3	4	
시설	226	114	1	1	33	77	
방재안전	2	2					
방송통신	26	14	1	1	4	6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7	5	1			1	
행정·사회복지	11	9				2	
행정·사서	4					4	
행정·공업	5	3	1		1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3	2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25	19			6		
행정·방재안전	5	5					
행정·방송통신	2	1			1		
세무·전산	1	1					
전산·방송통신	4	4					
공업·환경	5	5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공업·시설	23	4				19	
공업·방송통신	1					1	
농업·수의	2	1		1			
녹지·환경	1					1	
녹지·시설	3	2				1	
수의·수의연구	6	2		3		1	
수의·수의연구·보건연구	1			1			
해양수산·환경	2	2					
해양수산·시설	1	1					
해양수산·어촌지도	3					3	
보건·간호	6	3			1	2	
보건·환경	2	2					
환경·시설	1	1					
시설·방송통신	1					1	
시설·방재안전	1	1					
보건·약무	1	1					
간호·건축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4	4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운전	33	11	2	6		13	1
위생	1					1	
속기	2		2				
방호	4			1		3	
전기운영	18	2		1		15	
기계운영	26	1				25	
열관리운영	1			1			
화공운영	4					4	
보건운영	1			1			
사무운영	40	17		1	2	19	1
행정(임시정원)	3	3					
전산(임시정원)	1	1					
보건(임시정원)	3	3					
간호(임시정원)	1	1					
공업·보건·환경(임시정원)	1	1					
8급	288	60	5	13	12	198	
행정	76	16	1	3	8	48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세무	2	2					
전산	1	1					
사회복지	2	2					
사서	5					5	
공업	80	2		1	3	74	
농업	1	1					
녹지	2					2	
해양수산	3	3					
보건	5	4		1			
간호	1	1					
환경	5	5					
시설	48	15			1	32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1	1					
행정·사서	5					5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1	1					
공업·시설	1					1	
녹지·시설	1	1					
녹지·녹지연구	1					1	
보건·간호	2	2					
보건·환경	1	1					
운전	7			6		1	
위생	1			1			
숙기	4		4				
시설관리	26					26	
농림운영	1					1	
사무운영	3			1		2	
9급	38	1				35	2
행정	3	1					2
사서	1					1	
공업	1					1	
시설	2					2	
시설관리	31					31	
전문경력관 소계	6	1	1			4	
나군	5		1			4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사진기사		1		1				
무대장치사		2					2	
음향기사		1					1	
조명기사		1					1	
다군		1	1					
사진기사		1	1					
특정직 소계		3,405	232		3,173			
소방직		3,405	232		3,173			
소방정		21	8		13			
소방령		104	29		75			
소방경		264	34		230			
소방위		392	46		346			
소방장		469	53		416			
소방교		823	43		780			
소방사		1,332	19		1,313			
별정직 소계		17	10	7				
1급		1	1					
관리관·별정		1	1					
4급		7	1	6				
별정		1	1					
서기관·별정		5		5				
서기관·기술서기관·별정		1		1				
5급		3	3					
비서관		2	2					
국제관계대사		1	1					
6급		3	3					
비서		3	3					
7급		3	2	1				
비서		3	2	1				
연구직 소계		198	9		135		54	
연구관		33			25		8	
수의연구		2			2			
해양수산연구		1					1	
보건연구		10			10			
환경연구		11			11			
학예연구		3					3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공업연구·환경연구	1					1	
보건연구·환경연구	4			1		3	
보건·환경·수의연구	1			1			
연구사	165	9		110		46	
기록연구	2	2					
녹지연구	1					1	
수의연구	9			9			
해양수산연구	7					7	
보건연구	48			42		6	
공업연구	2					2	
환경연구	62			53		9	
학예연구	23	6				17	
공업연구·환경연구	3					3	
농업연구·수의연구	2			2			
보건연구·환경연구	4			4			
학예연구·편사연구	1	1					
해양수산연구·어촌지도	1					1	
지도직 소계	29			28		1	
지도관	5			5			
농촌지도	5			5			
지도사	24			23		1	
농촌지도	23			23			
어촌지도	1					1	
기능직 소계							
9급							

[별표 2]

시본청에 두는 공무원의 실·국·본부별 정원(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내역
시정혁신 담당관	계		17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3	행정3
		6급	7	행정7
		7급	6	행정6
대변인	계		52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3	서기관3
		5급	9	행정9
		6급	15	행정14, 사무운영1
		7급	23	행정19, 전산1, 공업1, 전기운영1, 기계운영1
전문경력관	다군	1	사진기사1	
감사관	계		50	
	일반직	3-4급	1	부이사관·서기관1
		5급	8	행정6, 시설1, 행정·시설1
		6급	35	행정21, 세무1, 전산1, 공업1, 녹지1, 환경1, 시설7, 행정·사회복지1, 보건·보건연구1
		7급	6	행정5, 행정·사회복지1
시민소통 담당관	계		21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5	행정5	
	6급	9	행정7, 시설1, 행정·시설1	
	7급	6	행정5, 사무운영1	
청년정책 담당관	계		14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3	행정3
		6급	5	행정5
		7급	5	행정4, 전산1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내역
기획조정실	계		309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3-4급	1	부이사관·서기관1
		4급	10	서기관7, 서기관·기술서기관3
		5급	49	행정44, 방송통신1, 행정·시설3, 행정·운전1
		6급	147	행정71, 세무28, 전산20, 시설8, 방송통신2, 행정·세무4, 행정·전산3, 행정·시설5, 운전5, 통신운영1
		7급	98	행정47, 세무10, 전산11, 시설2, 방송통신4, 행정·세무2, 행정·전산3, 행정·보건1, 행정·시설1, 세무·전산1, 전산·방송통신1, 운전11, 사무운영4
	8급	3	행정1, 세무2	
행정국	계		163	
	정무직	정무	1	시장1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8	서기관6,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27	행정23, 방송통신1, 행정·시설2, 공업·시설1
		6급	58	행정39, 전산2, 사서1, 공업2, 간호1, 시설5, 방송통신1, 행정·사회복지1, 위생1, 방호2, 사무운영3
		7급	47	행정33, 전산3, 공업2, 행정·전산1, 행정·공업1, 행정·시설2, 행정·방송통신1, 사무운영4
		8급	9	행정7, 전산1, 공업1
		9급	1	행정1
	별정직	1급	1	관리관·별정1
		4급	1	별정1
		5급	2	비서관2
6급		3	비서3	
7급		2	비서2	
연구직	연구사	2	기록연구2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내역
시민안전본부	계		129	
	일반직	2-3급	1	이사관·부이사관1
		4급	6	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4
		5급	23	행정11, 공업1, 농업1, 시설1, 방송통신1, 행정·시설1, 행정·방재안전2, 보건·환경1, 행정·공업·시설1, 행정·시설·방재안전2, 행정·보건(임시정원)1
		6급	46	행정13, 전산5, 공업3, 농업2, 수의1, 해양수산2, 보건2, 환경3, 시설2, 방송통신3, 행정·전산1, 행정·공업1, 행정·보건1, 행정·환경1, 행정·시설1, 전산·방송통신1, 공업·시설1, 시설·방재안전2, 행정(임시정원)1
	7급	47	행정11, 전산1, 공업2, 보건1, 시설8, 방재안전2, 방송통신4, 행정·방재안전5, 전산·방송통신2, 공업·환경1, 시설·방재안전1, 보건·약무1, 행정·시설·방재안전4, 행정(임시정원)2, 전산(임시정원)1, 공업·보건·환경(임시정원)1	
8급	2	방재안전1, 방송통신1		
	특정직		4	소방경1, 소방위1, 소방장2
환경국	계		154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7	기술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5
		5급	27	행정3, 환경8, 시설2, 행정·환경5, 행정·시설1, 공업·환경2, 환경·시설1, 행정·공업·환경2, 행정·녹지·환경1, 공업·보건·환경1, 공업·환경·시설1
		6급	61	행정13, 전산1, 공업7, 환경20, 시설7, 행정·공업1, 행정·환경4, 녹지·환경1, 보건·환경2, 환경·시설2, 공업·보건·환경2, 기계운영1
7급	47	행정11, 공업6, 환경15, 시설5, 행정·환경1, 공업·환경3, 보건·환경2, 사무운영4		
8급	11	행정2, 공업1, 환경5, 시설1, 행정·환경1, 보건·환경1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내역
교통국	계		156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7	서기관3, 기술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27	행정12, 공업1, 시설9, 방송통신2, 행정·시설1, 공업·시설1, 행정·공업·방송통신1
		6급	65	행정21, 세무1, 전산3, 공업5, 시설23, 방송통신4, 행정·시설3, 전산·방송통신2, 공업·시설1, 행정·전산·시설1, 전기운영1
		7급	52	행정16, 전산1, 공업4, 시설17, 방송통신5, 행정·공업1, 행정·시설1, 공업·시설2, 전기운영1, 사무운영4
8급	4	행정3, 시설1		
경제산업본부	계		114	
	일반직	2-3급	1	이사관·부이사관1
		4급	5	서기관4,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24	행정17, 농업3, 행정·농업1, 농업·수의2, 수의·수의연구1
		6급	47	행정32, 전산1, 농업9, 수의2, 시설1, 행정·농업1, 행정·공업·시설1
		7급	34	행정21, 농업5, 수의1, 간호1, 시설2, 행정·시설1, 농업·수의1, 수의·수의연구2
8급	3	행정2, 농업1		
미래산업국	계		111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6	서기관·기술서기관6
		5급	23	행정9, 공업8, 시설1, 행정·공업4, 공업·시설1
		6급	45	행정10, 전산9, 공업21, 시설3, 행정·전산1, 행정·시설1
7급	36	행정13, 전산3, 공업13, 시설3, 행정·공업1, 행정·시설1, 공업·환경1, 공업·시설1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내역
해양항공국	계		114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6	서기관2, 기술서기관1, 서기관·기술서기관3
		5급	20	행정7, 해양수산4, 시설3, 행정·시설3, 녹지·환경1, 행정·해양수산·환경2
		6급	49	행정18, 전산1, 공업1, 해양수산16, 환경1, 시설8, 녹지·환경1, 해양수산·환경2, 해양수산·어촌지도1
		7급	35	행정13, 해양수산9, 시설7, 행정·시설3, 해양수산·환경2, 해양수산·시설1
	8급	3	해양수산3	
도시계획국	계		151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7	기술서기관1, 서기관·기술서기관6
		5급	33	시설26, 행정·시설7
		6급	55	행정4, 전산1, 시설45, 행정·시설3, 녹지·환경1, 녹지·시설1
		7급	46	행정7, 전산1, 사회복지1, 시설31, 행정·시설5, 환경·시설1
	8급	9	시설9	
도시균형국	계		118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6	기술서기관3, 서기관·기술서기관3
		5급	25	행정1, 녹지6, 시설13, 행정·녹지1, 행정·시설2, 공업·시설1, 녹지·시설1
		6급	43	행정5, 전산1, 공업1, 녹지9, 시설24, 행정·공업1, 행정·시설1, 사무운영1
		7급	41	행정6, 공업1, 녹지13, 시설20, 공업·시설1
	8급	2	시설1, 녹지·시설1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내역
글로벌	계		114	
도시국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7	서기관4, 서기관·기술서기관3
		5급	22	행정10, 시설9, 행정·시설1, 행정·방송통신2
		6급	40	행정19, 전산3, 공업1, 시설14, 방송통신2, 행정·시설1
		7급	40	행정19, 전산2, 공업1, 시설13, 방송통신1, 행정·시설2, 녹지·시설2
	8급	3	시설3	
	별정직	5급	1	국제관계대사1
문화체육	계		133	
관광국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6	서기관4,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25	행정19, 시설2, 행정·사서1, 행정·보건1, 행정·시설1, 행정·학예연구1
		6급	51	행정35, 녹지1, 보건1, 시설9, 행정·사서2, 행정·시설3
	7급	43	행정34, 전산1, 사서1, 공업1, 시설4, 행정·시설2	
	연구직	연구사	7	학예연구6, 학예연구·편사연구1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내역
보건복지국	계		143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7	서기관3, 기술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31	행정5, 보건4, 간호1, 행정·사회복지6, 행정·보건2, 보건·간호5, 행정·보건·간호1, 공업·보건·식품위생1, 행정·보건·약무·간호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1, 보건·의무·약무·간호1, 행정(임시정원)1, 보건·간호(임시정원)1, 의무(임시정원)1
		6급	59	행정10, 사회복지6, 보건15, 간호5, 시설1, 행정·사회복지7, 행정·보건1, 보건·간호3, 보건·의료기술·간호1, 보건·약무·간호1, 보건·의무·약무·간호1, 보건(임시정원)2, 간호(임시정원)1, 보건·간호(임시정원)3, 의료기술·약무(임시정원)1, 보건·의료기술·간호(임시정원)1
7급	37	행정9, 사회복지6, 보건6, 간호3, 행정·사회복지2, 행정·보건1, 보건·간호3, 간호·건축1, 보건·의료기술·간호1, 행정(임시정원)1, 보건(임시정원)3, 간호(임시정원)1		
	8급	8	사회복지1, 보건4, 간호1, 보건·간호2	
여성가족국	계		118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6	서기관6
		5급	24	행정18,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3, 보건·간호1
		6급	49	행정33, 사회복지6, 시설1, 행정·사회복지5, 행정·보건1, 행정·간호1, 보건·간호1, 행정·보건·간호1
		7급	35	행정15, 사회복지8, 보건2, 시설2, 행정·전산1, 행정·사회복지6, 행정·시설1
	8급	3	행정1, 사회복지1, 행정·보건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소방본부	계		230	
	일반직	6급	1	전산1
		7급	1	전산·방송통신1
특정직		228	소방정 8, 소방령 29, 소방경 33, 소방위 45, 소방장 51, 소방교 43, 소방사 19	

[별표 3]

의회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제2조제3항 관련)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내역
의회사무처	계		129	
	일반직	2-3급	1	이사관·부이사관1
		4급	3	서기관3
		5급	19	행정15, 시설2, 행정·속기1, 행정·공업·시설1
		6급	62	행정48, 전산2, 환경1, 시설3, 방송통신1, 행정·사회복지1, 공업·시설1, 운전2, 속기1, 방호1, 사무운영1
	7급	31	행정21, 사서1, 시설1, 방송통신1, 행정·전산1, 행정·공업1, 행정·보건1, 운전2, 속기2	
	8급	5	행정1, 속기4	
전문경력관	나군	1	사진기사1	
별정직	4급	6	서기관·별정5, 서기관·기술서기관·별정1	
	7급	1	비서1	

[별표 4]

직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제2조제4항 관련)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내역
인재개발원	계		35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3	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6	행정5, 시설1
		6급	8	행정5, 전산1, 간호조무1, 사무운영1
		7급	13	행정6, 전산1, 공업2, 운전1, 방호1, 전기운영1, 사무운영1
	8급	4	행정3, 위생1	
보건환경 연구원	계		175	
	일반직	4급	1	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1
		5급	4	행정1, 수의·수의연구3
		6급	9	행정2, 전산1, 수의3, 수의·수의연구1, 운전1, 위생1
		7급	23	행정4, 전산1, 공업3, 수의2,보건1, 방송통신1, 농업·수의1, 수의·수의연구3, 수의·수의연구·보건연구1, 운전4, 열관리운영1, 보건운영1
		8급	3	공업1, 보건1, 사무운영1
	연구직	연구관	25	수의연구2, 보건연구10, 환경연구11, 보건연구·환경연구1, 보건·환경·수의연구1
		연구사	110	수의연구9, 보건연구42, 환경연구53, 농업연구·수의연구2, 보건연구·환경연구4
농업기술센터	계		34	
	일반직	6급	1	행정1
		7급	4	행정2, 공업1, 시설1
		8급	1	운전1
	지도직	지도관	5	농촌지도5
		지도사	23	농촌지도23
중부소방서	계		303	
	일반직	7급	1	운전1
		8급	3	운전3
	특정직		299	소방정1, 소방령6, 소방경21, 소방위34, 소방장32, 소방교85, 소방사120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내역
남동소방서	계		277	
	특정직		277	소방정 1, 소방령 6, 소방경 19, 소방위 23, 소방장 36, 소방교 69, 소방사 123
부평소방서	계		321	
	특정직		321	소방정 1, 소방령 6, 소방경 20, 소방위 26, 소방장 40, 소방교 84, 소방사 144
서부소방서	계		338	
	특정직		338	소방정 1, 소방령 6, 소방경 22, 소방위 35, 소방장 45, 소방교 80, 소방사 149
공단소방서	계		304	
	특정직		304	소방정 1, 소방령 6, 소방경 20, 소방위 26, 소방장 35, 소방교 80, 소방사 136
계양소방서	계		232	
	특정직		232	소방정 1, 소방령 6, 소방경 18, 소방위 22, 소방장 27, 소방교 61, 소방사 97
미추홀소방서	계		301	
	특정직		301	소방정 1, 소방령 6, 소방경 20, 소방위 26, 소방장 35, 소방교 79, 소방사 134
강화소방서	계		283	
	특정직		283	소방정 1, 소방령 6, 소방경 17, 소방위 39, 소방장 37, 소방교 67, 소방사 116
영종소방서	계		249	
	일반직	8급	1	운전 1
	특정직		248	소방정 1, 소방령 6, 소방경 18, 소방위 28, 소방장 26, 소방교 51, 소방사 118
송도소방서	계		222	
	일반직	8급	1	운전 1
	특정직		221	소방정 1, 소방령 6, 소방경 18, 소방위 29, 소방장 37, 소방교 47, 소방사 83
검단소방서	계		224	
	특정직		224	소방정 1, 소방령 6, 소방경 16, 소방위 29, 소방장 39, 소방교 55, 소방사 78
소방학교	계		31	
	특정직		31	소방령 3, 소방경 7, 소방위 10, 소방장 4, 소방교 4, 소방사 3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119특수 대응단	계		58	
	특정직		58	소방정 1, 소방령 3, 소방경 8, 소방위 12, 소방장 13, 소방교 13, 소방사 8
인천국민 안전체험관	계		36	
	특정직		36	소방정 1, 소방령 3, 소방경 6, 소방위 7, 소방장 10, 소방교 5, 소방사 4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제2조제5항 관련)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내역
경제자유 구역청	계		296	
	일반직	1급	1	관리관1
		2급	1	이사관1
		3급	4	부이사관4
		4급	16	서기관7, 기술서기관6, 서기관·기술서기관3
		5급	64	행정29, 공업4, 녹지2, 보건1, 환경1, 시설15, 방송통신1, 행정·녹지1, 행정·시설7, 시설·방송통신1, 행정·녹지·환경1, 행정·녹지·시설1
		6급	110	행정37, 세무1, 전산4, 공업8, 녹지4, 보건1, 환경4, 시설36, 방송통신5, 행정·공업1, 행정·환경1, 행정·시설4, 공업·시설1, 운전3
		7급	88	행정27, 공업4, 녹지4, 보건2, 환경3, 시설33, 방송통신4, 행정·공업1, 행정·시설6, 행정·방송통신1, 보건·간호1, 사무운영2
		8급	12	행정8, 공업3, 시설1

[별표 6]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실·국별 정원(제2조제6항 관련)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내역
상수도	계		641	
사업본부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14	서기관1, 기술서기관3, 서기관·기술서기관10
		5급	56	행정19, 공업17, 시설8, 행정·공업5, 공업·시설7
		6급	153	행정27, 세무1, 전산5, 공업41, 시설17, 방송통신1, 행정·공업1, 공업·시설16, 운전1, 전기운영11, 기계운영25, 사무운영7
		7급	211	행정38, 세무1, 전산4, 공업61, 환경4, 시설20, 방송통신2, 공업·시설18, 보건·간호1, 운전8, 방호2, 전기운영14, 기계운영22, 화공운영4, 사무운영12
		8급	149	행정28, 공업70, 시설23, 공업·시설1, 시설관리26, 사무운영1
	9급	33	시설2, 시설관리31	
	연구직	연구관	4	공업연구·환경연구1, 보건연구·환경연구3
	연구사	20	보건연구6, 공업연구2, 환경연구9, 공업연구·환경연구3	
도시철도	계		93	
건설본부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4	서기관1, 기술서기관3
		5급	13	행정2, 공업3, 시설6, 방송통신1, 공업·시설1
		6급	37	행정5, 공업13, 시설15, 방송통신3, 운전1
		7급	32	행정6, 공업7, 시설15, 방송통신3, 공업·방송통신1
		8급	6	행정1, 공업1, 시설4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내역
종합건설본부	계		173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4	서기관1, 기술서기관3
		5급	20	행정4, 공업2, 녹지1, 시설12, 행정·공업1
		6급	52	행정8, 공업8, 녹지1, 시설21, 방송통신2, 운전2, 토목운영1, 기계운영9
		7급	84	행정16, 공업21, 녹지2, 시설32, 방송통신1, 시설·방송통신1, 운전5, 기계운영3, 사무운영3
	8급	12	행정6, 공업1, 시설5	
여성복지관	계		15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6급	3	행정3
7급		9	행정3, 전산1, 사회복지2, 공업2, 행정·사회복지1	
여성의광장	계		11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7	행정5, 전산1, 공업1
9급		1	공업1	
문화예술회관	계		38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3	행정2, 행정·공업1
		6급	10	행정4, 방송통신1, 공업·시설1, 통신운영2, 전기운영2
		7급	18	행정5, 전산1, 공업9, 시설1, 보건·간호1, 사무운영1
	8급	2	행정2	
전문경력직	나군	4	무대장치사2, 음향기사1, 조명기사1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내역
인천대공원 사업소	계		44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5	행정1, 녹지2, 녹지·녹지연구1, 행정·녹지·환경1
		6급	12	행정1, 공업2, 녹지3, 행정·녹지1, 녹지·시설1, 녹지·녹지연구2, 전기운영1, 열관리운영1
		7급	19	행정4, 공업4, 농업1, 녹지3, 시설2, 행정·녹지1, 수의·수의연구1, 위생1, 전기운영1, 사무운영1
8급	6	행정3, 공업1, 녹지1, 녹지·녹지연구1		
연구직	연구사	1	녹지연구1	
월미공원 사업소	계		22	
	일반직	4급	1	기술서기관1
		5급	3	행정1, 녹지1, 행정·녹지1
		6급	3	행정1, 녹지2
		7급	14	행정3, 공업4, 녹지4, 시설2, 녹지·환경1
8급	1	행정1		
계양공원 사업소	계		23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4	행정1, 녹지3
		6급	5	녹지3, 행정·녹지1, 공업·시설1
		7급	11	공업2, 녹지6, 시설1, 행정·녹지1, 녹지·시설1
8급	2	녹지1, 농림운영1		
미추홀 도서관	계		57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7	행정1, 사서1, 행정·사서5
		6급	13	행정2, 전산1, 사서6, 공업1, 행정·사서2, 사무운영1
		7급	22	행정2, 전산2, 사서11, 공업2, 시설1, 행정·사서4
		8급	13	사서5, 공업1, 행정·사서5, 운전1, 사무운영1
9급	1	사서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시립박물관	계		41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4	행정1, 행정·학예연구3
		6급	3	행정1, 공업1, 행정·학예연구1
		7급	11	행정4, 전산1, 공업6
		8급	2	행정2
연구직	연구관	3	학예연구3	
	연구사	17	학예연구17	
남촌농축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계		20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2	행정·농업2
		6급	3	행정1, 농업2
		7급	14	행정2, 공업4, 농업5, 시설1, 행정·전산1, 공업·시설1
삼산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계		15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2	행정·농업2	
	6급	3	행정1, 농업2	
	7급	8	행정1, 전산1, 공업2, 농업3, 시설1	
	8급	1	행정1	
수산자원 연구소	계		21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해양수산연구관1
		5급	2	행정1,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1
		6급	3	행정1, 해양수산·어촌지도1,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1
		7급	5	행정1, 공업2, 시설1, 사무운영1
		8급	1	행정1
연구직	연구관	1	해양수산연구1	
	연구사	8	해양수산연구7, 해양수산연구·어촌지도1	
중앙협력본부	계		9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2	행정2
		6급	3	행정3
		7급	3	행정3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내역
수산기술지원센터	계		14	
	일반직	4급	1	기술서기관·어촌지도관1
		5급	2	행정·해양수산1, 해양수산·어촌지도1
		6급	5	해양수산·어촌지도4,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1
		7급	5	공업1, 해양수산·어촌지도3, 사무운영1
지도직	지도사	1	어촌지도1	
서부여성회관	계		13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2	행정2
		7급	6	행정2, 전산1, 사회복지1, 공업1, 방호1
		8급	3	행정3
아동복지관	계		8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7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고자 정원을 증원 및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 및 의회사무처 정책지원인력에 대한 정원 11명을 증원함.(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 총 정원 : 7,530명 → 7,541명(11명 증)

<기관별 정원>

- 본청 정원 : 2,400명 → 2,411명(11명 증)
- 의회사무처 정원 : 118명 → 129명(11명 증)
- 직속기관 정원 : 3,426명 → 3,423명(3명 감)
- 경제자유구역청 정원 : 297명 → 296명(1명 감)
- 사업소 정원 : 1,265명 → 1,258명(7명 감)

<직급별 정원>

- 일반직 정원 : 3,878명 → 3,889명(11명 증)
 - 일반직 3급 정원 : 20명 → 21명(1명 증)
 - 일반직 4급 정원 : 160명 → 161명(1명 증)
 - 일반직 5급 정원 : 632명 → 635명(3명 증)
 - 일반직 6급 정원 : 1,395명 → 1,400명(5명 증)
 - 일반직 7급 정원 : 1,327명 → 1,333명(6명 증)
 - 일반직 8급 정원 : 291명 → 288명(3명 감)
 - 일반직 9급 정원 : 39명 → 38명(1명 감)
 - 전문경력관 정원 : 7명 → 6명(1명 감)

고 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7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 31.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송도 Rc11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송도국제회복합단지개발(주) 제갈원영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센트로드오피스 비동 2206호, 2207호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551-1

나. 대지면적: 35,758.8㎡

다. 연 면 적: 84,007.2944㎡

라.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 지하 1층~지상29층 / 6개동 / 469세대

- 84A형 174세대, 84B형 16세대, 84C형 50세대, 84E형 108세대,
101A형 54세대, 101B형 54세대, T84A형 1세대, T84A1형 1세대,
T84A2형 1세대, T84A3형 1세대, T84B형 2세대, T84B1형 2세대,
P139형 1세대, P147형 2세대, P208형 2세대

○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18개동

4. 사업시행기간 : 2023.05. ~2026.06.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 2023-228호

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해차량 단속 시스템에 적발(22년10월)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 합니다.

2023년 1월 31일

인천광역시장

1. 공 고 명 : 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경유자동차 운행제한) 및 제49조(과태료)
 - 나.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6조(과태료 부과)
 -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라. 지방세기본법 제31조(납부기한의 연장) 및 제33조(공시송달)
 - 마.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고대상 : 상시운행제한 위반(22년10월) 과태료 부과고지서 송달불가 77건, ‘공시송달 대상’ 붙임 문서 확인
4. 공고기간 : 2023. 1. 31. ~ 2023. 2. 13.(14일간)

5. 납부기한 : 2023. 2. 28.

6. 공고내용

가. 과태료부과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까지 우리시 대기보전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 부과 및 60개월 간 증가산금(1.2%)이 가산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등 불이익을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의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제출서류 : “붙임”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제출방법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우 21554)
 - 팩 스 : 032)440-8749
 - 이메일 : a4408749@korea.kr

7. 문 의 처 :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 ☎ 032)440-8390

- 붙임 1. 공고대상 1부.
2. 이의제기신청서(서식) 1부. 끝.

연번	소유자	부과대상 (위반차량)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처분내역		
						합계	과태료	가산금
1	황*연 외1(황*성)	인천34로809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17일, 13시56분54초	인천광역시 가정성당 3차로	200,000	200,000	0
2	박*수	35머7152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22일, 18시14분48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4차로	200,000	200,000	0
3	안*훈	77오778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22일, 11시51분27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동동가 69-1(남동방향 중도)(3차로)	200,000	200,000	0
4	김*국	01도269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10일, 20시41분39초	인천광역시 남동IC 전방 5차로	200,000	200,000	0
5	윤*만	경기93루6212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21일, 06시47분17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3차로	200,000	200,000	0
6	손*현	02루180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30일, 02시46분05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3차로	200,000	200,000	0
7	박*학	73오911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16일, 05시47분34초	서울특별시 경인고속도로 3차로	200,000	200,000	0
8	염*선	57마402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30일, 17시45분21초	서울특별시 경인고속도로 4차로	200,000	200,000	0
9	이*	78오8102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21일, 20시44분45초	인천광역시 용종교 4차로	200,000	200,000	0
10	이*식외이*섭(공채면제)	28버1042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22일, 19시58분45초	인천광역시 운연사거리 1차로	200,000	200,000	0
11	최*호	80다525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31일, 17시06분03초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풍곡육교 3차로	200,000	200,000	0
12	주식회사 지*씨*디	94다372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31일, 11시31분04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2차로)	200,000	200,000	0
13	이*호	28버176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30일, 17시30분51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아암대로 1차로	200,000	200,000	0
14	윤*규	89가461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03일, 13시38분16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2차로)	200,000	200,000	0
15	코*아*질*발 (주)	86구115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13일, 09시58분20초	인천광역시 북항고가입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00(5차로)	200,000	200,000	0
16	전*학	인천81마520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28일, 16시31분09초	인천광역시 전재울사거리 전재울사거리 2차로	200,000	200,000	0
17	A*I A K*U*기R A* J*B*R*	06주465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31일, 12시30분59초	인천광역시 향동저수지 앞 1차로	200,000	200,000	0
18	이*호	56모509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03일, 09시35분38초	인천광역시 일신동주민센터 앞 2차로	200,000	200,000	0

연번	소유자	부과대상 (위반차량)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처분내역		
						합계	과태료	가산금
19	박*진	10두201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02일, 09시34분29초	경기도 시흥시 육구공원(수원방면) 3차선	200,000	200,000	0
20	박*우	04수168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24일, 17시27분40초	경기도 고양시 장항IC 인근 1차로	200,000	200,000	0
21	최*호	87머794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30일, 01시56분55초	서울특별시 강변북로(서울방향) 4차로	200,000	200,000	0
22	최*일	15오202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28일, 13시22분22초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풍곡육교 3차로	200,000	200,000	0
23	박*수(공채면제)	28러326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30일, 14시34분34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3차로)	200,000	200,000	0
24	(주) 케*앤*	86라492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31일, 07시46분20초	인천광역시 남촌농산물시장 앞 2차로	200,000	200,000	0
25	박*원	15가7582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31일, 18시17분48초	인천광역시 남동IC 전방 3차로	200,000	200,000	0
26	한*희	63우171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23일, 01시00분00초	인천광역시 용종교 2차로	200,000	200,000	0
27	박*이	33수8822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28일, 14시10분31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어비리 172-7 용인방면 2차로	200,000	200,000	0
28	남*동*	인천32마852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14일, 11시35분07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 6-3(1차로)	200,000	200,000	0
29	한*열	84조357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07일, 15시44분01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 6-3(2차로)	200,000	200,000	0
30	윤*훈	91도175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31일, 04시21분53초	인천광역시 삼산체육관 앞 2차로	200,000	200,000	0
31	홍*표	80도9412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31일, 19시11분03초	경기도 안산시 팔곡지하차도(안산방향) 2차로	200,000	200,000	0
32	이*천	43가205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16일, 22시00분34초	인천광역시 벽산블루밍아파트앞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48-5(1차로)	200,000	200,000	0
33	곽*덕	24가208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20일, 14시14분05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3차로	200,000	200,000	0
34	최*경	81우655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30일, 18시06분10초	서울특별시 오목교(영등포로) 오목교 (영등포로) 2차로	200,000	200,000	0
35	이*규	02다795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30일, 14시13분29초	인천광역시 남동IC 전방 3차로	200,000	200,000	0
36	황*달	21조648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18일, 07시13분50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2차로)	200,000	200,000	0

연번	소유자	부과대상 (위반차량)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처분내역		
						합계	과태료	가산금
37	다*의*	73구4045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15일, 16시29분21초	인천광역시 운연사거리 3차로	200,000	200,000	0
38	송*안	86보303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21일, 18시48분02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 6-3(2차로)	200,000	200,000	0
39	장*진	07누869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29일, 11시54분37초	인천광역시 남동IC 전방 4차로	200,000	200,000	0
40	지*녀	51조146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31일, 18시09분11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 6-3(1차로)	200,000	200,000	0
41	한*광	82너787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20일, 13시09분57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2차로)	200,000	200,000	0
42	백*	58라6875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16일, 06시12분07초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200,000	200,000	0
43	이*민	77루943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27일, 15시19분17초	인천광역시 남동IC 전방 2차로	200,000	200,000	0
44	박*수	76두345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20일, 14시08분56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5차로	200,000	200,000	0
45	이*화	73오700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23일, 21시59분24초	인천광역시 남동IC 전방 1차로	200,000	200,000	0
46	김*만외1(김*규) *채권면제	03조361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08일, 15시36분48초	서울특별시 강변북로(일산방향) 2차로	200,000	200,000	0
47	오*정	93러026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05일, 15시34분55초	인천광역시 향동저수지 앞 3차로	200,000	200,000	0
48	이*형	89버509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27일, 13시51분01초	인천광역시 소래대교 3차로	200,000	200,000	0
49	윤*식	02우584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28일, 12시38분55초	인천광역시 북항고가입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00(2차로)	200,000	200,000	0
50	이*건	41구680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22일, 21시26분55초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200,000	200,000	0
51	이*돈	26너121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31일, 16시37분10초	인천광역시 용종교 4차로	200,000	200,000	0
52	최*영	65서600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30일, 19시09분30초	인천광역시 경인요금소 1차로	200,000	200,000	0
53	K*N A*E*E*	74마129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31일, 19시12분51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가 69-1(남향방향-송도)(1차로)	200,000	200,000	0
54	Y* S*N C*U*	08구365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29일, 08시20분38초	경기도 수원시 수인산업도로(수원방면) 3차선	200,000	200,000	0

연번	소유자	부과대상 (위반차량)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처분내역		
						합계	과태료	가산금
55	이*식	20거3752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02일, 12시31분14초	인천광역시 남동IC 전방 2차로	200,000	200,000	0
56	하*봉	06더4883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28일, 19시28분32초	경기도 안산시 안산IC(안산방향) 1차로	200,000	200,000	0
57	김*오	90노6245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13일, 12시06분17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2차로)	200,000	200,000	0
58	김*수	79저223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30일, 12시55분16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5차로	200,000	200,000	0
59	김*정	55머8283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19일, 12시13분13초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200,000	200,000	0
60	박*우	48로443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30일, 16시35분57초	인천광역시 경인요금소 2차로	200,000	200,000	0
61	(주) 동*물*산*	86주9612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21일, 12시02분08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가 69-1(송도 남향방향)(2차로)	200,000	200,000	0
62	신*근	41가269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29일, 00시21분33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송도교로 2차로	200,000	200,000	0
63	변*혁	84가371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31일, 15시06분17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75(2차로)	200,000	200,000	0
64	임*주	87라158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15일, 08시30분54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 6-3(1차로)	200,000	200,000	0
65	이*덕	93러2363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29일, 06시46분13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2차로)	200,000	200,000	0
66	백*연	34라9625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10일, 15시52분25초	인천광역시 북항고가입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00(4차로)	200,000	200,000	0
67	장*주	87머643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01일, 18시39분05초	인천광역시 남촌농산물시장 앞 3차로	200,000	200,000	0
68	김*희	90부457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07일, 06시55분28초	경기도 시흥시 삼미시장(수원방면) 3차선	200,000	200,000	0
69	김*애	04다473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31일, 11시53분06초	인천광역시 한미반도체 앞 3차로	200,000	200,000	0
70	이*원	81수356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11일, 10시41분27초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용은리 380-15 여주방면 1차로	200,000	200,000	0
71	임*성	80무204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28일, 15시41분03초	인천광역시 모다아울렛 2차로	200,000	200,000	0
72	주*완	65무553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31일, 16시29분26초	인천광역시 가정성당 4차로	200,000	200,000	0

연번	소유자	부과대상 (위반차량)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처분내역		
						합계	과태료	가산금
73	김*수	38라602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30일, 17시05분46초	경기도 시흥시 삼미시장(수원방면) 2차선	200,000	200,000	0
74	김*주	07더381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30일, 18시36분14초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용이동 96-9 2차로	200,000	200,000	0
75	장*우	86무759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18일, 20시52분35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1차로)	200,000	200,000	0
76	이*이	94모102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23일, 10시06분22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가 69-1(송도 남향방향)(3차로)	200,000	200,000	0
77	김*성	24노1645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0월24일, 00시09분50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4차로)	200,000	200,000	0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상시운행제한 위반)

신청인	① 성명 (법인명)			② 주민(법인) 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과태료 처분내역	⑤ 부과기관			⑥ 납부고지번호		
	⑦ 고지받은 일자			⑧ 과태료 금액		
	⑨ 과태료처분사유			⑩ 부과대상 (차량번호)		
⑪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첨부하여 제출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34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 1. 30.

인천광역시장

변경등록 사항 : 소재지, 대표자 변경

등록번호 (등록일)	단체명	변경사항			주관과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 2009-0-인 천광역시-53호	충호안보연합 인 천광역시지부	소재지	인천시 부평구 산곡 동 산54-1	인천시 남동구 문 화로 145번길 20-1 201호	비상대책과
		대표자	김성욱	김남엽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51호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인천광역시장

- 공 고 명: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3. 1. 31. ~ 2. 14.(15일간)
- 공고대상

연번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 내 분 용	비고
1	주식회사 연홍*발 [서 * 훈]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대로38, 401호 (중산동, 트루엘에디션)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영업정지 1개월	

- 공고 대상자는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대상자로 우편(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께서는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기간 후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문의처: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 전기전력팀(☎ 032-440-4359)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58호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상시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해차량단속 시스템에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법원결정) 후 집행위탁 결정에 따른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 합니다.

2023년 1월 31일

인천광역시장

1. 공 고 명 :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상시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경유자동차 운행제한) 및 제49조(과태료)
 - 나.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6조(과태료 부과)
 -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 마.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고대상 :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 부과고지서 송달불가 10건,
‘공시송달 대상’ 붙임 문서 확인

4. 공고기간 : 2023. 1. 31. ~ 2023. 2. 13.(14일간)

5. 납부기한 : 2023. 2. 28.

6. 공고내용

가. 공고차량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운행제한 단속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법원에의 통보) 규정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과태료 재판 확정 후 같은 법 제43조(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 과태료부과 대상자께서는 납부기한까지 우리시 대기보전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가산금(3%) 및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증가산금(1.2%)이 60개월간 가산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주 소 : 인천광역시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
- 문의전화 :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 ☎ 032)440-8390

붙임 공고대상 1부. 끝.

연번	소유자	부과대상 (위반차량)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처분내역(집행위탁)
1	박*균	26라386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05월18일, 19시03분09초	인천광역시 경인요금소 1차로	과태료 100,000원
2	박*균	26라386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07월09일, 17시55분04초	인천광역시 모다아울렛 1차로	과태료 100,000원
3	박*균	26라386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08월27일, 12시15분45초	인천광역시 가정성당 4차로	과태료 100,000원
4	박*균	26라386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09월23일, 14시56분33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1차로	과태료 100,000원
5	김*진	26조157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7일, 10시03분24초	인천광역시 학익변전소 앞(이동식) 2차로	과태료 100,000원
6	홍*복	인천34도885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20일, 05시57분34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송도→남향방향)(2차로)	과태료 100,000원
7	정*수	17버805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4월30일, 15시49분02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3차로)	과태료 100,000원
8	정*수	17버805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31일, 20시22분20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2차로)	과태료 100,000원
9	홍*복	인천34도885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30일, 17시11분18초	인천광역시 남향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7가 27-175(1차로)	과태료 100,000원
10	박*철	89다7103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31일, 15시29분22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1차로	과태료 100,000원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63호

2023년 제1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 제6항에 의하여 '2023년 제1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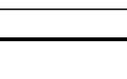
2023년 1월 31일

인천광역시장

1. 심의일시 : 2023. 1. 26.(목) 14:00
2. 심의장소 : 인천광역시청 영상회의실
3. 심의작품 : 총 29작품
4. 심의결과 : 가결 25작품(조건부 3작품, 권고 7작품 포함), 부결 4작품
5. 작품별 심의결과 : 첨부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과(☎ 032-440-39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 작품별 심의 결과>

□ 29작품 중 가결 25작품(원안가결 15 / 조건부 3 / 권고 7), 부결 4작품

연 번		설치장소	종류	작 품 명	작품 이미지	심의결과		비고
건물	작품					가결	부결	
1	1	미추홀구 용현동 627-12일원	조각	공간놀이_Dream		○		
2	2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C1블럭	조각	꽃을 든 버블맨		○		
	3		조각	Dreams-Memories of Happiness		○		
	4		조각	빛의 숲		○		
3	5	미추홀구 학익동 용현학익1블럭(1단지)	조각	Flame tree_불꽃나무 01-2022		○		조건부
4	6	미추홀구 학익동 용현학익1블럭(3단지)	조각	달콤한 꿈		○		
	7		조각	Gateway		○		
	8		조각	생동하는 생명체... 에너지IO-22-01		○		
	9		조각	힐링의 숲		○		
	10		조각	무한의 길(Infinite Road)		○		권고
	11		회화	공간-자작나무		○		권고
	12		회화	도시산책자-별		○		권고
	13		회화	비행하는 도시		○		조건부
	14		회화	언어채집-Gathering of meaning		○		권고
15	조각	크레아세이/새싹나무		○		권고		
5	16	서구 당하동 223-1번지 일원	조각	Invisible value of Sculpture		○		권고
	17		조각	Figure Plants-물. 풍당		○		권고
6	18	계양구 효성동 24-15	회화	Hue		○		

연 번		설치장소	종류	작 품 명	작품 이미지	심의결과		비고
건물	작품					가결	부결	
	19		회화	Hue		○		
7	20	서구 당하동 589번지 일원(AB3-2BL)	조각	연-바라보다		○		
	21		조각	상상의 숲-까치호랑이		○		
8	22	부평구 부평동 738-43외 1필지	조각	영원		○		조건부
	23		부조	자연의 소리 -ECHO23B01		○		
9	24	송도동 396-7	조각	화이트웨이브		○		
10	25	서구 경서동 124-74번지 일원	조각	나빌레라-Navillera			○	
	26		조각	유기적 공간			○	
	27		조각	바람의 흔적			○	
11	28	서구 볼로동 볼로지구 9블록 1,2로트	조각	Totem for Wish		○		
	29		조각	Wellcomes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6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인천광역시장

등록변경 사항: 대표자 변경

등록번호	단체명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2000-0- 인천광역시 -91호	광복회 인천광역시지부	대표자	강태평	홍기후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81호

2023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계획 공고

인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2023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1.

인 천 광 역 시 장

1. 융자계획

구분		내용
지원대상자		관내 소상공인 (단, 신용보증의 경우 무점포기업은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지원대상 자금		점포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
융자조건 및 지원한도	규모	융자총액 50억원
	한도	업체당 5천만원(신용보증서는 2천만원한도) 이내
	금리	0.8%(변동금리)
	상환기간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2. 지원 제외 대상

- 세금을 체납중인 사업자
-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현재 보증거래 중인 기업
(단, 신용보증이 아닌 부동산, 기타 담보로만 융자신청 업체는 인천신용보증재단에 현재 보증거래중이어도 융자가능)
- 사치·향락 등 재보증 제한업종[붙임1 참조]

3. 융자신청 및 조건

- 접수기간 : 2023. 2. 6. ~ 12. 31. (보유재원 소진시 조기종료)
- 신청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 용자조건 : 담보(신용보증서, 부동산, 기타담보)
 ※ 신용보증재단의 심사규정 및 해당은행의 여신심사규정에 따름.
- 취급은행 : (주)신한은행
- 유효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이내(*단 사업기간내)

※ 용자처리절차

소상공인 신청 → (접수, 지원결정)신용보증재단 → (용자조건 확인, 용자실행)신한은행

4. 구비서류(소정서식)

- 용자신청서 1부[서식1 참조]
- 사업계획서 1부(사업추진 관련 증빙서류 첨부)[서식2 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3 참조]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 1개월 이내)
- (세금체납확인서류) 국세납세증명서 1부,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 신청서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교부

5. 문 의 처

- (접수, 신용보증서발급 등)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260-1500~3),
 부평지점(☎508-1954~7), 서인천지점(☎569-0321~4), 남부지점(☎889-3611~4),
 계양지점(☎542-3911~4), 중부지점(☎766~8090~3), 연수지점(☎811-9531~5)
- (부동산담보, 기타담보 문의) 신한은행 인천소재 영업점(☎1599-8000)
- (기타사항)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440-4228)

6. 기타사항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용도의 사용, 기타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붙임1】

보증제한업종 ①

표준산업분류	업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및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 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 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 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 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보증제한업종 ②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도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외 기타 정보서비스업(63999) 중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경주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건전 문화 관련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 경영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 ^{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서식1】 용자신청서

2023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용자 신청서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업종(업태)		
	자산총액	백만원		상시종업원	명	
	담보	예)신용보증,부동산,기타	점포현황	예)유점포,무점포	업력	예)6개월이상,6개월미만
자금신청	총소요액	백만원	용자신청액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
용도	<input type="checkbox"/> 점포시설개선		<input type="checkbox"/> 운영자금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자를 신청합니다.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신청 취소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소정서식),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증빙서류(견적서, 계약서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소정양식)
3.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 1부
4. (세금체납확인서류)국세납세증명서 1부,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서식2】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현황

구분	상호	소재지	대표자	업종 (업태)	면적(m ²)		비고
					대지	연건축	
기존							
개선후							

 사업기간 : 세부사업 및 자금 소요계획(산출근거 : 별지작성 가능)

○ 세부 사업내용

○ 소요자금 산출내역

 용자신청액 : 백만원 기타사항

【서식3】개인정보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안)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회사명

대표자 성명

본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신청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동 융자신청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융자신청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융자신청서류 상의 개인정보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인천시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신청, 심사, 결정통보 및 사후관리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5년(단, 신용보증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신용보증 종료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등의 거부의 권리 】

-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인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업무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자금지원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 동의 】

- 귀하가 제출한 개인정보는 인천시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통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아래 내용에 따라 제공하게 됩니다
- 제공기관 : 인천광역시
- 정보 제공 범위 : 융자신청서, 계획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원납증명서에 기재된 사항, 자금 지원현황(지원금액,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
- 정보의 이용 목적 :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통계 등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단, 신용보증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신용보증 종료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거부의 권리 】

-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금지원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84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계절관리기간('22. 12월~ '23. 3월)에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3년 2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장

- 공고명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위반내용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계절관리기간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 위반)
- 대상 및 처분내용 : 붙임 참조
- 근거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과태료)
 -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 공고기간 : 2023. 2. 1. ~ 2023. 2. 15.

○ 의견제출 안내

- 의견제출 기한 : 2023. 2. 28.(화)

- 예정된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예정된 과태료(10만원/일)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20% 감경납부 가능)

- 아울러, 다음에 따른 단속제외 대상 차량에 해당될 경우 의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발기간 : '22. 12. 19. ~ 12. 30. (평일 06시~21시)

□ 단속제외 대상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제외

. 긴급자동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 표지 부착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 보호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애등급 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

.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 사용 자동차 등

▶ 한시적 단속제외 (※ 제4차 계절관리기간('22.12.1.~'23.3.31.)에 한하여 제외)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불가 자동차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자동차

※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소상공인 소유 차량일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받아 차량번호, 연락처 기입 후 아래 방법으로 제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문의 ☎ 국번없이 1357)

○ 의견 및 증빙자료(소상공인 확인서 등) 제출방법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

- E-mail : a4408749@korea.kr

- 팩 스 : 032-440-8847

- 전 화 :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 032-440-3550)

붙임 1. 대상 및 처분내용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대상

연번	처분대상	위반차량	위반일시	위반장소
1	한*나	30보6426	2022년12월30일, 20시31분50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2차로
2	이*복	96라6382	2022년12월30일, 20시15분15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송도교로 2차로
3	이*용	80루6064	2022년12월30일, 20시12분15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75(1차로)
4	(주)에*피로지스틱스	86루4093	2022년12월30일, 19시41분04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2차로)
5	이*식외1(공채면제)	28버1042	2022년12월30일, 19시28분38초	인천광역시 일신동주민센터 앞 2차로
6	강*광	57고5442	2022년12월30일, 19시13분07초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7	김*수	91나3480	2022년12월30일, 18시28분28초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8	김*우	88서3970	2022년12월30일, 18시19분27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송도교로 2차로
9	박*수	76두3456	2022년12월30일, 18시18분54초	인천광역시 전재울사거리 전재울사거리 3차로
10	아*희	52라8411	2022년12월30일, 18시06분27초	인천광역시 남촌농산물시장 앞 3차로
11	아*성	서울42너4062	2022년12월30일, 17시48분26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2차로)
12	박*훈	03어9837	2022년12월30일, 17시31분07초	인천광역시 용종교 4차로
13	김*수	32다2376	2022년12월30일, 17시27분20초	인천광역시 남촌농산물시장 앞 3차로
14	황*웅	50로3443	2022년12월30일, 17시14분17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2차로
15	김*선	인천34고9585	2022년12월30일, 17시11분30초	인천광역시 용종교 2차로
16	아*환	75모8049	2022년12월30일, 16시54분58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읍 갑곶리 산 6-3(2차로)
17	주식회사 티*엠	81나0359	2022년12월30일, 16시49분33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아암대로 3차로
18	김*우	92소2799	2022년12월30일, 16시43분43초	인천광역시 벽산블루밍아파트앞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48-5(1차로)
19	김*수	인천84바8286	2022년12월30일, 16시34분00초	인천광역시 삼산체육관 앞 4차로
20	(주)알*리텍	84너7552	2022년12월30일, 16시28분13초	인천광역시 항동저수지 앞 1차로
21	(주)청*청크린	94더1407	2022년12월30일, 16시23분35초	인천광역시 인천세관 앞 2차로
22	김*호	인천73고7722	2022년12월30일, 16시18분39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2차로
23	김*욱	90소4742	2022년12월30일, 16시00분23초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24	김*정	인천99아5563	2022년12월30일, 15시31분43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송도→남항방향)(1차로)
25	김*철	39소9884	2022년12월30일, 15시29분56초	인천광역시 가정성당 3차로
26	만*삼	서울32러5663	2022년12월30일, 15시28분39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읍 갑곶리 산 6-3(2차로)
27	하*웅	경기98바9311	2022년12월30일, 15시24분01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2차로
28	(주)정*화물	충남99사3925	2022년12월30일, 15시12분58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남항방향→송도)(2차로)
29	유*산	43조7328	2022년12월30일, 14시40분35초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관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30(2차로)
30	윤*일	09주4305	2022년12월30일, 14시37분15초	인천광역시 운연사거리 2차로
31	(주)태*로지스틱스	인천98사5025	2022년12월30일, 13시39분01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75(1차로)
32	김*중	12우6488	2022년12월30일, 13시34분59초	인천광역시 운연사거리 1차로
33	(주)중*티엘에스	65어1952	2022년12월30일, 13시34분42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75(1차로)
34	박*길	03누3059	2022년12월30일, 13시32분43초	인천광역시 남동IC 전방 2차로
35	(주)아*아티앤에스	인천98아2927	2022년12월30일, 13시11분20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75(4차로)

연번	처분대상	위반차량	위반일시	위반장소
36	이*천	70조4250	2022년12월30일, 13시05분53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3차로)
37	백*진	61버2192	2022년12월30일, 12시56분40초	인천광역시 백운공원 3차로
38	김*수	79저2231	2022년12월30일, 12시11분36초	인천광역시 전재울사거리 전재울사거리 4차로
39	송*호	03거8254	2022년12월30일, 12시08분29초	인천광역시 모다아울렛 4차로
40	가*서	인천33로9213	2022년12월30일, 12시08분27초	인천광역시 항동저수지 앞 4차로
41	(주) 초*토건	73오1428	2022년12월30일, 10시51분54초	인천광역시 남촌농산물시장 앞 3차로
42	주식회사 엘*디오 (Elradio Co.Ltd)	80라5952	2022년12월30일, 10시29분21초	인천광역시 한미반도체 앞 2차로
43	서*영	16노9322	2022년12월30일, 10시23분05초	인천광역시 삼산체육관 앞 3차로
44	삼*섭	84라3687	2022년12월30일, 09시46분51초	인천광역시 용종교 2차로
45	크*바텍 주식회사(Clover Tech Co., Ltd.)	89서3916	2022년12월30일, 09시13분48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2차로
46	주식회사 코*모폴리탄	91라3004	2022년12월30일, 09시06분13초	인천광역시 북항고가입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00(5차로)
47	황*은	92너4733	2022년12월30일, 08시54분52초	인천광역시 일신동주민센터 앞 3차로
48	이*숙	59가5899	2022년12월30일, 08시37분59초	인천광역시 전재울사거리 전재울사거리 1차로
49	주*현	94조1373	2022년12월30일, 08시28분27초	인천광역시 인천세관 앞 4차로
50	이*윤	08모6014	2022년12월30일, 08시04분36초	인천광역시 인천세관 앞 5차로
51	암*교	경기92로6444	2022년12월30일, 08시02분50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 6-3(2차로)
52	이*배	06루2434	2022년12월30일, 07시08분36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 6-3(2차로)
53	김*현	94더4831	2022년12월29일, 20시54분44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75(1차로)
54	김*성	10무8430	2022년12월29일, 20시32분54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 6-3(2차로)
55	송*용	05서5540	2022년12월29일, 20시11분59초	인천광역시 한미반도체 앞 2차로
56	김*기	25다6982	2022년12월29일, 20시07분19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1차로
57	김*택	86여3313	2022년12월29일, 20시03분05초	인천광역시 남동IC 전방 5차로
58	윤*길	52더1214	2022년12월29일, 19시46분05초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59	김*기	91나2069	2022년12월29일, 19시34분44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3차로
60	전*임	경북32로3704	2022년12월29일, 19시29분42초	인천광역시 소래대교 4차로
61	이*수	인천99아5419	2022년12월29일, 19시16분53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송도→남항방향)(1차로)
62	김*석	96거4927	2022년12월29일, 19시03분31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3차로
63	한*현	50거6287	2022년12월29일, 18시51분19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3차로
64	정*한	05러3774	2022년12월29일, 18시37분39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4차로)
65	김*수	91나3480	2022년12월29일, 18시13분24초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66	서*윤	75서6901	2022년12월29일, 18시07분32초	인천광역시 가정성당 2차로
67	이*성	서울42너4062	2022년12월29일, 17시44분30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2차로)
68	(주)알*리텍	84너7552	2022년12월29일, 17시43분17초	인천광역시 항동저수지 앞 1차로
69	J**NG HE	62모3165	2022년12월29일, 17시39분48초	인천광역시 남촌농산물시장 앞 1차로
70	이*환	75모8049	2022년12월29일, 17시35분27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 6-3(2차로)
71	주식회사 한*기획	03고5938	2022년12월29일, 17시28분42초	인천광역시 항동저수지 앞 4차로

연번	처분대상	위반차량	위반일시	위반장소
72	김*철	39소9884	2022년12월29일, 17시18분53초	인천광역시 가정성당 1차로
73	김*우	92소2799	2022년12월29일, 17시18분05초	인천광역시 벽산블루밍아파트앞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48-5(2차로)
74	김*수	32다2376	2022년12월29일, 17시03분49초	인천광역시 소래대교 5차로
75	안*근	부산75노4515	2022년12월29일, 16시33분11초	인천광역시 삼산체육관 앞 4차로
76	정*교	86누3813	2022년12월29일, 16시26분42초	인천광역시 천상교앞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143-22(2차로)
77	박*언	52무3888	2022년12월29일, 16시15분29초	인천광역시 인천세관 앞 5차로
78	김*현	47다1508	2022년12월29일, 15시23분57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75(4차로)
79	O**VER BENJAMIN CHARLES	55서0537	2022년12월29일, 15시08분55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송도교로 1차로
80	우*창	90무1054	2022년12월29일, 14시37분28초	인천광역시 인천세관 앞 2차로
81	조*석	84두5300	2022년12월29일, 14시32분49초	인천광역시 KCC아파트 2차로
82	황*웅	50로3443	2022년12월29일, 14시12분44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3차로
83	변*혁	84가3718	2022년12월29일, 14시06분47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남향방향→송도)(3차로)
84	최*순	66거4578	2022년12월29일, 13시36분36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2차로
85	최*덕	34로5038	2022년12월29일, 13시35분34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송도교로 2차로
86	김*훈	인천99아1497	2022년12월29일, 13시31분06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송도교로 2차로
87	(주)정*화물	충남99사3925	2022년12월29일, 13시23분20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75(1차로)
88	서*석	86노3126	2022년12월29일, 13시16분28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2차로
89	(주)다*엔지니어링	92어1731	2022년12월29일, 13시15분18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1차로)
90	채*병	86부1185	2022년12월29일, 12시57분07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1차로)
91	주식회사한국*알티	91로4544	2022년12월29일, 12시48분42초	인천광역시 소래대교 5차로
92	장*훈	66소4850	2022년12월29일, 12시08분17초	인천광역시 인천세관 앞 2차로
93	배*수	53도0522	2022년12월29일, 11시59분58초	인천광역시 남촌농산물시장 앞 1차로
94	양*승	60구5904	2022년12월29일, 11시54분03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2차로
95	양*호	86소4434	2022년12월29일, 11시14분30초	인천광역시 모다아울렛 2차로
96	문*수	88라1142	2022년12월29일, 11시07분48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75(1차로)
97	신*오	38라6505	2022년12월29일, 11시05분03초	인천광역시 신상교앞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106-212(3차로)
98	이*우	인천99아8435	2022년12월29일, 11시04분27초	인천광역시 북항고가입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00(4차로)
99	(주) *리종합개발	82어9804	2022년12월29일, 10시58분26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75(1차로)
100	김*정	인천99아5563	2022년12월29일, 10시55분59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75(1차로)
101	삼*영	인천99아5290	2022년12월29일, 10시51분33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75(2차로)
102	임*교	경기92로6444	2022년12월29일, 10시38분17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곡리 산 6-3(2차로)
103	(주) 세*아이엔텍	19루2279	2022년12월29일, 10시36분33초	인천광역시 벽산블루밍아파트앞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48-5(2차로)
104	이*라	91조9797	2022년12월29일, 10시22분26초	인천광역시 소래대교 4차로
105	(유)광*운수	광주89바6412	2022년12월29일, 10시18분02초	인천광역시 모다아울렛 4차로
106	임*묵	47고8745	2022년12월29일, 10시17분13초	인천광역시 KCC아파트 2차로

연번	처분대상	위반차량	위반일시	위반장소
107	김*영	86구8895	2022년12월29일, 09시58분26초	인천광역시 천상교앞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143-22(2차로)
108	박*희	86다5163	2022년12월29일, 09시39분28초	인천광역시 소래대교 5차로
109	아*천	70조4250	2022년12월29일, 09시27분55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3차로)
110	우*훈	94오5305	2022년12월29일, 09시08분32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남향방향→송도)(3차로)
111	아*숙	59가5899	2022년12월29일, 08시32분29초	인천광역시 전재울사거리 전재울사거리 1차로
112	윤*복	53누9792	2022년12월29일, 08시02분35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75(1차로)
113	안*강	39누5159	2022년12월29일, 07시28분26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4차로
114	아*용	인천99아5298	2022년12월29일, 07시23분19초	인천광역시 가정성당 2차로
115	박*진	인천99아9017	2022년12월29일, 07시01분18초	인천광역시 전재울사거리 전재울사거리 4차로
116	(주) 아*아이앤에스	인천98아2927	2022년12월29일, 06시55분04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남향방향→송도)(3차로)
117	박*국	80마8312	2022년12월29일, 06시54분13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송도교로 3차로
118	김*희	80버8510	2022년12월29일, 06시20분17초	인천광역시 인천세관 앞 4차로
119	윤*울	인천82다1374	2022년12월28일, 20시20분00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2차로
120	(주) 에*피로지스틱스	86루4093	2022년12월28일, 20시11분32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3차로)
121	주식회사 라*솔	70보3963	2022년12월28일, 19시44분28초	인천광역시 용종교 1차로
122	아*성	서울42나4062	2022년12월28일, 19시18분49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2차로)
123	김*수	32다2376	2022년12월28일, 19시06분29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4차로
124	정*철	38나6403	2022년12월28일, 19시05분43초	인천광역시 용종교 1차로
125	장*주	87마6436	2022년12월28일, 18시54분04초	인천광역시 남촌농산물시장 앞 3차로
126	양*현	47주1420	2022년12월28일, 18시45분25초	인천광역시 일신동주민센터 앞 1차로
127	강*영	29더4388	2022년12월28일, 18시13분13초	인천광역시 운연사거리 4차로
128	A**FI TAMER IBRAHIM ABDELMONGY	85구9876	2022년12월28일, 18시11분29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남향방향→송도)(2차로)
129	김*우	92소2799	2022년12월28일, 17시45분53초	인천광역시 벽산블루밍아파트앞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48-5(1차로)
130	주식회사 거*로지스	91마2177	2022년12월28일, 17시45분04초	인천광역시 천상교앞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143-22(2차로)
131	아*택	45나9110	2022년12월28일, 17시36분16초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132	정*현	90라7120	2022년12월28일, 16시42분50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3차로
133	아*화	96너0580	2022년12월28일, 16시17분09초	인천광역시 백운공원 1차로
134	서*석	86노3126	2022년12월28일, 16시01분50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3차로
135	양*호	86소4434	2022년12월28일, 16시01분43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2차로)
136	(주) 동*라미	인천94가5866	2022년12월28일, 15시58분33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3차로
137	아*복	86주2257	2022년12월28일, 15시58분08초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138	A**INE FRANK OKEY	90부2302	2022년12월28일, 15시55분57초	인천광역시 경인요금소 2차로
139	아*호	28너2758	2022년12월28일, 15시54분05초	인천광역시 일신동주민센터 앞 4차로
140	김*훈	인천99아1497	2022년12월28일, 15시40분23초	인천광역시 인천세관 앞 4차로
141	주식회사 원*에스	94거2701	2022년12월28일, 15시39분48초	인천광역시 가정성당 2차로
142	최*식	89루6909	2022년12월28일, 15시23분10초	인천광역시 용종교 2차로
143	한*상	80러5097	2022년12월28일, 15시21분44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3차로

연번	처분대상	위반차량	위반일시	위반장소
144	김*주	86라4211	2022년12월28일, 15시07분05초	인천광역시 전재울사거리 전재울사거리 1차로
145	(주) 다*엔지니어링	92어1731	2022년12월28일, 15시06분20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1차로)
146	장*휘	89다8557	2022년12월28일, 14시24분42초	인천광역시 한미반도체 앞 2차로
147	박*자	85로6479	2022년12월28일, 14시20분55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2차로
148	이*화	부산99사7246	2022년12월28일, 14시14분29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7가 27-175(2차로)
149	남*자	86보3269	2022년12월28일, 14시10분29초	인천광역시 북항고가입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00(2차로)
150	(주) 화*앤씨브이	70고7421	2022년12월28일, 14시09분53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 6-3(2차로)
151	(주) 태*로지스틱스	인천98사5025	2022년12월28일, 13시49분14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송도→남항방향)(1차로)
152	최*순	66거4578	2022년12월28일, 13시42분54초	인천광역시 남동IC 전방 4차로
153	이*찬	인천99아1297	2022년12월28일, 13시36분37초	인천광역시 한미반도체 앞 2차로
154	주식회사 애*코리아	91루9322	2022년12월28일, 13시34분10초	인천광역시 운연사거리 3차로
155	유*록	28루2362	2022년12월28일, 13시33분15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 6-3(2차로)
156	김*선	73구2868	2022년12월28일, 13시23분38초	인천광역시 경인요금소 2차로
157	배*수	53도0522	2022년12월28일, 13시09분46초	인천광역시 운연사거리 1차로
158	유*영(상품용)	98너7587	2022년12월28일, 12시38분56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남항방향→송도)(3차로)
159	이*환	75모8049	2022년12월28일, 12시28분55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 6-3(2차로)
160	T**ONOV NURDUN	26무5755	2022년12월28일, 12시25분53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송도교로 2차로
161	장*운	65거2137	2022년12월28일, 12시25분41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3차로)
162	이*웅	10구6089	2022년12월28일, 12시21분13초	인천광역시 남동IC 전방 2차로
163	변*혁	84가3718	2022년12월28일, 12시20분17초	인천광역시 전재울사거리 전재울사거리 2차로
164	허*자	89소1449	2022년12월28일, 11시50분29초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165	박*일	인천34고1131	2022년12월28일, 11시43분44초	인천광역시 전재울사거리 전재울사거리 1차로
166	윤*규	89가4610	2022년12월28일, 11시40분23초	인천광역시 모다아울렛 4차로
167	(주) 엘*트레이딩	86누2463	2022년12월28일, 11시36분51초	인천광역시 운연사거리 3차로
168	나*희	91저6626	2022년12월28일, 11시11분57초	인천광역시 운연사거리 4차로
169	심*영	인천99아5290	2022년12월28일, 11시01분34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7가 27-175(3차로)
170	박*언	52무3888	2022년12월28일, 10시20분39초	인천광역시 북항고가입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00(2차로)
171	권*웅	81다7346	2022년12월28일, 10시18분00초	인천광역시 계양대교 전방 3차로
172	박*희	86다5163	2022년12월28일, 09시57분56초	인천광역시 소래대교 5차로
173	크*바텍 주식회사(Clover Tech Co., Ltd.)	89서3916	2022년12월28일, 09시54분20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2차로
174	김*성	인천33누1625	2022년12월28일, 09시31분06초	인천광역시 벽산블루밍아파트앞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48-5(2차로)
175	김*석	인천99아3254	2022년12월28일, 09시22분19초	인천광역시 모다아울렛 3차로
176	윤*복	53누9792	2022년12월28일, 09시21분45초	인천광역시 인천세관 앞 5차로
177	이*우	인천99아8435	2022년12월28일, 09시11분40초	인천광역시 북항고가입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00(4차로)
178	우*훈	94오5305	2022년12월28일, 09시10분57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남항방향→송도)(3차로)

연번	처분대상	위반차량	위반일시	위반장소
179	(주)아*아티앤에스	인천98아2927	2022년12월28일, 08시23분25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75(1차로)
180	김*정	인천99아5563	2022년12월28일, 08시16분38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송도→남항방향)(1차로)
181	하*연	인천99아9135	2022년12월28일, 08시14분42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2차로
182	(주)정*화물	충남99사3925	2022년12월28일, 08시07분44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남항방향→송도)(3차로)
183	(주)케*애플	86라4920	2022년12월28일, 07시54분29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3차로
184	김*	92러4552	2022년12월28일, 06시46분44초	인천광역시 KCC아파트 1차로
185	K** ALEXEY	74마1290	2022년12월28일, 06시36분43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송도→남항방향)(1차로)
186	아*수	인천99아5419	2022년12월28일, 06시21분05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남항방향→송도)(3차로)
187	김*희	80버8510	2022년12월28일, 06시00분52초	인천광역시 인천세관 앞 4차로
188	김*현	94더4831	2022년12월27일, 20시15분07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75(2차로)
189	P**O SHUNJI	81마7756	2022년12월27일, 19시44분47초	인천광역시 남동IC 전방 2차로
190	김*수	32다2376	2022년12월27일, 19시41분01초	인천광역시 삼산체육관 앞 2차로
191	박*숙	09도2131	2022년12월27일, 18시59분44초	인천광역시 KCC아파트 2차로
192	아*수	인천99아5419	2022년12월27일, 18시59분25초	인천광역시 남동IC 전방 2차로
193	강*영	29더4388	2022년12월27일, 18시31분43초	인천광역시 운연사거리 4차로
194	장*우	86무7590	2022년12월27일, 17시33분55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4차로)
195	김*철	39소9884	2022년12월27일, 17시19분33초	인천광역시 가정성당 2차로
196	아*용	80루6064	2022년12월27일, 16시50분21초	인천광역시 인천세관 앞 5차로
197	김*우	92소2799	2022년12월27일, 16시45분06초	인천광역시 벽산블루밍아파트앞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48-5(1차로)
198	오*창	28루3907	2022년12월27일, 16시43분09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 6-3(1차로)
199	권*돈	86구6666	2022년12월27일, 16시38분39초	인천광역시 가정성당 2차로
200	아*섬	42어4682	2022년12월27일, 16시25분14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4차로
201	허*자	89소1449	2022년12월27일, 16시14분51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3차로)
202	정*해	73어2183	2022년12월27일, 16시07분26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75(2차로)
203	R** JINAN	24우2526	2022년12월27일, 16시02분30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2차로
204	조*수	72무2065	2022년12월27일, 15시31분28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2차로)
205	김*수	91나3480	2022년12월27일, 14시35분33초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206	변*혁	84가3718	2022년12월27일, 14시23분34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아담대로 3차로
207	장*중	경북98아5709	2022년12월27일, 14시05분05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남항방향→송도)(3차로)
208	J** CHUN	66누7463	2022년12월27일, 14시02분27초	인천광역시 용종교 4차로
209	광*트렉타 (주)	전남82바9330	2022년12월27일, 13시51분08초	인천광역시 인천세관 앞 2차로
210	스*종합자원 (주)	91고1860	2022년12월27일, 13시47분46초	인천광역시 삼산체육관 앞 4차로
211	아*희	82어9923	2022년12월27일, 13시47분27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 6-3(2차로)
212	김*훈	인천99아1497	2022년12월27일, 13시45분35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송도교로 3차로
213	임*열	85라2107	2022년12월27일, 13시25분32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2차로)
214	송*용	05서5540	2022년12월27일, 13시22분53초	인천광역시 한미반도체 앞 2차로

연번	처분대상	위반차량	위반일시	위반장소
215	(주) 세*아이엔텍	19루2279	2022년12월27일, 13시11분48초	인천광역시 벽산블루밍아파트앞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48-5(1차로)
216	아*노	인천31두4656	2022년12월27일, 13시01분16초	인천광역시 항동저수지 앞 1차로
217	삼*섭	84라3687	2022년12월27일, 13시01분02초	인천광역시 용종교 2차로
218	김*곤	25모5192	2022년12월27일, 12시34분21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3차로
219	정*훈	54다1377	2022년12월27일, 12시24분02초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220	백*인	85노2540	2022년12월27일, 12시21분44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75(1차로)
221	N**YEN VAN TUAN	29누7328	2022년12월27일, 12시20분50초	인천광역시 전재울사거리 전재울사거리 3차로
222	박*순	서울98바7386	2022년12월27일, 11시55분32초	인천광역시 용종교 1차로
223	강*우	87가2845	2022년12월27일, 11시52분58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 6-3(1차로)
224	강*식	26너5032	2022년12월27일, 11시52분41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5차로
225	김*정	인천99아5563	2022년12월27일, 11시24분27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75(2차로)
226	유*석	89구2749	2022년12월27일, 11시19분08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1차로
227	나*희	91저6626	2022년12월27일, 11시17분33초	인천광역시 운연사거리 3차로
228	더*지봉 (주)	94거3190	2022년12월27일, 10시14분16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 6-3(1차로)
229	전*초	경기67머3749	2022년12월27일, 09시51분36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 6-3(1차로)
230	임*택	48마2682	2022년12월27일, 09시37분45초	인천광역시 항동저수지 앞 3차로
231	박*희	86다5163	2022년12월27일, 09시33분38초	인천광역시 소래대교 6차로
232	주식회사 호*	89마1939	2022년12월27일, 09시29분11초	인천광역시 소래대교 5차로
233	아*성	서울42너4062	2022년12월27일, 09시27분20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2차로)
234	심*영	인천99아5290	2022년12월27일, 09시22분09초	인천광역시 인천세관 앞 4차로
235	아*숙	59가5899	2022년12월27일, 08시31분37초	인천광역시 전재울사거리 전재울사거리 1차로
236	(주) 케*앰피	86라4920	2022년12월27일, 08시18분06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3차로
237	주*현	94조1373	2022년12월27일, 08시03분48초	인천광역시 경인요금소 2차로
238	윤*복	53누9792	2022년12월27일, 07시57분06초	인천광역시 인천세관 앞 5차로
239	김*선	73구2868	2022년12월27일, 07시43분48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남항방향→송도)(2차로)
240	아*배	06루2434	2022년12월27일, 07시28분35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 6-3(2차로)
241	장*훈	66소4850	2022년12월27일, 07시16분19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75(3차로)
242	(주)정*화물	충남99사3925	2022년12월27일, 06시57분41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남항방향→송도)(2차로)
243	P**SA THANAKORN	24다6917	2022년12월27일, 06시52분11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 6-3(2차로)
244	K** ALEXY	74마1290	2022년12월27일, 06시50분07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송도→남항방향)(2차로)
245	주*오래에프엔에프	95루6036	2022년12월27일, 06시47분12초	인천광역시 전재울사거리 전재울사거리 4차로
246	(주) 아*아이엔에스	인천98아2927	2022년12월27일, 06시25분22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남항방향→송도)(3차로)
247	김*분	90루7612	2022년12월27일, 06시14분07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3차로
248	추*호	86리6395	2022년12월27일, 06시04분07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2차로
249	(주) 에*피로지스틱스	86루4093	2022년12월26일, 20시18분19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2차로)
250	안*균	86라1061	2022년12월26일, 20시13분56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4차로

연번	처분대상	위반차량	위반일시	위반장소
251	김*진	58도2911	2022년12월26일, 19시43분33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1차로)
252	J**NG HE	62모3165	2022년12월26일, 19시15분52초	인천광역시 남촌농산물시장 앞 3차로
253	김*갑	92나8376	2022년12월26일, 19시09분30초	인천광역시 용종교 1차로
254	J** CHUN	66누7463	2022년12월26일, 18시38분29초	인천광역시 용종교 3차로
255	강*영	29더4388	2022년12월26일, 18시29분12초	인천광역시 운연사거리 4차로
256	김*수	91나3480	2022년12월26일, 18시23분13초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257	강*우	87가2845	2022년12월26일, 18시19분54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 6-3(2차로)
258	이*성	서울42너4062	2022년12월26일, 17시45분56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2차로)
259	이*환	75모8049	2022년12월26일, 17시43분28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 6-3(2차로)
260	최*정	충남99사4857	2022년12월26일, 17시30분16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75(1차로)
261	(주)알*리텍	84너7552	2022년12월26일, 17시28분32초	인천광역시 항동저수지 앞 1차로
262	김*수	32다2376	2022년12월26일, 17시27분04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송도교로 3차로
263	(주)화*앤씨브이	70고7421	2022년12월26일, 17시15분07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 6-3(2차로)
264	김*우	92소2799	2022년12월26일, 17시13분08초	인천광역시 벽산블루밍아파트앞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48-5(1차로)
265	황*식	95머2251	2022년12월26일, 17시01분59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 6-3(2차로)
266	권*돈	86구6666	2022년12월26일, 16시55분10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2차로
267	이*호	92노6678	2022년12월26일, 16시54분48초	인천광역시 북항고가입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00(2차로)
268	김*구	74라8690	2022년12월26일, 16시48분16초	인천광역시 신상교앞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106-212(3차로)
269	(주)태*로지스틱스	인천98사5025	2022년12월26일, 16시14분56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75(1차로)
270	조*석	84두5300	2022년12월26일, 16시11분35초	인천광역시 KCC아파트 2차로
271	(유)국*중앙화물	전북99사1073	2022년12월26일, 15시45분53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송도교로 3차로
272	안*근	부산75노4515	2022년12월26일, 15시29분23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2차로
273	김*	90소9262	2022년12월26일, 15시13분16초	인천광역시 전재울사거리 전재울사거리 3차로
274	이*수	94우9525	2022년12월26일, 15시10분24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송도교로 1차로
275	김*훈	인천99아1497	2022년12월26일, 15시05분36초	인천광역시 인천세관 앞 5차로
276	김*순	19부9181	2022년12월26일, 14시55분27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1차로)
277	김*영	86구8895	2022년12월26일, 14시13분31초	인천광역시 천상교앞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143-22(2차로)
278	(주)동*라미	인천94가5866	2022년12월26일, 14시13분29초	인천광역시 남동IC 전방 2차로
279	(주)다*엔지니어링	92어1731	2022년12월26일, 13시53분21초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280	이*용	80루6064	2022년12월26일, 13시03분52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75(1차로)
281	최*만	82로2469	2022년12월26일, 12시57분26초	인천광역시 경인요금소 1차로
282	최*기	83라7455	2022년12월26일, 12시54분10초	인천광역시 천상교앞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143-22(3차로)
283	김*조	96루3345	2022년12월26일, 12시51분16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4차로
284	유한회사 에*유엑스씨티	34소5609	2022년12월26일, 12시48분02초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285	최*은	69너1902	2022년12월26일, 12시47분29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2차로

연번	처분대상	위반차량	위반일시	위반장소
286	이*석	인천99아4531	2022년12월26일, 12시42분24초	인천광역시 남동IC 전방 2차로
287	임*열	85라2107	2022년12월26일, 12시24분30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1차로)
288	신*기	84가3619	2022년12월26일, 12시12분56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송도교로 2차로
289	주식회사 라*솔	70보3963	2022년12월26일, 12시11분15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남향방향→송도)(3차로)
290	김*연	92여4277	2022년12월26일, 11시40분32초	인천광역시 모다아울렛 2차로
291	배*수	53도0522	2022년12월26일, 11시37분18초	인천광역시 운연사거리 2차로
292	김*정	인천99아5563	2022년12월26일, 11시24분36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남향방향→송도)(3차로)
293	강*광	57고5442	2022년12월26일, 11시09분31초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294	(주)오*이에스케이모터스	97너4033	2022년12월26일, 11시02분12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2차로
295	추*화	49거2109	2022년12월26일, 10시41분52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1차로
296	홍*규	인천98사9519	2022년12월26일, 10시32분14초	인천광역시 모다아울렛 5차로
297	박*희	86다5163	2022년12월26일, 10시13분17초	인천광역시 소래대교 6차로
298	하*복	76고6937	2022년12월26일, 09시58분23초	인천광역시 북항고가입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00(4차로)
299	더*지빙 (주)	94거3190	2022년12월26일, 09시21분28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2차로)
300	정*훈	94가7072	2022년12월26일, 09시01분48초	인천광역시 삼산체육관 앞 1차로
301	주*현	94조1373	2022년12월26일, 08시36분07초	인천광역시 인천세관 앞 2차로
302	윤*복	53누9792	2022년12월26일, 08시31분15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7가 27-175(1차로)
303	배*자	38더2683	2022년12월26일, 08시12분28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2차로
304	심*영	인천99아5290	2022년12월26일, 08시10분55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송도→남향방향)(1차로)
305	소*호	63더2727	2022년12월26일, 08시08분55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1차로
306	양*승	60구5904	2022년12월26일, 07시59분53초	인천광역시 운연사거리 4차로
307	(주)케*애플	86라4920	2022년12월26일, 07시47분36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3차로
308	김*선	73구2868	2022년12월26일, 07시19분50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남향방향→송도)(3차로)
309	(주)아*아티엔에스	인천98아2927	2022년12월26일, 06시55분32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남향방향→송도)(3차로)
310	P**SA THANAKORN	24다6917	2022년12월26일, 06시54분57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 6-3(2차로)
311	K** ALEXEY	74마1290	2022년12월26일, 06시31분30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송도→남향방향)(2차로)
312	윤*재	93보5063	2022년12월26일, 06시29분56초	인천광역시 삼산체육관 앞 1차로
313	김*분	90루7612	2022년12월26일, 06시22분25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3차로
314	김*갑	92나8376	2022년12월23일, 20시54분59초	인천광역시 용종교 1차로
315	(주)에*피로지스틱스	86루4093	2022년12월23일, 20시37분51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1차로)
316	P**SA THANAKORN	24다6917	2022년12월23일, 20시08분05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 6-3(2차로)
317	이*숙	59가5899	2022년12월23일, 19시19분16초	인천광역시 전재울사거리 전재울사거리 4차로
318	강*영	29더4388	2022년12월23일, 18시08분13초	인천광역시 운연사거리 4차로
319	김*우	92소2799	2022년12월23일, 17시55분23초	인천광역시 벽산블루밍아파트앞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48-5(2차로)
320	이*성	서울42너4062	2022년12월23일, 17시42분24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2차로)
321	이*환	75모8049	2022년12월23일, 17시27분14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 6-3(2차로)

연번	처분대상	위반차량	위반일시	위반장소
322	김*정	인천99아5563	2022년12월23일, 17시02분07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7가 27-175(1차로)
323	주식회사 일*	59주2485	2022년12월23일, 17시00분47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3차로
324	김*수	32다2376	2022년12월23일, 16시24분38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송도교로 3차로
325	신*철	65도4122	2022년12월23일, 16시10분05초	인천광역시 용종교 2차로
326	농업회사법인강*섬조사 료위탁영농주식회사	90오2411	2022년12월23일, 15시56분12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1차로)
327	김*한	83거5613	2022년12월23일, 15시54분40초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328	김*수	91나3480	2022년12월23일, 15시50분20초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329	추*호	86러6395	2022년12월23일, 15시18분32초	인천광역시 소래대교 4차로
330	한*상	80러5097	2022년12월23일, 15시11분58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3차로
331	아*욱	20라4885	2022년12월23일, 14시32분45초	인천광역시 운연사거리 3차로
332	유*테크 (주)	경기75거6353	2022년12월23일, 14시12분52초	인천광역시 운연사거리 3차로
333	양*승	60구5904	2022년12월23일, 14시12분00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1차로
334	(주) 신*산업	86주9761	2022년12월23일, 13시47분48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7가 27-175(1차로)
335	김*진	03구3318	2022년12월23일, 13시44분33초	인천광역시 용종교 2차로
336	주식회사 호*	86우3403	2022년12월23일, 12시36분04초	인천광역시 KCC아파트 1차로
337	김*래	경기38다2720	2022년12월23일, 12시33분16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2차로
338	허*자	89소1449	2022년12월23일, 11시40분59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2차로)
339	허*복	76고6937	2022년12월23일, 11시03분48초	인천광역시 모다아울렛 2차로
340	방*선	인천98바2022	2022년12월23일, 10시58분50초	인천광역시 가정성당 4차로
341	김*태	68주7298	2022년12월23일, 10시56분28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3차로
342	황*원	01무4676	2022년12월23일, 10시52분44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 6-3(1차로)
343	김*중	78모4947	2022년12월23일, 10시29분18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남항방향→송도)(1차로)
344	박*환	81오4640	2022년12월23일, 10시11분02초	인천광역시 북항고가입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00(3차로)
345	박*일	인천34고1131	2022년12월23일, 09시53분14초	인천광역시 전재울사거리 전재울사거리 1차로
346	유*조	75노3096	2022년12월23일, 09시52분36초	인천광역시 향동저수지 앞 1차로
347	(주) 꿈*는 누리교육	91라8142	2022년12월23일, 09시44분10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2차로
348	조*수	72무2065	2022년12월23일, 09시16분36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2차로)
349	정*국	인천98사9505	2022년12월23일, 09시12분30초	인천광역시 인천세관 앞 4차로
350	김*진	11서7205	2022년12월23일, 09시01분07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3차로
351	아*이	94모1029	2022년12월23일, 08시58분19초	인천광역시 모다아울렛 3차로
352	(주)정*화물	충남99사3925	2022년12월23일, 08시44분27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3차로
353	아*경	75노8880	2022년12월23일, 08시28분51초	인천광역시 운연사거리 4차로
354	홍*관	93너4023	2022년12월23일, 08시27분47초	인천광역시 백운공원 1차로
355	주*현	94조1373	2022년12월23일, 08시08분16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3차로
356	아*수	88어1437	2022년12월23일, 08시03분20초	인천광역시 모다아울렛 3차로
357	(주) 케*앰피	86라4920	2022년12월23일, 07시54분35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3차로
358	정*훈	94가7072	2022년12월23일, 07시15분14초	인천광역시 삼산체육관 앞 2차로
359	김*선	73구2868	2022년12월23일, 07시11분10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남항방향→송도)(2차로)

연번	처분대상	위반차량	위반일시	위반장소
360	(주) 태*로지스틱스	인천98사5025	2022년12월23일, 06시42분06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남향방향→송도)(3차로)
361	(주) 아*아이앤에스	인천98아2927	2022년12월23일, 06시18분01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남향방향→송도)(3차로)
362	황*일	경남81두4731	2022년12월23일, 06시12분33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3차로
363	김*근	16더1753	2022년12월22일, 20시14분18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2차로)
364	(주) 세*아이엔텍	19루2279	2022년12월22일, 20시04분27초	인천광역시 항동저수지 앞 2차로
365	김*복	86노4545	2022년12월22일, 19시57분41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2차로
366	김*갑	92나8376	2022년12월22일, 19시34분33초	인천광역시 용종교 1차로
367	허*자	89소1449	2022년12월22일, 18시31분33초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368	고*두	97수1157	2022년12월22일, 18시21분55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3차로
369	김*수	91나3480	2022년12월22일, 18시13분40초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370	김*훈	12나7783	2022년12월22일, 17시52분39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1차로)
371	김*상	90모7536	2022년12월22일, 17시44분32초	인천광역시 가정성당 2차로
372	하*웅	경기98바9311	2022년12월22일, 17시43분24초	인천광역시 북항고가입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00(2차로)
373	이*환	75모8049	2022년12월22일, 17시37분53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 6-3(2차로)
374	김*구	74라8690	2022년12월22일, 17시36분15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1차로
375	김*수	32다2376	2022년12월22일, 17시30분49초	인천광역시 소래대교 5차로
376	(주)알*리텍	84너7552	2022년12월22일, 17시28분08초	인천광역시 항동저수지 앞 1차로
377	서*욱	91고1530	2022년12월22일, 17시18분31초	인천광역시 벽산블루밍아파트앞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48-5(2차로)
378	정*숙	02로3910	2022년12월22일, 17시14분55초	인천광역시 천상교앞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143-22(2차로)
379	김*곤	89다6492	2022년12월22일, 17시01분31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75(1차로)
380	이*용	80루6064	2022년12월22일, 16시58분51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75(1차로)
381	김*우	92소2799	2022년12월22일, 16시25분50초	인천광역시 벽산블루밍아파트앞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48-5(2차로)
382	(주) 다*엔지니어링	92어1731	2022년12월22일, 16시17분56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1차로)
383	K** ALEXEY	74마1290	2022년12월22일, 16시02분33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송도→남향방향)(2차로)
384	J**NG HE	62모3165	2022년12월22일, 15시28분53초	인천광역시 남동IC 전방 4차로
385	김*훈	인천99아1497	2022년12월22일, 15시12분15초	인천광역시 인천세관 앞 2차로
386	윤*창	대구30마8914	2022년12월22일, 14시51분53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1차로
387	김*곤	25모5192	2022년12월22일, 14시36분46초	인천광역시 가정성당 4차로
388	권*태	78너6339	2022년12월22일, 14시27분58초	인천광역시 KCC아파트 1차로
389	권*돈	86구6666	2022년12월22일, 14시17분25초	인천광역시 일신동주민센터 앞 1차로
390	윤*남	80조7526	2022년12월22일, 14시15분19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남향방향→송도)(3차로)
391	류*	90누3628	2022년12월22일, 14시05분39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송도교로 3차로
392	김*한	92오5887	2022년12월22일, 13시40분02초	인천광역시 천상교앞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143-22(3차로)
393	E**KELY MARTIN ESONO	89모0435	2022년12월22일, 13시30분06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송도교로 2차로
394	기독교대한감리회종*교 회(유근화)	20로2593	2022년12월22일, 13시25분59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아암대로 3차로
395	원*재	인천99아5936	2022년12월22일, 13시24분48초	인천광역시 인천세관 앞 4차로

연번	처분대상	위반차량	위반일시	위반장소
396	김*	92러4552	2022년12월22일, 13시03분16초	인천광역시 KCC아파트 1차로
397	주식회사 비*트랜스	인천98아4049	2022년12월22일, 12시46분59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송도→남향방향)(2차로)
398	(주) 오*21세기기업	86노2491	2022년12월22일, 12시34분41초	인천광역시 삼산체육관 앞 3차로
399	장*중	경북98아5709	2022년12월22일, 12시12분48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75(1차로)
400	아*석	93주9281	2022년12월22일, 12시09분02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2차로)
401	아*화	부산99사7246	2022년12월22일, 12시06분28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송도교로 2차로
402	주식회사한국*알티	91로4544	2022년12월22일, 12시06분25초	인천광역시 소래대교 5차로
403	황*구	73모3732	2022년12월22일, 11시49분25초	인천광역시 신상교앞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106-212(3차로)
404	강*영	29더4388	2022년12월22일, 11시14분34초	인천광역시 운연사거리 4차로
405	김*일	26저9156	2022년12월22일, 11시14분08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3차로
406	김*정	인천99아5563	2022년12월22일, 11시10분58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송도→남향방향)(1차로)
407	변*혁	84가3718	2022년12월22일, 11시00분42초	인천광역시 모다아울렛 3차로
408	우*훈	94오5305	2022년12월22일, 10시42분07초	인천광역시 인천세관 앞 2차로
409	홍*민	89다2848	2022년12월22일, 10시29분40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1차로)
410	(주) 꿈*는 누리교육	91라8142	2022년12월22일, 09시52분19초	인천광역시 백운공원 2차로
411	삼*섭	84라3687	2022년12월22일, 09시47분44초	인천광역시 용종교 2차로
412	박*환	81오4640	2022년12월22일, 08시50분27초	인천광역시 북항고가입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00(3차로)
413	아*숙	59가5899	2022년12월22일, 08시35분26초	인천광역시 전재울사거리 전재울사거리 1차로
414	주*현	94조1373	2022년12월22일, 08시19분30초	인천광역시 인천세관 앞 4차로
415	윤*복	53누9792	2022년12월22일, 08시14분11초	인천광역시 인천세관 앞 4차로
416	(주) 케*앰피	86라4920	2022년12월22일, 07시57분36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3차로
417	백*진	61버2192	2022년12월22일, 07시48분15초	인천광역시 백운공원 1차로
418	(주)정*화물	충남99사3925	2022년12월22일, 06시22분57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남향방향→송도)(2차로)
419	(주) 아*아티엔에스	인천98아2927	2022년12월22일, 06시20분58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남향방향→송도)(3차로)
420	(주) 태*로지스틱스	인천98사5025	2022년12월22일, 06시20분30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남향방향→송도)(3차로)
421	김*분	90루7612	2022년12월22일, 06시18분08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4차로
422	임*일	전북29라5931	2022년12월22일, 06시08분17초	인천광역시 모다아울렛 5차로
423	J** JIJUN	74조7815	2022년12월22일, 06시03분25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송도교로 2차로
424	장*우	86무7590	2022년12월21일, 19시15분33초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425	백*진	61버2192	2022년12월21일, 18시50분37초	인천광역시 운연사거리 3차로
426	김*수	32다2376	2022년12월21일, 17시57분27초	인천광역시 남촌농산물시장 앞 3차로
427	아*성	서울42너4062	2022년12월21일, 17시40분06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2차로)
428	아*영	40저9250	2022년12월21일, 17시38분50초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429	아*용	80루6064	2022년12월21일, 17시37분28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75(2차로)
430	아*진	17모7271	2022년12월21일, 17시36분40초	인천광역시 가정성당 3차로

연번	처분대상	위반차량	위반일시	위반장소
431	박*근	86보1717	2022년12월21일, 17시32분36초	인천광역시 천상교앞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143-22(2차로)
432	김*우	92소2799	2022년12월21일, 16시52분50초	인천광역시 벽산블루밍아파트앞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48-5(2차로)
433	하*연	인천99아9135	2022년12월21일, 15시55분57초	인천광역시 KCC아파트 1차로
434	변*혁	84가3718	2022년12월21일, 15시43분39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송도→남향방향)(2차로)
435	양*호	87누3101	2022년12월21일, 15시37분17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3차로)
436	김*용	95버2357	2022년12월21일, 15시30분22초	인천광역시 일신동주민센터 앞 3차로
437	배*자	91우2861	2022년12월21일, 15시27분27초	인천광역시 운연사거리 3차로
438	조*수	72무2065	2022년12월21일, 15시15분14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3차로)
439	한*상	80러5097	2022년12월21일, 15시00분30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2차로
440	더*지붕 (주)	94거3190	2022년12월21일, 14시27분37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2차로)
441	장*주	87머6436	2022년12월21일, 14시14분37초	인천광역시 소래대교 4차로
442	김*훈	12나7783	2022년12월21일, 13시52분49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1차로)
443	배*수	53도0522	2022년12월21일, 13시47분51초	인천광역시 남촌농산물시장 앞 3차로
444	김*영	인천99아1054	2022년12월21일, 13시40분31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3차로
445	임*성	68주7388	2022년12월21일, 13시26분59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송도→남향방향)(2차로)
446	김*규	80주6681	2022년12월21일, 13시21분59초	인천광역시 남향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7가 27-175(2차로)
447	우*훈	94오5305	2022년12월21일, 13시09분21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남향방향→송도)(3차로)
448	김*정	인천99아5563	2022년12월21일, 13시06분24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송도→남향방향)(1차로)
449	권*돈	86구6666	2022년12월21일, 12시47분12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2차로
450	일*상황버섯영농조합법인	54루8215	2022년12월21일, 12시29분53초	인천광역시 인천세관 앞 5차로
451	한*태	인천81라1336	2022년12월21일, 12시28분05초	인천광역시 삼산체육관 앞 4차로
452	유한회사 에*유엑스씨티	34소5609	2022년12월21일, 12시27분14초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453	장*휘	89다8557	2022년12월21일, 12시25분31초	인천광역시 삼산체육관 앞 1차로
454	김*곤	89다6492	2022년12월21일, 12시12분25초	인천광역시 인천세관 앞 5차로
455	(주)정*화물	충남99사3925	2022년12월21일, 12시10분01초	인천광역시 남향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7가 27-175(2차로)
456	(주) 하*디앤엘	경기80거1582	2022년12월21일, 12시00분48초	인천광역시 백운공원 2차로
457	김*수	인천84바8286	2022년12월21일, 11시55분36초	인천광역시 삼산체육관 앞 3차로
458	권*철	80가1795	2022년12월21일, 11시49분34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3차로
459	모*호	82구4398	2022년12월21일, 11시45분32초	인천광역시 KCC아파트 3차로
460	박*만	25조3637	2022년12월21일, 11시36분53초	인천광역시 남향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7가 27-175(3차로)
461	이*환	75모8049	2022년12월21일, 11시36분47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읍 강화읍 갑곶리 산 6-3(2차로)
462	(주) 퍼*트개발	91부6420	2022년12월21일, 11시35분20초	인천광역시 소래대교 4차로
463	주*완	65무5537	2022년12월21일, 11시34분59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2차로)
464	월*종합상사 주식회사	82소6949	2022년12월21일, 11시27분12초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465	이*빈	80다1109	2022년12월21일, 11시22분06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3차로

연번	처분대상	위반차량	위반일시	위반장소
466	(주)아*아티앤에스	인천98아2927	2022년12월21일, 11시19분34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75(1차로)
467	최*한	경기98사1559	2022년12월21일, 11시14분37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75(1차로)
468	김*영	86구8895	2022년12월21일, 11시12분21초	인천광역시 운연사거리 4차로
469	박*환	81오4640	2022년12월21일, 10시42분54초	인천광역시 북항고가입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00(3차로)
470	송*훈	26라3524	2022년12월21일, 10시29분48초	인천광역시 운연사거리 4차로
471	김*혁	49머3288	2022년12월21일, 10시18분39초	인천광역시 항동저수지 앞 1차로
472	강*광	57고5442	2022년12월21일, 10시11분08초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473	심*섭	84라3687	2022년12월21일, 10시01분06초	인천광역시 용종교 2차로
474	심*영	인천99아5290	2022년12월21일, 09시28분04초	인천광역시 인천세관 앞 4차로
475	이*경	75노8880	2022년12월21일, 09시27분49초	인천광역시 운연사거리 3차로
476	J**YANHAI	78조5034	2022년12월21일, 09시21분38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3차로
477	이*조	74오8149	2022년12월21일, 08시45분48초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478	김*준	96조9706	2022년12월21일, 06시38분06초	인천광역시 가정성당 4차로
479	P**O SHUNJI	81마7756	2022년12월21일, 06시29분53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3차로
480	(주)에*피로지스틱스	86루4093	2022년12월20일, 20시42분04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2차로)
481	이*훈	27버8315	2022년12월20일, 19시52분40초	인천광역시 일신동주민센터 앞 2차로
482	이*용	80루6064	2022년12월20일, 19시48분40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75(3차로)
483	윤*수	90오1152	2022년12월20일, 19시44분40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송도교로 2차로
484	김*수	32다2376	2022년12월20일, 19시33분34초	인천광역시 삼산체육관 앞 3차로
485	천*영	10부2337	2022년12월20일, 19시31분39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 6-3(2차로)
486	김*수	91나3480	2022년12월20일, 18시38분07초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487	이*성	서울42나4062	2022년12월20일, 17시41분47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2차로)
488	김*미	80무4565	2022년12월20일, 17시34분26초	인천광역시 용종교 1차로
489	최*섭	52나8485	2022년12월20일, 17시31분22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송도교로 3차로
490	(주)알*리텍	84너7552	2022년12월20일, 17시19분10초	인천광역시 항동저수지 앞 1차로
491	남*자	86보3269	2022년12월20일, 17시10분24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1차로)
492	김*곤	89다6492	2022년12월20일, 17시08분17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75(1차로)
493	나*진	01버5675	2022년12월20일, 16시55분48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 6-3(2차로)
494	임*미	93너8941	2022년12월20일, 16시44분27초	인천광역시 천상교앞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143-22(3차로)
495	안*훈	67도2024	2022년12월20일, 16시41분56초	인천광역시 소래대교 5차로
496	황*웅	50로3443	2022년12월20일, 16시33분40초	인천광역시 일신동주민센터 앞 4차로
497	조*수	72무2065	2022년12월20일, 16시21분19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2차로)
498	최*일	15오2020	2022년12월20일, 15시59분36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3차로
499	장*중	경북98아5709	2022년12월20일, 15시59분34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남항방향→송도)(3차로)
500	이*섭	42어4682	2022년12월20일, 15시52분39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4차로
501	강*광	57고5442	2022년12월20일, 15시44분46초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연번	처분대상	위반차량	위반일시	위반장소
502	김*훈	인천99아1497	2022년12월20일, 15시37분37초	인천광역시 인천세관 앞 2차로
503	최*순	66거4578	2022년12월20일, 14시57분50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4차로
504	송*환경주식회사	83수9804	2022년12월20일, 14시40분43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2차로)
505	아*택	인천32너9229	2022년12월20일, 14시35분15초	인천광역시 남동IC 전방 4차로
506	조*원	86수4080	2022년12월20일, 14시24분36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송도교로 2차로
507	아*웅	10구6089	2022년12월20일, 14시00분10초	인천광역시 운연사거리 2차로
508	아*일	인천83라2390	2022년12월20일, 13시06분50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3차로)
509	권*태	78너6339	2022년12월20일, 12시36분12초	인천광역시 KCC아파트 2차로
510	주식회사 호*	86우3403	2022년12월20일, 12시36분06초	인천광역시 KCC아파트 1차로
511	박*환	81오4640	2022년12월20일, 12시26분38초	인천광역시 북항고가입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00(3차로)
512	박*근	86보1717	2022년12월20일, 12시10분47초	인천광역시 천상교앞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143-22(2차로)
513	선*특수 주식회사	울산99바3741	2022년12월20일, 11시42분22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3차로
514	성*홍	91머5600	2022년12월20일, 11시37분30초	인천광역시 항동저수지 앞 1차로
515	심*섭	84라3687	2022년12월20일, 11시22분02초	인천광역시 용종교 2차로
516	심*영	인천99아5290	2022년12월20일, 11시20분45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75(4차로)
517	김*진	21조6051	2022년12월20일, 11시16분44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3차로
518	주식회사성보*	88서5847	2022년12월20일, 11시08분17초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519	강*구	88보0146	2022년12월20일, 11시04분16초	인천광역시 가정성당 2차로
520	최*한	경기98사1559	2022년12월20일, 11시00분28초	인천광역시 인천세관 앞 5차로
521	김*석	81오8110	2022년12월20일, 10시57분35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75(2차로)
522	김*호	89다9198	2022년12월20일, 10시41분54초	인천광역시 인천세관 앞 4차로
523	조*욱	25부3637	2022년12월20일, 10시34분53초	인천광역시 계양대교 전방 2차로
524	(주) 중*티엘에스	65어1952	2022년12월20일, 10시34분23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75(3차로)
525	김*진	58도2911	2022년12월20일, 10시28분10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1차로)
526	윤*호	86부5529	2022년12월20일, 10시27분46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4차로
527	박*순	서울98바7386	2022년12월20일, 10시23분38초	인천광역시 항동저수지 앞 2차로
528	주식회사 호*	89마1939	2022년12월20일, 09시39분35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75(3차로)
529	아*화	부산99사7246	2022년12월20일, 09시37분09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송도교로 3차로
530	윤*복	53누9792	2022년12월20일, 09시35분29초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관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30(2차로)
531	김*정	인천99아5563	2022년12월20일, 09시05분40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75(1차로)
532	박*진	93라4575	2022년12월20일, 08시39분13초	인천광역시 소래대교 5차로
533	박*현	96주9368	2022년12월20일, 08시29분50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2차로)
534	김*탁	84더4474	2022년12월20일, 08시25분59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2차로)
535	(주) 다*엔지니어링	92어1731	2022년12월20일, 07시56분59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1차로)
536	백*진	61버2192	2022년12월20일, 07시54분50초	인천광역시 백운공원 1차로
537	아*호	92노6678	2022년12월20일, 07시27분55초	인천광역시 가정성당 4차로

연번	처분대상	위반차량	위반일시	위반장소
538	김*선	73구2868	2022년12월20일, 06시55분33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남향방향→송도)(1차로)
539	(주)정*화물	충남99사3925	2022년12월20일, 06시39분04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남향방향→송도)(2차로)
540	(주)태*로지스틱스	인천98사5025	2022년12월20일, 06시20분40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남향방향→송도)(3차로)
541	김*분	90루7612	2022년12월20일, 06시18분09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3차로
542	(주)아*아티앤에스	인천98아2927	2022년12월20일, 06시14분42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남향방향→송도)(3차로)
543	김*갑	92나8376	2022년12월19일, 20시46분11초	인천광역시 용종교 1차로
544	김*봉	20서6553	2022년12월19일, 20시13분35초	인천광역시 전재울사거리 전재울사거리 4차로
545	우*남	85너7586	2022년12월19일, 20시04분18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송도교로 2차로
546	아*수	인천99아5419	2022년12월19일, 19시22분54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송도교로 3차로
547	김*호	89다9198	2022년12월19일, 18시29분02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7가 27-175(2차로)
548	김*수	91나3480	2022년12월19일, 18시18분24초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549	아*용	80루6064	2022년12월19일, 18시14분40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7가 27-175(2차로)
550	김*훈	12나7783	2022년12월19일, 18시10분54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2차로)
551	하*웅	경기98바9311	2022년12월19일, 17시50분28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남향방향→송도)(1차로)
552	김*수	32다2376	2022년12월19일, 17시38분38초	인천광역시 소래대교 4차로
553	김*미	80무4565	2022년12월19일, 17시14분42초	인천광역시 용종교 3차로
554	(주)*리종합개발	83주1776	2022년12월19일, 17시03분33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7가 27-175(2차로)
555	(주)*리종합개발	87너7456	2022년12월19일, 17시02분35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7가 27-175(4차로)
556	김*진	11서7205	2022년12월19일, 16시57분36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4차로
557	우*항공산업(주)	93무2014	2022년12월19일, 16시02분53초	인천광역시 계양대교 전방 4차로
558	이*식외1(공채면제)	28버1042	2022년12월19일, 15시46분57초	인천광역시 백운공원 2차로
559	조*수	72무2065	2022년12월19일, 15시21분35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2차로)
560	윤*호	86부5529	2022년12월19일, 15시14분21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3차로
561	천*경	06보5959	2022년12월19일, 15시13분11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송도교로 1차로
562	구*규	83소8372	2022년12월19일, 15시02분45초	인천광역시 인천세관 앞 4차로
563	R** JINAN	24우2526	2022년12월19일, 15시02분17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4차로
564	산*순	27루5904	2022년12월19일, 14시46분27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2차로
565	유*산	43조7328	2022년12월19일, 14시40분15초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관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30(2차로)
566	원*재	인천99아5936	2022년12월19일, 14시31분26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7가 27-175(3차로)
567	최*정	충남99사4857	2022년12월19일, 14시02분21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송도교로 3차로
568	A** A KHUDIER AL JOBURI	06주4650	2022년12월19일, 13시52분06초	인천광역시 가정성당 2차로
569	K** ALEXEY	74마1290	2022년12월19일, 13시33분27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송도→남향방향)(2차로)
570	한*나	30보6426	2022년12월19일, 13시16분42초	인천광역시 용종교 1차로
571	홍*희	36보4510	2022년12월19일, 13시13분51초	인천광역시 향동저수지 앞 2차로
572	아*라	91조9797	2022년12월19일, 12시32분11초	인천광역시 경인요금소 4차로

연번	처분대상	위반차량	위반일시	위반장소
573	이*화	부산99사7246	2022년12월19일, 12시30분30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송도교로 2차로
574	최*기	83라7455	2022년12월19일, 12시18분19초	인천광역시 천상교앞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143-22(2차로)
575	강*광	57고5442	2022년12월19일, 12시06분24초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576	이*식	80무6637	2022년12월19일, 11시59분55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4차로
577	김*규	인천99아5575	2022년12월19일, 11시59분32초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관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30(2차로)
578	김*정	인천99아5563	2022년12월19일, 11시54분41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7가 27-175(3차로)
579	(주) 테*로지스틱스	인천98사5025	2022년12월19일, 11시52분51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송도→남항방향)(1차로)
580	황*웅	50로3443	2022년12월19일, 11시44분35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2차로
581	장*중	경북98아5709	2022년12월19일, 11시37분17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7가 27-175(1차로)
582	배*수	53도0522	2022년12월19일, 11시34분30초	인천광역시 운연사거리 1차로
583	변*혁	84가3718	2022년12월19일, 11시30분16초	인천광역시 전재울사거리 전재울사거리 2차로
584	삼*영	인천99아5290	2022년12월19일, 11시15분38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7가 27-175(1차로)
585	주식회사 9*철거	86주9496	2022년12월19일, 11시12분15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송도교로 2차로
586	A**ALI MOHAMED SALEM M	87러4425	2022년12월19일, 11시11분31초	인천광역시 향동저수지 앞 2차로
587	윤*주	26조5016	2022년12월19일, 11시06분23초	인천광역시 모다아울렛 3차로
588	김*우	92소2799	2022년12월19일, 10시35분38초	인천광역시 벽산블루밍아파트앞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48-5(2차로)
589	삼*섭	84라3687	2022년12월19일, 10시12분04초	인천광역시 용종교 2차로
590	주식회사 남*소재산업	80버6854	2022년12월19일, 10시09분52초	인천광역시 남촌농산물시장 앞 4차로
591	권*태	78너6339	2022년12월19일, 10시04분48초	인천광역시 벽산블루밍아파트앞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48-5(2차로)
592	이*성	서울42너4062	2022년12월19일, 09시32분54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2차로)
593	(주) 에*피로지스틱스	86루4093	2022년12월19일, 09시20분48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2차로)
594	박*일	인천34고1131	2022년12월19일, 09시19분38초	인천광역시 전재울사거리 전재울사거리 1차로
595	김*현	91구7933	2022년12월19일, 09시19분08초	인천광역시 남촌농산물시장 앞 1차로
596	(주) 아*아티앤에스	인천98아2927	2022년12월19일, 09시17분16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7가 27-175(4차로)
597	이*희	82여9923	2022년12월19일, 09시08분09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 6-3(2차로)
598	정*진	86부1759	2022년12월19일, 09시06분51초	인천광역시 벽산블루밍아파트앞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48-5(1차로)
599	이*천	70조4250	2022년12월19일, 09시03분30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2차로)
600	오*봉	80로7200	2022년12월19일, 08시58분09초	인천광역시 남촌농산물시장 앞 3차로
601	주*현	94조1373	2022년12월19일, 08시32분41초	인천광역시 인천세관 앞 4차로
602	김*곤	25모5192	2022년12월19일, 07시58분42초	인천광역시 인천세관 앞 4차로
603	박*언	52무3888	2022년12월19일, 07시33분09초	인천광역시 인천세관 앞 4차로
604	장*훈	66소4850	2022년12월19일, 07시27분00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7가 27-175(3차로)
605	주식회사 코*모폴리탄	91라3004	2022년12월19일, 06시44분07초	인천광역시 북항고가입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00(4차로)
606	김*분	90루7612	2022년12월19일, 06시24분47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3차로
607	(주)정*화물	충남99사3925	2022년12월19일, 06시23분02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남항방향→송도)(2차로)
608	임*일	전북29라5931	2022년12월19일, 06시11분18초	인천광역시 모다아울렛 5차로
609	P**SA THANAKORN	24다6917	2022년12월19일, 06시01분41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 6-3(2차로)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대기보전과- , 2023. . .)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처분대상 차량번호:)
	의견	
기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팩스)032-440-8847, (e메일)a4408749@korea.kr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90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사업자	대표자	등록 연월일	등록번호	자본금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비고
주식회사 이엠	위종백	2023. 2. 1.	인천230004	2,460,000,000원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02번길 10, 8층 803-1호 (청라동, 청라리치아노)	

2023년 2월 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91호

설계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일
인천광역시장

■ 설계업 등록 신고사항

등록번호 (업 종)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인천 제 다- 75호 (전문설계업 2종)	주식회사 도담이앤씨 (110111-1439359)	이명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192번길 40, 4층(구월동)	2023. 2. 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에너지정책과(☎032-440-43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93호

공시송달공고

(국제물류주선업 3차 위반-사업정지 60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의 위반업체에 대하여 3차 위반-사업정지 60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고 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인천광역시장

1. 처분대상업체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	법인주소	예정된 행정처분 원인
1	440	(주)호준종합물류	홍**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종로 9, 904호(송의동, 로터리빌딩)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1.12.6.)
2	634	(주)해신해운항공	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남로17번길 26, 305호(용현동, 하나타운)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1.9.5.)

2. 예정된 행정처분 : 3차 위반 - 사업정지 60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등록기준(안화가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미달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4항 등록기준 미신고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5. 의견제출 및 기타 문의

- 제출기한 : 2023년 2월 23일 (목) 18:00 까지
-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간석동),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지부 12층 물류정책과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된 내용과 같이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자 : 물류정책과 이미영(032-440-384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97호

공시송달공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취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의 등록기준 미달 미신고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고 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인천광역시장

1. 처분대상업체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	법인주소	예정된 행정처분 원인
1	801	(주)지오스	박**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296번길 98-11, 비동 102호(운서동)	등록기준미충족(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1.6.15.)
2	625	(주)와이에이치로지스	김**	인천광역시 동구 보세로 51, 2층(만석동)	등록기준미충족(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1.6.30.)

2. 예정된 행정처분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등록기준(안하가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미달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4항 등록기준 미신고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

5. 청문실시

- 일 시 : 2023. 2. 24.(금) 14:00
-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화관 12층(간석동) 물류정책과
- 담 당 자 : 물류정책과 이미영(032-440-3842)

6.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98호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건축법」 제4조 내지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내지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5조 내지 제15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9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의5,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장(건축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9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건축위원회(경제자유구역청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위원회’라 한다)와 군·구 건축위원회(이하 ‘군·구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원활한 심의 운영과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도모함에 있다.

제2조(운영원칙)

- ① 심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기능·환경 및 미관 향상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본 심의 운영기준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도한 서류 요구나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위원회는 심의대상 건축물이 이 심의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와 계획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선행절차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가급적 유지하며, 관계 법령 내 위원회의 결정사항과 상충되는 결정은 지양한다. 다만,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 그리고 공공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심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제시조건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사가 설계에 반영하고 허가권자가 이를 확인한다.
 1. 법령에 위반이 있는 경우
 2. 설계에 오류(계획서와 설계도서간 불일치 등)가 있는 경우
 3. 행정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위반된 경우
 4. 지방자치단체별 심의 기준에서 정하여 일반에 미리 공고한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5. 심의 시간이 불충분하여 7일 이내에 다시 심의를 하는 경우
 6. 건축계획 및 구조 안전 등에 문제가 있어 건축위원회 참석 위원 과반 수 이상이 재심의를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 ⑥ 심의는 법령에서 정한 기한이 초과(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상정) 되지 않도록 신속히 개최하여야 하며, 여러 심의 건을 모아 일괄 상정하기 위해 심의 개최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중이용 건

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는(이하 “구조안전 심의”라 한다) 심의상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정하여야 한다.

- ⑦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
- ⑧ 심의안건 배포 일부터 심의 개최 시까지 안전 당사자와 개별적 면담이나 접촉을 금하도록 안전 배포시 안내하여야 한다.
- ⑨ 제5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의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할 수 있으며, 재심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로 본다.
 1.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 ⑩ 심의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조치계획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⑪ 건축계획 심의는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이므로 동 설계도서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의 위원은 가급적 배제하여야 한다.
-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타분야 위원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제출된 설계도서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⑬ 전문분야(구조안전 등) 심의는 각 전문분야별로 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로 본다.
- ⑭ 구조안전 심의결과는 건축허가 내용과 상반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건축허가 받은 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에서 정한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신고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단, 구조심의위원 만장일치로 설계부실로 인하여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⑮ 경제자유구역청위원회, 군·구 위원회의 심의 운영기준은 본 기준으로 통합·운영한다.

제2장 위원회 운영 및 심의대상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①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자격요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나 위원의 해임·해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사항은 건축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위원회 위원 중 다른 위원회와 중복 위촉은 4개 초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와 중복 위촉은 6개를 초과하는 위원은 위촉에서 제외한다. (단, 여성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 비율 제한을 위해 적용을 제외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개최 및 회의공개)

- ① 위원장은 회의 안건 및 심의 위원을 확정하면 회의의 일시, 장소,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원회 개최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시 위원회는 매월 둘째 주 또는 넷째 주 화요일로 한다. 다만, 개최

일이 공휴일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능한 날 을 정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회의 또는 서면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경제자유구역청위원회, 군·구 위원회의 개최는 각각 별도 기일을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 안건 작성 요령 등 세부기준은 심의 시 제출하는 서류 및 도서 범위 내에서 작성될 수 있도록 하며, 심의 후에는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심의 신청인(설계자 포함)으로부터 회의록 공개 요청(열람 또는 사본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식별(이름, 소속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회의록의 공개 요청은 위원회로부터 심의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⑤ 위 제2조제5항에 따라 재심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며, 당초 심의조건 내용에 한정하여 진행한다.

제5조(위원회 심의대상)

① 심의대상은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심의대상을 기준으로 하며 심 의대상을 임의확대(시장 및 군수·구청장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등)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심 의 대상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시 위원회 심의대상은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시위원회 심의사항 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군 위원회 심의대상은 해당 군 조례에서 군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정 한 사항 및 별표4와 같다.

- ④ 구 위원회 심의대상은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및 별표4와 같다.
- ⑤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개발진흥지구,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공공주택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3. 특별건축구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 특별가로구역, 건축협정구역, 화재경계구역, 건축자산진흥구역

제3장 분야별 심의기준

제6조(계획분야-공통)

- ① 기존 녹지와 수목은 최대한 존치하고,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은 자연경관 및 주변 환경(친수공간 등)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하여야 한다.
- ② 건축물의 높이, 배치 및 규모는 도시경관 및 주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계획하고 도시공간의 바람길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③ 대지 내부 및 경계부의 부속 구조물에 재해 발생 시 건축물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평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가로에 연결되는 저층부는 가로환경 및 주변 건축물과 연속성을 갖도록 배치하고 도로에서의 시야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건축한계선, 건축선 후퇴 등을 검토하여 보행자의 쾌적성을 배려하여 계획한다.

다.

- ⑤ 입면은 주변 건물과 조화되며 지역특성과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⑥ 광고물 설치로 인하여 건축물에 대한 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광고물 설치위치 및 디자인 등을 고려한다.
- ⑦ 건축물의 옥상 부분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과 같이 주거환경에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주변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며 평지붕으로 계획할 경우에는 헬리포트 및 설비 공간 이외에는 옥상공원화를 검토하고, 입면을 훼손하지 않도록 탑층부위에 돌출되는 계단실, 물탱크실, 엘리베이터실 등의 높이는 주 건물과 조화를 고려한다.
 - 2. 옥상에 계획하는 조경과 휴게시설물 등은 태풍 등 풍압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⑧ 지붕형태는 디자인특화계획(경사지붕 등 설치)을 권장한다.
- ⑨ 건축물의 색채계획은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획한다.
- ⑩ 경관조명계획에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 1. 야간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 빛을 통한 조명경관 계획 수립
 - 2. 주요 경관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망경관 및 축상경관을 표현한 도서 제출
- ⑪ 공개공지는 주변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가로환경과 주거환경 증진을 위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 사유화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⑫ 공개공지 설치시 공개공지의 가장 긴 방향이 도로변에 연접(공개 공지가 도로에 접한 면이 전체 길이의 1/4 이상 연접)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 ⑬ 쾌적한 환경과 지속가능한 환경 제공 및 열섬화 방지현상 저감을 위하여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 ⑭ 고층건축물 및 초고층 건축물은 빌딩풍 발생에 대한 대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⑮ 산, 바다, 강 등 자연과 인접하여 유리창이 큰 건축물에는 조류 충돌 방지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⑯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공공법인체 등에서 현상공모로 당선된 설계에 의한 건축물은 원작의 의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⑰ 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사업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사업부지 안에 역사·문화적 특징이 있는 건축물, 구조물 등이 있는 경우 보존 여부를 판단하여 제자리 보존이 어려울 경우 당해 사업으로 조성되는 공원으로 이축하고, 공원이 없는 경우에는 아파트 조경부지 안으로 이축한다.
 2. 이축 대상이 아닌 마을역사(기념물·상징물·전설·구전되는 이야기 등 포함)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 특징을 보존할 수 있도록 기존 마을 형태, 건축자재, 옛 집기 및 가구 등을 발굴(개발 전·중·후 사진 촬영)하여 공원 또는 조경시설 내에 이를 전시할 작은 기념시설, 전시시설을 설치한다.
- ⑱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위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건축계획에 반영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해

야 한다.

제7조(계획분야-공동주택)

- ① 도시경관의 획일화 및 단조로움을 피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이 건립되도록 대지의 형상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동의 형태 및 층수, 평면 및 단면 등을 계획한다.
- ② 주동의 저층부는 보행동선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해 필요시 일부를 필로티형으로 계획할 수 있으며, 보행동선, 개방감 확보와 주민복리시설 및 조경 공간을 확보토록 한다. 다만, 필로티의 개방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우에는 구조안전에 지장이 있는 정도로 기둥의 간격이나 보의 춤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 ③ 단지 내·외부의 동선계획은 보행위주로 계획하며 보행 동선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차량으로 인해 보행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 ④ 부대복리시설은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주변 지역 커뮤니티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⑤ 영 제86조 및 조례 제32조에 따라 일조 시뮬레이션을 통해 내부 일조가 70퍼센트 이상 만족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높이를 계획할 것을 권장(공공성 및 정비사업 등 지역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로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최소 65퍼센트 이상 권장)하며, 건축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는 내부 일조 70퍼센트 만족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 ⑥ 투명한 관리문화 조성 및 입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실시간 방송시스템(세대 TV, PC, Mobile)의 설치를 고려한다.
- ⑦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종사자 휴게실을 남여를 구분하여 설치하고 편의시설(화장실, 샤워실 등)을 계획에 반영

한다.

제8조(토목 분야)

- ① 지반조사는 NX규격으로 여러 곳에서 실시하고 실내실험을 통해 토지 물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구조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반굴착 및 토공의 계산서 및 도면은 인접지 건축물과 관계 등을 고려한 공법을 채택하여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부지조성 성토에 의한 부지 및 인접지반 침하 검토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③ 건축구조물 주변에 산지 및 절개지가 있는 경우 집중호우 등을 고려한 비탈면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수로가 원만하게 형성되어 우수의 흐름 장애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④ 기초 및 가시설(흙막이 등)의 계산서 및 도면은 지하수위 변동으로 인한 기초의 부상 또는 침하 및 지지력에 대한 영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인접 구조물의 기초형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험도가 높은 방향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⑤ 건축물과 단지 내부 및 경계부의 부속 구조물(옹벽, 비탈면 등)은 완공 후에도 점검, 유지관리, 보수보강을 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제9조(구조분야)

- ① 건축물은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구조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 ② 지반조사 결과에 따른 적정 기초 구조계획과 지반종류가 결정되어야 한다.

- ③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등의 사전계획을 수립 반영해야 한다.
- ④ 지하주차장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계획한다.
1. 가능한 한 지하주차장은 전체적으로 터파기한 후 서로 연결시켜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이 용이하게 계획(다만, 대지여건 및 주동과 충분히 이격되어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분리되게 계획가능)
 2. 지하주차장의 상부 구조체에 작용하는 각종 하중(흙무게, 조경식재, 적재하중 등)에 안전하게 계획
- ⑤ 건축물의 규모와 기능에 적합한 구조방식과 지진·태풍·화재 등 재해에 안전한 구조로 다음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지진에 따른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내진성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태풍으로 인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풍하중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화재 발생에 따른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화재하중을 고려한 구조로 계획해야하며, 연소확대방지와 피난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하여야한다.
- ⑥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을 따르되 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 ⑦ 바닥충격음이 저감되도록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및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준수한다.

제10조(소방분야)

- ① 화재 등 재난 상황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소방차량 진입 동선 확보 및 고가차량에 의한 대피 활동 등 소방활동 계획
 2.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등)에 대한 적절한 설치 계획
 3. 피난·방화시설(비상구, 방화구획 등)에 대한 적절한 설치 계획
- ②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 등을 「소방시설법」 및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맞추어 설치한다.
- ③ 옥상광장 폐쇄시를 고려하여 화재 신호와 연동하여 자동 개방이 가능한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 개방 시 관리실 및 방재센터와 연결된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설비분야)

- ① 건축물의 설비계획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 ② 기계실 및 피트(PIT)는 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 ③ 외부에 설치하는 건축설비는 시각적인 노출을 지양하고 건축물 디자인(형태, 재료)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에어컨 실외기 공간, 쓰레기 분리수거공간 등은 미관 및 디자인향상을 위해 가림판을 설치하거나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 ④ 에어컨 실외기, 환기구, 기계설비 등은 공개공지와 분리하여 설치한다.

- ⑤ 초고층 건축물은 시스템에 과도한 압력 해소를 위하여 적절한 조닝을 통한 설비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기계실 및 피트 설치를 계획한다.

제12조(교통 및 주차분야)

- ① 건축물 내·외부 교통계획은 아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주변 교통체계(육교, 횡단보도, 교통신호등 등) 현황
 2. 부지에 접한 도로의 폭, 길이 및 교통소통 현황과 단지 내 도로와의 연계성
 3. 진출입부 가각전제, 가·감속차선 확보 폭 및 길이의 적정성
 4. 주 간선도로상에서 진·출입구 설치를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주변 교통흐름 방해 지양
 5. 소방활동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적절한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및 소방자동차 소방활동 전용구역을 확보해야 한다.
 6. 주차차단기, 경비실 및 관련 부수시설 등은 소방자동차 진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② 교통처리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세부심의사항에서 생략할 수 있다.
- ③ 주차장시설의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예측될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주거용과 상가용의 주차장은 분리하여 설치하되, 부득이 동일층 계획 시에는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분리하는 조닝계획을 하여야 한다.
 3. 이삿짐 차량이나 소방차량 등의 하역 및 조업, 소방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주차동선은 가능한 짧게 설치하고, 지상부 주차는 장애인용 등 교

- 통약자 및 비상용 위주의 교통계획을 하여야 한다.
5.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까운 장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 등 수직이동 수단까지 장애인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출입문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6. 동별 세대수를 감안하여 택배보관함 및 장애인 주차구획은 적절한 위치에 균등 배치하여야 한다.
 7. 각 동 출입구에 ID카드, 칼라형 CCTV설치 또는 홈오토메이션 시설 등을 통하여 범죄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단지 내 옥외 공간을 활용한 천창 등을 활용하여 자연채광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야간의 부족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9.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램프 회전 반경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한다.
 10. 주차램프 진출입 주변에는 가급적 주차면 계획을 지양하며, 주차 동선과 보행자 동선이 겹치는 곳에는 안전통로 표식이나 차량 경고등을 설치한다.

제13조(조경분야)

- ① 식재계획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조경면적, 녹지대 토심, 조경수종, 수목규격, 상록 및 활엽비율, 식재 밀도의 적정성 여부와 지반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식재 한다.
 2. 인공지반 조경설치 부분 토심을 충분히 확보하고 「조경기준」과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에 적합토록 KS표준 고시[KS F4938 인공지반 녹화용 방수 및 방근 재료의 방근 성능시험 통과한 제품]한 방근층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3. 일조 조건, 주변여건, 수목 특성 및 방수 및 배수시설 등 유지관리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4. 지반에 따라 수종의 특성을 고려하고 市木과 郡·區木을 적정하게 식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사면이나 옹벽을 설치할 경우 조경석 마감 등 자연친화적이면서 개방감이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옹벽이나 단차로 인해 노출되는 벽면 등이 있는 경우 전개도 상에 재료를 명기하고 디자인을 향상시켜야 한다.
- ③ 부지 내 조경시설 및 조형물 등은 소방자동차의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 ④ 그 밖에 조경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4조(친환경분야)

- ①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 및 교통분야, 에너지 및 환경오염분야, 재료 및 자원분야, 유지·관리분야, 실내환경분야 등에서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축이 되도록 계획한다.
- ② 녹색 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경우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다.
- ③ 주차장 내 일부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공간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자가용·판매용과 무관하게 옥상(지붕)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부속 건축설비로 간주하며 아래와 같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하고, 그 사항을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검토 확인
 2.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미터 이상인 경

우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기능 확보

제15조(범죄예방설계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분야)

- ① 단지(대지) 및 건축물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와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에 따라 범죄예방설계를 하여야 한다.
- ②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무장애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층 부분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또는 턱높이 제거)를 권장할 수 있다.

제4장 심의 신청 및 의결

제16조(심의 신청 및 제출도서)

- ① 제5조에서 정한 심의 대상 건축물의 심의 신청은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안전 심의는 착공신고 이전까지 완료 할 수 있도록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신청인의 심의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정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 심의(재심의)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와 같다.
- ③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계획 심의 제출도서는 [별표 1] 과 같다.
- ④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 심의 제출도서는 [별표 2] 와 같으며, 건축계획심의 내용 및 반영결과를 포함해야 한

다.

- ⑤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등 심의결과와 협의부서나 허가권자 의견, 지구단위계획 반영 내용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제출한다.
- ⑥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의 경우 일조 시뮬레이션 자료를 첨부한다.
- ⑦ 심의사항에 법 제5조에 따른 건축기준의 적용완화 적용을 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제출도서 외에 적용완화를 받고자하는 내용 관련 자료나 도서만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안전 상정 등 심의절차)

심의 안전 상정 등 심의절차 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제18조(심의의결 방법 등)

- ① 심의는 제2조 제1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참석 위원 모두 동등한 의견기회가 주어지도록 진행되어야 하며, 소수 위원에 의해 특정분야에 집중된 심의가 되는 것을 지양한다.
- ② 사전에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하여 타 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교통위원회 등)가 있는 경우 이와 중복되거나 상반되는 의견 제시는 지양하도록 하며, 상반된 의견이 제시된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유관부서 등과 협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적용한다.
- ③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정하며, 조건부 및 재검토 의결은 이행 가능한 명확한 대안이나 재검토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장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하도록 한다.
 1. 원안 의결: 상정 안전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2. 조건부 의결: 상정 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3. 재검토 의결: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4. 부결: 상정 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 제2조제5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④ 재검토 의결 또는 부결하는 의결의 경우 참석위원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방법은 각 위원이 서면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방법에 따른다.

⑤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신청인 등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법령 등 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심의 주요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심의기준은 공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운영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심의대상 제출서류

1. 건축계획서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비고
계획서	건축 계획서	1. 사업 개요 - 위치·대지면적·사업기간 등 2. 건축물 개요 - 규모(층수, 높이, 면적 등), 용도별 면적 및 건폐율, 용적률 등 3.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를 포함한 지질 및 지형, 지역, 지구, 토지이용 현황, 시설물현황 등 4. 건축계획 - 배치·평면·입면·동선계획, 개략조경 및 주차계획 등 5. 주요설비(냉난방, 전기, 통신, 승강설비등)계획 6. 외장 및 색채계획 7. 투시도 또는 투시도 사진 8. 기타 필요한 사항	· 6은 경관지구내 심의에 한함 · 5, 7은 심의필요시 제출

2. 설계도서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비고
건축	배치도	1. 축척 및 방위,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2. 대지의 종횡단면도 3.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 4. 주차장 배치 계획 5. 공개공지 및 조경배치 계획 등	
	평면도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 위치 5. 승강기 위치 등	
	입면도	1. 2면 이상 입면계획 2. 외부의 마감재료 계획 등	
	단면도	1. 종·횡단면도 2. 건축물 전체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등	
	조경 계획도	1. 공개공지 및 조경시설 계획 등	

[별표 2]

심의대상 제출서류(구조안전심의 대상)

1. 건축계획서

분 야	도 서 종 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비고
계획서	건축 계획서	1. 사업 개요 - 위치·대지면적·사업기간 등 2. 건축물 개요 - 규모(높이, 면적 등), 용도별 면적 및 건폐율, 용적률 등 3. 건축계획 - 배치·평면·입면·동선계획, 주차계획 등 4. 투시도 또는 투시도 사진 5. 건축계획심의 내용 및 반영결과 6. 기타 필요한 사항	· 4는 심의필요시 제출
	구조 계획서	1. 설계근거기준 2. 하중조건분석 3.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4. 구조 형식선정 계획 5. 구조안전 검토 6. 구조성능(단열, 내화, 차음, 진동장애 등) 7. 각 부 구조계획	
	지질 조사서	1. 토질개황 2. 각종 토질시험내용 3. 지내력 산출근거 4. 지하수위면 5. 기초에 대한 의견	
	시방서	1. 시방내용(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함) 2. 흙막이 공법 및 도면	

2. 설계도서

분 야	도 서 종 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비고
건축	배치도	1. 축척 및 방위,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2. 대지의 종횡단면도	
	평면도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 위치	
	단면도	1. 종·횡단면도 2. 건축물 전체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등	
구조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1. 구조내력상 주요부분 평면 및 단면 2. 내진설계(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대상)내용 3. 구조안전확인서 4.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별표 3]

심의절차 기준

구분	절차 등	비고
① 심의 신청 신청인 → 허가권자	⇒ ○ 심의 신청서 및 첨부 서류	개최 30일전
② 심의 건 검토 허가권자	⇒ ○ 관련법규 및 규정 검토 - 필요시 실무자간 협의 ○ 도면 수정 및 작성	개최 30~23일전
③ 심의 상정 허가권자 → 위원회 (허가권자 → 시 진달)	⇒ ○ 상정 안건 작성 ○ 내부 결재 (회의안건 및 위원 선정등) ○ 개최계획 알림 - 위원 및 신청인 등 ○ 위원에게 안건배부 - 사전검토 의견 제출 ※ 필요 시 사전검토 의견 제출 생략	개최 23일전 개최 21일전 개최 20일전 개최 18일전 개최 10일전
④ 조치계획서 작성 신청인 → 위원회	⇒ ○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 제출	개최 5일전
⑤ 위원회 개최 위원회	⇒ ○ 안건설명: 설계자 ○ 위원회 개최 - 위원, 건축주 및 설계자 등 ○ 위원회 회의록 작성	개최당일
⑥ 개최 결과 정리 위원회, 허가권자	⇒ ○ 개최결과 정리 및 보고(내부보고) ○ 심의결과 통보(문서시행) ○ 심의결과 공개(홈페이지)	개최후 7일내 개최후 10일내

[별표 4]

군·구 및 경제자유구역청 위원회 심의(자문) 대상(제5조관련)

군 · 구	심 의 (자 문) 대 상
강화군	1. 주거·상업·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 내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나. 30실 이상 오피스텔 다. 30세대[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옹진군	1. 관리지역 내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해안경계선 50미터 이내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나. 준다중이용, 다중이용건축물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다. 5개 동 이상 또는 5개 단지 이상 연접된 건축물
종구	1. 장례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묘지관련시설의 건축 및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면적 5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동구	1. 주유소, 충전소(가스·수소), 발전소, 장례식장, 정신·요양 격리병원의 건축 및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미추홀구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기계식 주차장 외장재를 본 건물의 주재료(철근콘크리트)가 아닌 샌드위치패널 등 화재, 강풍 등에 취약하고 수명이 짧은 재료로 마감하는 경우 나. 도심지 미관을 저해하는 노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다. 자주식 주차장을 리프트식 주차장으로만 계획하는 경우 라. 학교 인접지 건축으로 교실에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마. 공개공지 설치계획(공개공지 설치로 건축기준의 완화를 적용받는 경우)에 한함) 바.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준주택 포함)에 접한 가장 넓은 도로가 6미터 미만인 경우 2. 주거 밀집 인접지에 장례식장, 주유소, 야외골프 연습장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남동구	1. 장례식장의 건축 및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2.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연면적 5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군 · 구	심 의 (자 문) 대 상
부평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다. 묘지관련시설(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도시계획시설은 제외) 라. 장례시설(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마. 종교시설 중 봉안당(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계양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준공업지역 내 오피스텔 나.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 다. 창고시설(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라. 주거환경 저해시설(옥외골프연습장, 자원순환관련시설, 장례시설, 정신병원, 요양병원, 동물관련시설) 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판매시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나.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자연경관지구 제외) 다. 기계식 주차장, 철골조립식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라. 부설주차장이 자동차용승강기 등을 이용하는 자주식 주차장인 경우 마.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의 면적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창문에 유리블럭 등 설치 포함) 3. 아파트 복리시설(노인복지시설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 시설에 한함)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서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필로티형식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나. 전이보의 너비가 전이기둥 폭의 2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건축물의 외단열재를 준불연 성능 미만의 단열재로 시공하는 건축물의 화재·피난 안전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일부를 법정 주차대수의 30%를 초과하는 기계식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군 · 구	심 의 (자 문) 대 상
	<p>4. 카리프트 외부에 방향전환장치 등 기계장치를 설치한 카리프트 자주식주차장을 계획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p> <p>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의 다중주택,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의 다중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p> <p>가. 실내공간(1.5룸, 2룸 등) 계획에 관한 사항</p> <p>나. 공동시설의 주거변경 방지 계획에 관한 사항</p> <p>다. 해당 용도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호실 당 0.5대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p> <p>6.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55,000㎡ 이상이며 높이 40미터 이상인 창고시설의 건축에 관한 사항</p>

[별지 제1호]

건축위원회 [] 심의
[] 재심의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연번

건축종별	[] 신축	[] 증축	[] 대수선	[] 기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신청 여부	[] 신청함	[] 신청하지 않음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 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관계전문 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사무소명	전화번호	주소
	() (서명 또는 인)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건축 또는 대수선 계획 내용

대지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연면적	m ²	건폐율	%	용적률	%
건물용도	구조		최고높이		m ²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세대수/동수	세대	동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m ²	대 m ²	대 m ²	
	기계식	대 m ²	대 m ²	대 m ²	대
건축기준 완화내용	관계법령				
	신청사유				

변경내용

「건축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또는 OO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를 말하며, 전자 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하고,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mm×297mm [보존용지(2중) 70g/m²]

군 구

강화군공고 제2023-180호

공인 신조 공고

강화군 공인조례 제6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신조 공인을 동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1.

강 화 군 수

○ 신조 공인

구분	공인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신조(등록)사유	사용일
신 조	제3민원사무 전용길상면장인		한글 전서체 2.1cm×2.1cm	통합민원발급기 신규설치	2023.2.2.

기 타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공고 제2023-2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개방형직위(감사관) 공개모집 공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감사관』 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27일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개요

가. 임용예정 직위, 직급, 인원 및 주요 업무

임용예정 직 위	임용가능 직 급	임용 인원	주요 업무 내용
감사관	지방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 (4급 상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수감 및 감사 결과 처리 ◦ 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공·사립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 실시 및 처리(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 제외) ◦ 조사,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지도감독결과에 따른 징계의뢰 사항 포함) ◦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결과 처리 ◦ 공무원범죄 통보 사항 조사 및 처리 ◦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 공직기강(비위, 진정, 청원 등) 관련 사항 ◦ 교육부조리(부패방지, 공무원행동강령 등) 근절대책 수립 및 지도관리 ◦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지원청의 자체감사 실시계획 검토·조정 ◦ 그 밖에 감사관 업무와 관련한 사항

나. 임용기간: 2년(2023. 4. 1. ~ 2025. 3. 31.(예정), 채용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최초 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2. 임용 신분

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단, 임용기간 중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임용당시 민간인,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임용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다.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지침」을 따름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사람

나. 경력요건: 다음 경력기준 중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경 력 요 건	비 고
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함)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경우 응시 가능
②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할 경력이	

경 력 요 건	비 고
<p>있는 사람</p> <p>④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 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⑤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⑥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명시된 자격</p>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자체감사를 전담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 관련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행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 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 나.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3.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 특별요건: 필수요건은 아니며 소정의 가산점 부여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
- 영어 구사능력: TOEFL, TOEIC, TEPS, G-TELP, FLEX 성적
- 정보화 활용능력: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 공인기관 자격 소지

4. 시험방법

가. 시험주관: 선발시험위원회

나. 1차 시험: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고 합격·불합격만 결정하며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는 모두 합격 처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다. 2차 시험: 면접시험(적격성 심사)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 심사
- (능력요건)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의 요건 심사
- (특별요건) 특별요건에서 정한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소정의 가산점 부여
- 배점: 능력요건 100점, 특별요건 6점

5.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시험일정

구분	원서접수 기간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감사관	2023. 2. 7.(화) ~ 2. 13.(월)	2023. 2. 24.(금)	2023. 2. 28.(화)	2023. 3. 9.(목)	2023. 3. 20.(월)

※ 위 시험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시험장소: 세부 시험 장소는 개별통보 및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

6. 응시원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3. 1. 27.(금) ~ 2. 6.(월)

나. 접수기간: 2023. 2. 7.(화) ~ 2. 13.(월), 17:00까지 [평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다. 접수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1층 총무과 인사담당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9(구월동 1137), 전화: 032-420-6513

라. 접수방법: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를 작성

· 구비하여 직접 제출

(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소인분에 한해 유효)

※ 대리접수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우편접수는 반드시 **익일특급 등기우편 발송**해야 하며, 발송 후 **인천광역시교육청 총무과로 전화 연락(전화: 032-420-6513)**

※ 우편 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응시원서 상의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우편 발송 주소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인천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봉투에 “개방형직위 채용서류 재증” 명기>

마. 응시수수료: 10,000원

(원서접수 시 현금으로 납부 또는 우편발송 시 동봉)

※ 접수기간 내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시 응시수수료 면제

7.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되 수상증서, 자격증 등 원본이 유일한 경우 원본 지참에 한해 사본 제출 가능
-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각종 증빙 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을 원칙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함
 - 단, 현재 재직 중인 기관의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함

- 제출 서류 중 불분명한 증빙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제출 서류 목록

- 1 ~ 12번: 응시자 전원 제출
○ 13 ~ 15번: 해당자에 한해 제출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자필 작성 후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 상 경력은 경력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증빙 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 공무원인 경우 이력서와 별도로 인사기록카드 제출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A4 용지 2매 이내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임용예정 직위에서의 업무 추진계획(방법, 일정 등)을 A4 용지 4~5매 이내로 작성
5.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 (별도 서식 없음)	◦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 작성 ◦ 최근 3년간: 2020~2022년
6.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의 서식)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관련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실무경력이 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서)를 포함하여 제출
8. 주민등록 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9.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해당하는 자격요건에 표시(중복표시 가능)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자필서명 필수

구 분	내 용
11.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 자필서명 필수
12.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상 경력 검증에 사용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13.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성적) 증명 (해당자에 한함)	◦ 변호사(변호사등록증명원 등), 공인회계사(회원증명서 등) 자격 증명 ◦ 영어: TOEFL, TOEIC, TEPS, G-TELP, FLEX 성적 증명 ◦ 정보화: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 공인기관의 자격 증명
14. 관련분야 학위·연구 논문, 수상증서 등 기타 실적 (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학위·연구 논문: 표지·요약(요지) 등 발췌본 ◦ 수상증서: 훈·포장(원본 지참, 사본 제출) ◦ 기타 실적 증빙 자료
15. 위임장 1부 (해당자에 한함) (별지 제8호 서식)	◦ 응시원서를 대리 접수시키는 경우

8. 보수수준

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 적용

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직급별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연봉 등급	적 용 대 상	상한액 (천 원)	하한액 (천 원)
4호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64,509천원

- 위 하한액은 관련 규정 개정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9. 기타

- 가. 복무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을 적용
- 나. 재공고: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우리 교육청 내부의 응시자만 있는 경우,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서접수 및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1명)과 같은 경우 연장 공고]
- 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함
- 라.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마. 시험실시 결과 임용예정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바. 본 시험시행계획은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 사.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아.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임용권자의 최종 결정을 통해 개방형직위에 임용됨
-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32-420-6513)으로 문의바람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4급 상당)
- (응시분야):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감사관)
3.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 국적명 기재

※ 응시수수료 : 10,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이 력 서

 개인신상

응시번호	※담당자 기재		응시분야	4급 상당(감사관)
성명	한글			
	한자			
현 소속	기관 및 부서 :		직위 :	
기타사항				

 교육배경(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음)

구분	내용		
	학교 구분	전공	학위
학력 및 전공 (고교부터 기입)			
논문, 저술, 賞 등			

주요 경력(반드시 경력증명서로 증빙할 수 있는 사항만 기재)

경 력 (최신 경력부터 기입)	기 간	소 속	직 책	담당업무	

기술 및 자격

구 분	내 용	
	종 류	등록번호
자격증		
어학	종 류	점수 또는 수준
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술		

<별지 제3호 서식>

자기소개서

- 응시한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본인이 달성한 업적과 장점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분량은 A4용지 2매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글자크기 12, 줄간격 160%, 용지 좌우 상하 여백은 20mm, 머리말, 꼬리말은 10mm로 작성

2023. . . 작성자 :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

- 서론(관련 분야 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구체적 실천방안,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4~5매 정도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글자크기 12, 줄간격 160%, 용지 좌우 상하 여백은 20mm, 머리말, 꼬리말은 10mm로 작성

2023. . . 작 성 자 :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감사관)

※ 기준구분에 관계없이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경우 응시 가능

구분	자격요건	해당요건	해당경력
경력 기준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 라 함)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명시된 자격		

※ 감사 관련분야 :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

※ 해당요건 :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요건에 표시(○)(중복 표시 가능)

※ 해당경력 : 해당되는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예시 : △△시청 감사관(4급) 3년 근무]

응시자 성명 :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자격증·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참고자료]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1. 기본사항

1. 기관명	2. 직위명	3. 임용등급	4. 비 고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지방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4급 상당)	
5. 주요업무내용			비 중
1. 각종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0
2.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수감 및 감사 결과 처리			
3. 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공사립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 실시 및 처리 (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 제외)			
4. 조사,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지도감독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사항 포함)			
5.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결과 처리			
6. 공무원범죄 통보 사항 조사 및 처리			
7.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8. 공직기강(비위, 진정, 청원 등) 관련 사항			
9. 교육부조리(부패방지, 공무원행동강령 등) 근절대책 수립 및 지도관리			
10.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교육지원청의 자체감사 실시계획 검토·조정			
12. 그 밖에 감사관 업무와 관련한 사항			
6. 관련분야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			
7. 필요지식 및 기술			
1. 감사행정 및 이론 등에 대한 이론적·실무적·법규적 지식			
2.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고른 경험과 회계 및 감사분야 경험			
3. 초·중등교육법 및 일반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직자윤리법 등 업무관련 법률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능력			

II. 직무수행요건

1. 임용자격 요건

가. 필수요건	① 학력제한 ■ 무 □ 유 ② 필수 자격증 ■ 무 □ 유 ③ 기타 필수요건 ■ 무 □ 유
나. 경력요건	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할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할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의사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2. 능력요건	<p>① 전문가적 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 및 기술 ii) 새로운 지식, 전략, 정보의 수집·분석 및 활용 능력 iii) 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
	<p>② 전략적 리더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비전제시 능력 ii) 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립 능력 iii)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
	<p>③ 변화관리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ii)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iii)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방식의 전파능력
	<p>④ 조직관리 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 ii) 업무개선 능력 iii) 자원활용 능력
	<p>⑤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공감대 형성 능력 ii)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iii)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
3. 특별요건	<p>① 자격증: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변호사, 공인회계사)</p> <p>② 외국어: 영어</p> <p style="padding-left: 20px;">※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p> <p style="padding-left: 40px;">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참고</p> <p>③ 정보화능력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 공인기관의 자격</p> <p>④ 기타 특별요건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p>